



CHAPTER 03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
1. 개요
 2. 2019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3.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4.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5.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6.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1. 개요

1. 동향분석 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상의 마약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범죄유형

- 마약류 밀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밀매 행위
-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3. 기타 특이사항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2019. 4. 1. ~ 6. 30.)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2019. 4. 중순. ~ 7. 하순.)

2. 2019년 마약류사범 단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1. 마약류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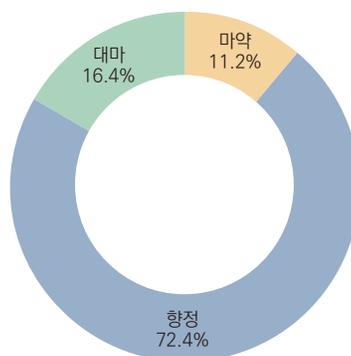
[표 3-1] 마약류별 단속 현황

마약류	구분	건수	합계(명)	인원(명)	
				구속	불구속
합계		12,851	16,044(100)	2,446	13,598
마약		1,617	1,804(11.2)	57	1,747
향정		9,234	11,611(72.4)	2,167	9,444
대마		2,000	2,629(16.4)	222	2,407

※ ()는 구성비 %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6,044명으로 전년(12,613명) 대비 27.2% 증가함
 - 마약사범은 1,804명으로 전년(1,467명) 대비 23.0% 증가함
 - 향정사범은 11,611명으로 전년(9,613명) 대비 20.8% 증가함
 - 대마사범은 2,629명으로 전년(1,533명) 대비 71.5% 증가함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2. 범죄유형별 내역

[표 3-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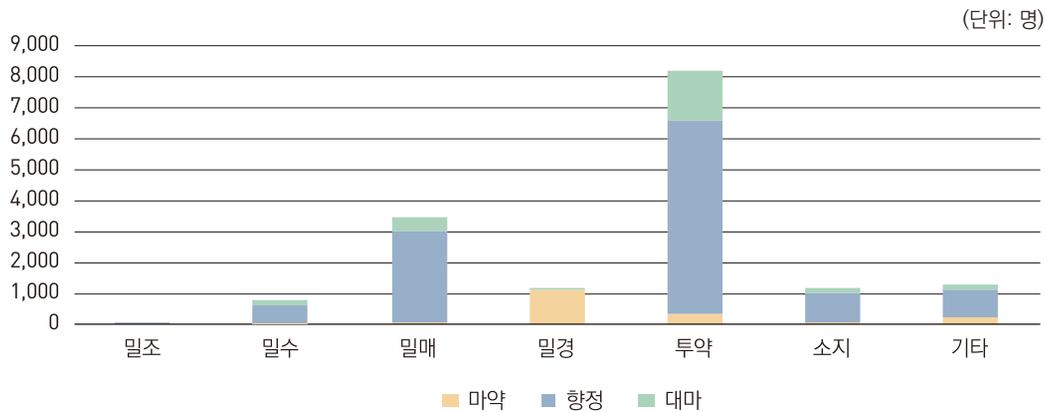
(단위: 명)

유형별 마약류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5	783	3,437	1,161	8,210	1,185	1,263	16,044
(점유율)	(0.0)	(4.9)	(21.4)	(7.2)	(51.2)	(7.4)	(7.9)	(100)
마약	0	26	74	1,098	328	65	213	1,804
향정	5	569	2,931	0	6,272	920	914	11,611
대마	0	188	432	63	1,610	200	136	2,629

※ ()는 구성비 %

-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4,225명(전년도 3,292명)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26.3%(전년도 26.1%)를 점유함
- 투약사범은 8,210명(전년도 6,17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51.2%(전년도 49.0%)를 점유함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3. 청별 내역

[표 3-3] 청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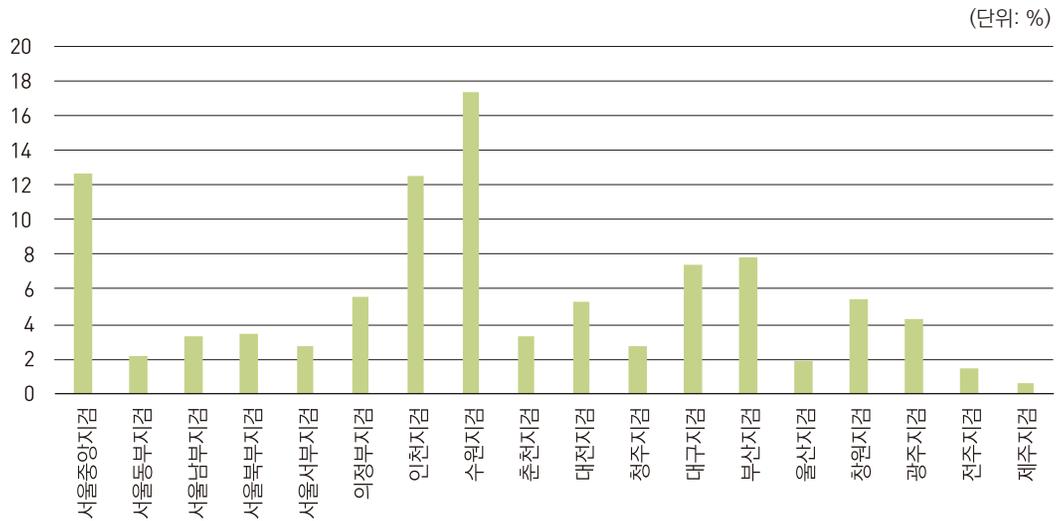
(단위: 명)

청별	구분	2018		2019		증감률 (%)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계		12,613	100	16,044	100	27.2
서울중앙지검		1,575	12.5	2,045	12.7	29.8
서울동부지검		230	1.8	339	2.1	47.4
서울남부지검		439	3.5	529	3.3	20.5
서울북부지검		418	3.3	550	3.4	31.6
서울서부지검		360	2.9	428	2.7	18.9
의정부지검		719	5.7	897	5.6	24.8
인천지검		1,382	11.0	2,015	12.6	45.8
수원지검		2,165	17.2	2,791	17.4	28.9
춘천지검		378	3.0	530	3.3	40.2
대전지검		638	5.1	853	5.3	33.7
청주지검		329	2.6	430	2.7	30.7
대구지검		1,026	8.1	1,193	7.4	16.3
부산지검		1,270	10.1	1,264	7.9	-0.5
울산지검		187	1.5	303	1.9	62.0
창원지검		706	5.6	860	5.4	21.8
광주지검		574	4.6	688	4.3	19.9
전주지검		157	1.2	225	1.4	43.3
제주지검		60	0.5	104	0.6	73.3

※ 지검 실적에 관내 지청분 및 경찰 송치분 포함

- 청별 단속 점유율은 재경지검(서울중앙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24.3%, 수원지검 17.4%, 인천지검 12.6%, 부산지검 7.9%, 대구지검 7.4% 순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9.8%(전년도 57.9%)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됨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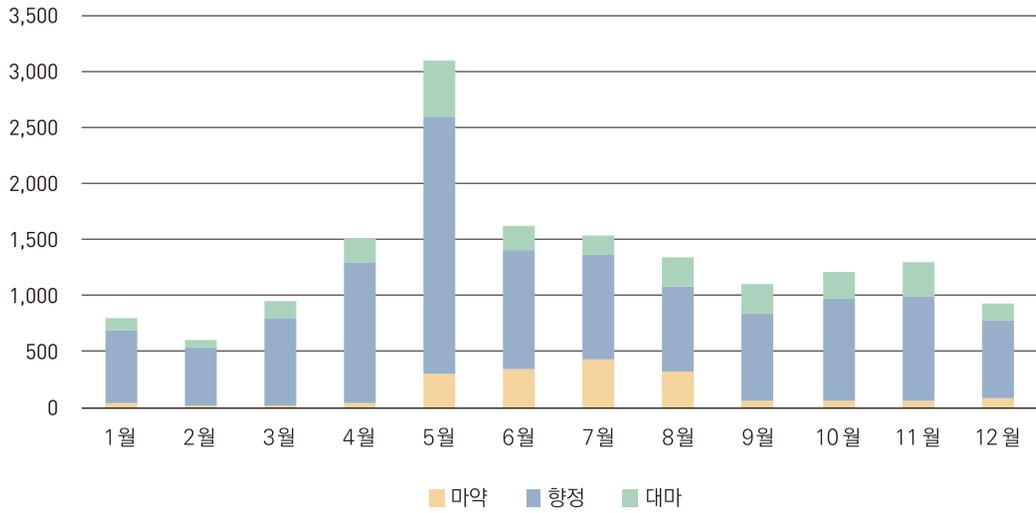
월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계		1,804	11,611	2,629	16,044	100
1월		42	658	108	808	5.0
2월		22	521	73	616	3.8
3월		29	771	160	960	6.0
4월		37	1269	218	1,524	9.5
5월		298	2,293	500	3,091	19.3
6월		336	1,078	200	1,614	10.1
7월		437	923	177	1,537	9.6
8월		315	763	258	1,336	8.3
9월		73	778	256	1,107	6.9
10월		68	915	230	1,213	7.6
11월		54	952	304	1,310	8.2
12월		93	690	145	928	5.8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5월(19.3%)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6월(10.1%), 7월(9.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단위: 명)



5. 기관별 단속내역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전체 마약류사범		5,588	10,456	16,044
		(34.8)	(65.2)	(100)
마약류 공급사범		1,637	2,588	4,225
		(38.7)	(61.3)	(100)
마약류 밀수사범		472	311	783
		(60.3)	(39.7)	(100)

※ ()는 구성비 %

- 전체 마약류사범의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34.8%, 경찰 65.2%임
- 적발된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 대비 검찰 20.8%(전년도 4,627명), 경찰 30.9%(전년도 7,986명) 각각 증가함
- 마약류 공급사범은 전년 대비 검찰 6.5%(전년도 1,537명), 경찰 47.5%(전년도 1,755명) 각각 증가함
- 밀수사범은 공·항만 유입 마약류에 대한 검찰·세관의 집중적인 공조 수사로 전년 대비 전체 50.3%(전년도 521명) 증가함

6. 처리내역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마약류	처리계 ¹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6,830	5,619	321	3,278	864	1,490	10	3,716	399	1,133
	(100)	(33.4)	(1.9)	(19.5)	(5.1)	(8.9)	(0.1)	(22.1)	(2.4)	(6.7)
마약	1,745	67	38	1,255	27	91	0	119	88	60
	(100)	(3.8)	(2.2)	(71.9)	(1.5)	(5.2)	(0.0)	(6.8)	(5.0)	(3.4)
향정	12,397	4,774	246	1,408	712	1,202	6	2,975	281	793
	(100)	(38.5)	(2.0)	(11.4)	(5.7)	(9.7)	(0.0)	(24.0)	(2.3)	(6.4)
대마	2,688	778	37	615	125	197	4	622	30	280
	(100)	(28.9)	(1.4)	(22.9)	(4.7)	(7.3)	(0.1)	(23.1)	(1.1)	(10.4)

※ ()는 구성비 %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단위: %)



¹ 처리계는 구수(2019년 이전 접수된 사건)를 포함한 수치임



- ④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4%로 전년 대비 3.2% 감소, 구약식률은 1.9%로 전년 대비 0.4% 감소, 기소유예율은 19.5%로 전년 대비 1.5% 감소함
- ④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 38.5%(전년도 40.8%), 대마사범 28.9%(전년도 37.9%), 마약사범 3.8%(전년도 4.8%) 순으로 나타남
- ④ 마약류별 구약식률은 마약사범 2.2%(전년도 3.8%), 향정사범 2.0%(전년도 2.1%), 대마사범 1.4%(전년도 2.0%) 순으로 나타남
- ④ 마약류별 기소유예율은 마약사범 71.9%(전년도 76.4%), 대마사범 22.9%(전년도 16.4%), 향정사범 11.4%(전년도 10.2%) 순으로 나타남

7. 범죄수익 환수

[표 3-7] 몰수·추징 보전 실적

연도	구분	건수		금액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2015		2,497	142	4,717억원	9억8천79만원
2016		2,282	119	5,406억원	6억7백48만원
2017		1,992	100	5,491억원	16억9,640만원
2018		2,422	138	2조4,390억원	76억1,261만원
2019		2,862	218	1조1,354억원	89억4,076만원

※ 자료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

-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등이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 (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 ②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 ③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함
- 2019년 마약류범죄 몰수·추징보전 실적은 89억4,076만원으로 전년(76억1,261만원) 대비 17.4% 증가함
- 주요 보전 사례로는 대만 마약조직, 일본 야쿠자 및 국내 유통조직 등이 관여된 필로폰 밀수·밀매 등 사건에서 20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18년)

- ④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를 분석, 채팅 내역 등을 통해 판매 내역 확인하여 범죄수익 합계 1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18년)
- ④ 국내 최초로 ‘모바일상품권과 가상계좌’를 이용한 필로폰 대량 판매 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의 모(母)계좌, 이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추정보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어 50억여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2018년)
- ④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 ‘이나가와카이’와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및 국내 밀수·유통조직이 합작하여 필로폰 약 22kg을 밀수·판매한 사건에서 7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2019년)
- ④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총 495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3억2천만여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에서 3억2천만여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2019년)
- ④ 마약 운박책을 모집 후, 이들에게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및 MDMA 등을 밀수입하게 한 다음, 인터넷 및 SNS ‘위챗’ 등에 광고하여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 1,981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15억9천만여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에서 15억9천만여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2019년)

3.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 마약류사범 추세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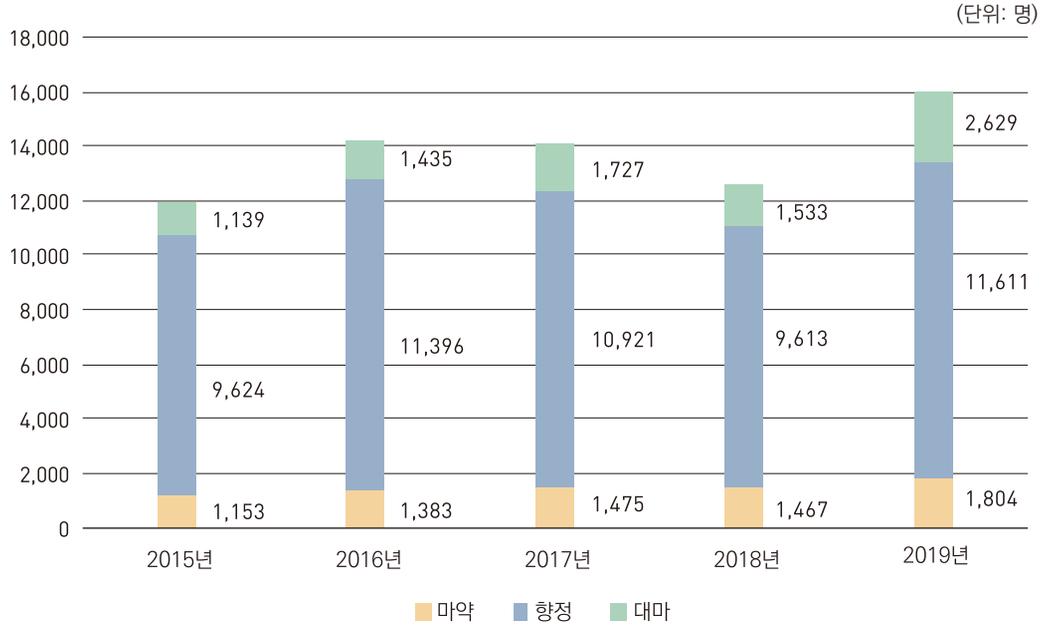
연도별 마약류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916 (19.4)	14,214 (19.3)	14,123 (-0.6)	12,613 (-10.7)	16,044 (27.2)
마약	1,153 (70.6)	1,383 (19.9)	1,475 (6.7)	1,467 (-0.5)	1,804 (23.0)
향정	9,624 (18.5)	11,396 (18.4)	10,921 (-4.2)	9,613 (-12.0)	11,611 (20.8)
대마	1,139 (-4.0)	1,435 (26.0)	1,727 (20.3)	1,533 (-11.2)	2,629 (71.5)

※ ()는 증감률 %

-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함
- 그러나, 2002년에 강력한 단속으로 필로폰 밀수조직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됨

- ④ 2007년 및 2009년에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부터 2014년까지는 10,000명 선 아래로 적발됨
- ④ 이후, 2015년부터 다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 2019년 16,044명으로 대폭 증가함. 이는, 최근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됨
- ④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5년 80.7%, 2016년 80.2%, 2017년 77.3%, 2018년 76.2%, 2019년 72.4%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특히, 메트암페타민)임을 보여주고 있음
- ④ 마약류 사범별 추세를 분석해 보면,
 - 마약사범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00여명 정도 수준이었으나, 2015년 1,100여명, 2016년 1,300여명, 2017년 및 2018년 1,400여명 선, 2019년 1,800여명 선으로 대폭 증가함. 이는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치료 등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한 것을 집중 단속한 결과임
 - 향정사범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었고, 2014년 8,100여명, 2015년 9,600여명, 2016년 11,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0,900여명, 2018년 9,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이후 2019년에 다시 11,600여명으로 증가함
 - 대마사범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 감소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00여명 선으로 억제되다 2016년 1,400여명, 2017년 1,700여명, 2018년 1,500여명, 2019년 2,600여명으로 다시 급증함. 이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임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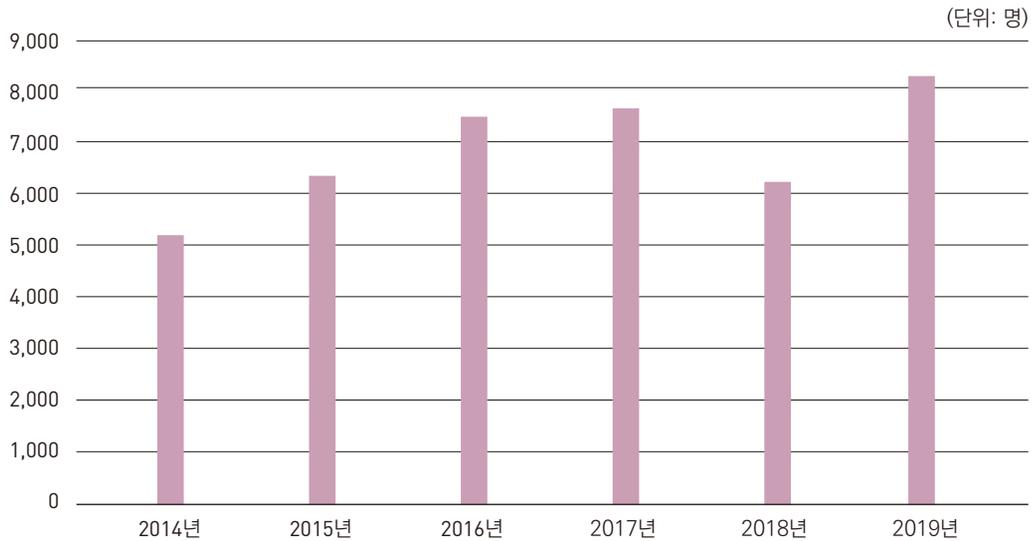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5	783	3,437	1,161	8,210	1,185	1,263	16,044
(점유율)	(0.0)	(4.9)	(21.4)	(7.2)	(51.2)	(7.4)	(7.9)	(100)
마약	0	26	74	1,098	328	65	213	1,804
향정	5	569	2,931	0	6,272	920	914	11,611
대마	0	188	432	63	1,610	200	136	2,629

※ ()는 구성비 %

- ① 전체 마약류사범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51.2%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21.4%), 소지(7.4%) 사범 순임
- ② 행정사범과 대마사범은 투약(흡연)사범이 각 54.0%, 6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0.9%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 사범임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²

마약류	구분	품명	단위	2017	2018	2019
마약		양귀비	주	100,399	97,282	178,387
		생아편	g	537	190	44
		헤로인	g	3.73	1.92	0
		코카인	g	131	88,321	106,932
		기타 ³	g	58,450	13,601	248
향정		메트암페타민	g	30,463	187,947	87,340
		MDMA	g	688	2,818	3,139
		YABA	g	2,583	8,538	17,373
		LSD	g	20	14	35
		JWH-018 및 그 유사체	g	184	478	1,729
		기타 ⁴	g	9,480	13,160	38,464
대마		대마	주	3,920	4,970	3,175
		대마초	g	40,125	89,145	81,899
		대마종자	g	1,183	1,155	411
		대마수지 (해시시)	g	1,267	75	2,686
		기타 ⁵	g	9,485	9,550	21,734

² 2017년 913.198kg, 2018년 132.49kg 압수된 카트(KHAT)는 별도 산정

³ 양귀비종자,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

⁴ 지에이치비(GHB),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Clonazepam), 프로포폴, 알킬 니트리트류 (isobutyl nitrite 등), 케타민(Ketamine), 사일로신(Psilocyn), 암페타민 및 그 이성체(N-메틸페네틸아민) 등

⁵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대마쿠키,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캔디, 부탄허니오일 등

3. 마약류 및 원료물질⁶ 압수 현황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메트암페타민		(슈도)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15		56,580	2,400	2,413 ⁷
2016		28,687	0	0 ⁸
2017		30,463	0	14.19 ⁹
2018		187,947	660 ¹⁰	0
2019		87,340	2,280 ¹¹	0

⁶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한 36종[1군 29종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판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트라닐산, 이소사프롤,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 피페로닐, 사프롤, 노르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롤락톤, 1,4-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니드, 벤즈알데히드, 메틸아민, 에틸아민, 에이피에이에이엔, 엔피피, 에이엔피피,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에이피에이에이 / 2군 7종 : 안트라닐산, 에틸에테르, 피페리딘, 염산(염류 제외), 메틸에틸케톤, 황산(염류 제외), 톨루엔]의 물질과 그 염류

⁷ 2015. 1.~7.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건과 관련, 주거지에서 압수한 2.4kg 결정체는 메트암페타민 완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로 분류(광주지검), 2014. 8.~2015. 7.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마약사범 관련, 슈도에페드린 13g을 압수(울산지검)

⁸ 2016. 9.~11.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마약사범 관련,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액티피드' 72통(36,000정)을 압수(서울중앙지검)

⁹ 2017. 2.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데 그친 사건 관련, 슈도에페드린 9.83g을 압수(인천지검), 2017. 10. 영국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 관련, 에페드린 4.36g 압수(서울동부지검)

¹⁰ 2018. 2.~5.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660g을 제조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 불검출(부산지검)

¹¹ 2019. 4. 14. ~ 4. 28. 중국인 및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톤, 숯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 제조한 메트암페타민 완제품 약 1.32kg 및 반제품 약 2.28kg 등 총 3.6kg 압수(서울중앙지검)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연도별	구분	헤로인		무수초산	
		건수	압수량(단위: g)	건수	압수량(단위: ton)
2015		3	4.54	0	0
2016		1	0.03	0	0
2017		1	3.73	0	0
2018		1	1.92	0	0
2019		0	0	0	0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건수	제조량	
			완제품	반제품
2015		5	43	2,400
2016		2	200	0
2017		3	513	0
2018		2	0	660
2019		1	1,320.67 ¹²	2,280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제조사범은 2006년 1건, 2007년 1건 적발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원료가 함유된 감기약과 살빼는 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약국 등에서 시중에서 구입한 후 그 약품에서 추출한 원료 성분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들임

¹² 2019. 1.~4.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0.67g을 제조(순도 66.6%) 및 판매(서울중앙지검), 2019. 4. 14. ~ 4. 28. 중국인 및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트, 숯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32kg을 제조 (서울중앙지검)

- 2010년에는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외국인 선원이 원료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화학과 교수가 원료 성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γ -Hydrxide Butyolactone, 일명 '물뽕')를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1년에는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 약 10kg를 매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고 예비한 사례가 적발됨
- 2012년에는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회사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물질인 GBL을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사례, 학원강사가 원료물질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3년에는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검색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명의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자가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호주 국적의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가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2kg을 제조한 사례, 가정집에서 약 4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4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5년에는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8.5g을 제조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조직 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자신의 집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고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원료 구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예비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④ 2016년에는 필로폰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에페드린’ 주사액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④ 2017년에는 인터넷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주택가에 목공예장으로 위장한 필로폰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0g을 제조한 사례,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 데 그친 사례,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3g을 제조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④ 2018년에는 외국 포털사이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서울 소재 영세 공장에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660g을 제조 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 중국인 필로폰 기술자를 고용하여 지방 소재 폐가에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마황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9년에는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톤, 솔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3.6kg(완제품 약 1.32kg, 반제품 약 2.28kg)을 제조한 사례, 대구 소재 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0.67g(완제품, 순도 66.6%)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됨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그 이후 국내 밀조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소량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적발됨에 따라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단속 중임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14]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¹³

(단위: g)

마약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합계		131	54,766 (54,365)	179	38,510 (35,760)	247	26,984 (26,228)	250	292,405 (272,081)	312	234,328 (234,328)
코카인		4	7 (7)	6	10,899 (10,899)	11	119 (119)	16	88,301 (88,301)	11	105,803 (105,803)
헤로인		2	3 (3)	1	0.03 (0.03)	1	3.73 (3.73)	1	1.93 (1.93)	0	0 (0)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80	46,515 (46,142)	75	22,585 (21,177)	79	17,117 (16,761)	62	193,240 (171,165)	81	70,626 (70,626)
MDMA		5	47 (44)	34	445 (445)	51	686 (686)	68	1,842 (1,752)	63	2,623 (2,623)
LSD		2	2 (10)	7	8 (8)	28	17 (17)	26	11 (11)	51	27 (27)
YABA		9	984 (984)	10	2,010 (704)	9	847 (847)	17	7,934 (7,934)	36	13,330 (13,330)
대마초		17	7,023 (6,990)	26	2,219 (2,183)	51	7,896 (7,496)	55	30,924 (30,924)	57	39,131 (39,131)
대마수지 (해시시)		7	138 (138)	12	153 (153)	11	244 (244)	2	25 (25)	11	2,673 (2,673)
JWH-018 및 그 유사체		5	47 (47)	8	191 (191)	6	57 (57)	4	439 (439)	2	115 (115)

※ ()는 압수량

- 2019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234.3kg(312건)으로 2018년 292.4kg(250건) 대비 19.9% 감소함

¹³ 단속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와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 포함. 마약류 출처(외국 국가)가 확인된 경우만 산출

- 밀반입된 주요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19년 70.6kg으로 전년(193.2kg) 대비 63.5% 감소한 바, 이는 전년도에 '대만 마약조직 필로폰 약 112kg 밀수사건' 적발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반입량이 많았던 것임. 대마초는 39.1kg(57건)으로 전년 30.9kg(55건) 대비 26.5% 증가함. 그 밖에 엑스터시(MDMA), 야바(YABA), 대마수지(해시시) 등의 밀반입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3-15]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중국	35	2,081	1,968	9	504	504	3	45	45
		필리핀	7	1,776	1,706	2	198	194	2	48	48
		베트남	4	197	197	0	0	0	4	486	486
		태국	18	747	711	14	1,708	1,708	30	5,670	5,670
		미국	1	114	114	8	1,403	1,403	7	13,822	13,822
		홍콩	2	3	3	2	105	105	0	0	0
		영국	1	1	1	0	0	0	2	2,271	2,271
		네덜란드	2	4	4	4	40	40	3	3	3
		멕시코	1	197	197	0	0	0	0	0	0
		대만	3	10,703	10,646	11	174,298 ¹⁴	152,298	2	6,964	6,964
		라오스	0	0	0	2	1,273	1,273	4	5,893	5,893
		인도네시아	0	0	0	0	0	0	1	7	7
		캄보디아	3	1,285	1,206	2	2,412	2,342	3	3,555	3,555
		캐나다	0	0	0	1	70	70	6	304	304
		호주	0	0	0	0	0	0	0	0	0
		말레이시아	2	9	8	7	11,229	11,229	13	29,708	29,70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0	0	0	0	0	0	1	1,850	1,850
	소계	79	17,117	16,761	62	193,240	171,165	81	70,626	70,626	

¹⁴ 대만 마약조직이 필로폰 약 112kg을 태국 방콕 발 화물선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수입

¹⁵ '19. 7.경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100kg을 선박에 은닉한 후, 싱가포르를 경유, '19. 8.경 대한민국 태안 해상에 정박하여 코카인 밀수입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코카인		미국	1	38	38	3	9	9	3	23	23
		네덜란드	7	22	22	3	11	11	3	8	8
		홍콩	3	59	59	0	0	0	0	0	0
		영국	0	0	0	1	0.5	0.5	1	7	7
		콜롬비아	0	0	0	0	0	0	1	100,764 ¹⁵	100,764
		스페인	0	0	0	0	0	0	1	2	2
		에콰도르	0	0	0	1	63,880	63,880	0	0	0
		캐나다	0	0	0	1	1	1	0	0	0
		프랑스	0	0	0	1	3	3	0	0	0
		브라질	0	0	0	4	21,395	21,395	2	4,999	4,999
		파나마	0	0	0	1	3,000	3,000	0	0	0
		스위스	0	0	0	1	1.5	1.5	0	0	0
		소계	11	119	119	16	88,301	88,301	11	105,803	105,803
헤로인		미국	1	3.73	3.73	1	1.9	1.9	0	0	0
		소계	1	3.73	3.73	1	1.9	1.9	0	0	0
크라툼		미국	0	0	0	1	7.4	7.4	0	0	0
		소계	0	0	0	1	7.4	7.4	0	0	0
대마수지 (해시시)		미국	2	153	153	0	0	0	4	532	532
		캐나다	1	14	14	0	0	0	0	0	0
		영국	5	60	60	1	16	16	1	100	100
		스페인	1	3	3	0	0	0	0	0	0
		이탈리아	0	0	0	0	0	0	1	9	9
		네덜란드	2	14	14	1	10	10	1	0.2	0.2
		덴마크	0	0	0	0	0	0	1	1	1
		인도	0	0	0	0	0	0	1	7	7
		이집트	0	0	0	0	0	0	1	2,000	2,000
		베트남	0	0	0	0	0	0	1	24	24
		소계	11	244	244	2	26	26	11	2,673	2,673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MDMA (엑스터시)	캐나다	1	6	6	0	0	0	4	30	30
	미국	6	74	74	5	130	125	11	799	799
	독일	3	38	38	6	153	153	4	190	190
	대만	2	59	59	1	99	99	0	0	0
	홍콩	0	0	0	0	0	0	1	1.3	1.3
	네덜란드	30	463	463	39	766	681	28	746	746
	영국	4	13	13	10	268	268	7	214	214
	베트남	2	7	7	1	3	3	2	461	461
	태국	2	10	10	2	7	7	2	64	64
	벨기에	1	16	16	0	0	0	0	0	0
	슬로바키아	0	0	0	0	0	0	1	83	83
	일본	0	0	0	1	0.7	0.7	0	0	0
	프랑스	0	0	0	1	31	31	0	0	0
	말레이시아	0	0	0	2	385	385	0	0	0
	스페인	0	0	0	0	0	0	3	35	35
소계	51	686	686	68	1,843	1,753	63	2,623	2,623	
케타민	대만	0	0	0	0	0	0	1	127	127
	미국	1	9	9	3	989	989	11	115	115
	태국	0	0	0	1	7	7	1	348	348
	영국	1	14	14	0	0	0	0	0	0
	네덜란드	1	5	5	2	11	11	5	7	7
	캐나다	0	0	0	0	0	0	1	1.3	1.3
	소계	3	28	28	6	1,007	1,007	19	598	598
YABA (아바)	태국	7	522	522	15	5,450	5,450	33	13,250	13,250
	캄보디아	0	0	0	0	0	0	2	67	67
	라오스	1	66	66	2	2,484	2,484	0	0	0
	베트남	1	259	259	0	0	0	1	13	13
	소계	9	847	847	17	7,934	7,934	36	13,330	13,330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JWH-018 및 그 유사체 (합성대마)	중국	0	0	0	1	14	14	1	15	15
	미국	4	34	34	1	50	50	0	0	0
	일본	0	0	0	1	372	372	0	0	0
	폴란드	0	0	0	1	4	4	0	0	0
	베트남	1	18	18	0	0	0	1	100	100
	네덜란드	1	5	5	0	0	0	0	0	0
	소계	6	57	57	4	440	440	2	115	115
메틸페니데이트	뉴질랜드	0	0	0	1	30	30	0	0	0
	소계	0	0	0	1	30	30	0	0	0
사일로신	네덜란드	4	85	85	3	77	77	3	142	142
	미국	1	8	8	0	0	0	2	5	5
	캐나다	1	5	5	0	0	0	1	0.3	0.3
	베트남	0	0	0	0	0	0	1	13	13
	독일	0	0	0	0	0	0	1	1.2	1.2
	소계	6	98	98	3	77	77	8	162	162
GHB	중국	0	0	0	0	0	0	2	1,217	1,217
	네덜란드	2	163	163	0	0	0	0	0	0
	벨기에	1	145	145	0	0	0	3	374	374
	미국	1	70	70	1	178	178	3	799	799
	소계	4	378	378	1	178	178	8	2,390	2,390
알프라졸람	중국	0	0	0	1	46	46	8	414	414
	태국	0	0	0	1	9	9	0	0	0
	벨기에	0	0	0	0	0	0	1	40	40
	영국	0	0	0	0	0	0	1	19	19
	소계	0	0	0	2	55	55	10	473	473
에티졸람	리투아니아	1	3	3	0	0	0	0	0	0
	일본	1	10	10	0	0	0	4	96	96
	소계	2	13	13	0	0	0	4	96	96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졸피뎀	일본	1	9	9	0	0	0	3	50	50
	미국	1	10	10	0	0	0	2	5	5
	프랑스	0	0	0	1	4.6	4.6	0	0	0
	이스라엘	1	66	66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1	9.9	9.9	0	0	0
	스페인	0	0	0	0	0	0	1	40	40
	중국	0	0	0	0	0	0	1	29	29
	홍콩	0	0	0	0	0	0	0	0	0
	소계	3	85	85	2	14.5	14.5	7	124	124
디아제팜	영국	0	0	0	0	0	0	1	7	7
	태국	0	0	0	0	0	0	1	332	332
	독일	1	3	3	0	0	0	0	0	0
	중국	0	0	0	0	0	0	3	157	157
	소계	1	3	3	0	0	0	5	496	496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대만	1	175	175	0	0	0	0	0	0
	중국	0	0	0	2	30	30	1	31	31
	네덜란드	0	0	0	2	15	15	0	0	0
	소계	1	175	175	4	45	45	1	31	31
클로나제팜	멕시코	1	20	20	0	0	0	0	0	0
	미국	0	0	0	0	0	0	2	89	89
	캐나다	0	0	0	0	0	0	1	20	20
	네팔	0	0	0	0	0	0	1	119	119
	중국	0	0	0	0	0	0	1	55	55
	소계	1	20	20	0	0	0	5	283	283
로라제팜	독일	0	0	0	1	8	8	0	0	0
	스페인	0	0	0	0	0	0	1	82	82
	일본	0	0	0	0	0	0	1	1.5	1.5
	중국	0	0	0	0	0	0	1	14	14
	태국	0	0	0	0	0	0	1	20	20
	소계	0	0	0	1	8	8	4	118	118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브로마제팜		스페인	0	0	0	0	0	0	1	40	40
		소계	0	0	0	0	0	0	1	40	40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5	194	194	2	7.6	7.6	2	21	21
		네덜란드	4	33	33	0	0	0	2	17	17
		독일	0	0	0	0	0	0	3	10	10
		영국	0	0	0	0	0	0	0	0	0
		소계	9	227	227	2	7.6	7.6	7	48	48
옥시코돈		영국	0	0	0	2	4.3	4.3	0	0	0
		독일	1	2	2	0	0	0	0	0	0
		미국	0	0	0	0	0	0	2	21	21
		소계	1	2	2	2	4.3	4.3	2	21	21
LSD		네덜란드	20	15	15	17	6	6	29	15.3	15.3
		캐나다	5	1	1	3	4	3	0	0	0
		영국	0	0	0	1	0.7	0.7	6	3.9	3.9
		미국	3	1	1	3	1	1	8	6.2	6.2
		벨기에	0	0	0	1	0.1	0.1	0	0	0
		독일	0	0	0	1	0.1	0.1	6	1.2	1.2
		홍콩	0	0	0	0	0	0	1	0.3	0.3
		베트남	0	0	0	0	0	0	1	0.2	0.2
		소계	28	17	17	26	11.9	10.9	51	27.1	27.1
디메틸트립타민 (DMT)		독일	0	0	0	0	0	0	0	0	0
		멕시코	2	601	601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2	1.6	1.6	0	0	0
		캐나다	0	0	0	2	2	2	0	0	0
		영국	0	0	0	0	0	0	1	2	2
		소계	2	601	601	4	3.6	3.6	1	2	2
조피클론		미국	0	0	0	1	6.6	6.6	0	0	0
		중국	0	0	0	0	0	0	1	557	557
		소계	0	0	0	1	6.6	6.6	1	557	557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5-MEO-MiPT	캐나다	1	1	1	0	0	0	0	0	0
	소계	1	1	1	0	0	0	0	0	0
1P-LSD	네덜란드	3	0.5	0.5	1	0.1	0.1	0	0	0
	캐나다	1	0.1	0.1	0	0	0	0	0	0
	소계	4	0.6	0.6	1	0.1	0.1	0	0	0
알킬니트리트 류 [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	영국	2	435	435	0	0	0	2	740	740
	홍콩	3	80	80	0	0	0	2	50	50
	스웨덴	0	0	0	1	30	30	1	20	20
	싱가포르	0	0	0	0	0	0	3	70	70
	슬로바키아	1	40	40	0	0	0	1	30	30
	미국	7	418	418	0	0	0	6	400	400
	중국	15	6,308	6,308	1	25	25	66	8,974	8,974
	호주	2	125	125	0	0	0	0	0	0
	프랑스	5	444	444	1	10	10	13	688	688
	네덜란드	0	0	0	0	0	0	6	409	409
	키르기스스탄	0	0	0	0	0	0	1	20	20
	태국	0	0	0	0	0	0	14	966	966
	미얀마	0	0	0	0	0	0	1	150	150
	베트남	0	0	0	0	0	0	6	760	760
	체코	0	0	0	0	0	0	1	160	160
	일본	0	0	0	0	0	0	1	20	20
	말레이시아	0	0	0	0	0	0	5	190	190
	대만	0	0	0	0	0	0	4	190	190
	벨기에	0	0	0	0	0	0	1	40	40
	뉴질랜드	0	0	0	0	0	0	1	30	30
오스트리아	0	0	0	0	0	0	1	394	394	
러시아	0	0	0	0	0	0	2	160	160	
소계	35	7,850	7,850	3	65	65	138	14,461	14,461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2C-D, 2C-B	네덜란드	0	0	0	1	0.9	0.9	1	2.5	2.5
	소계	0	0	0	1	0.9	0.9	1	2.5	2.5
25B-NBOME	네덜란드	0	0	0	0	0	0	1	0.11	0.11
	소계	0	0	0	0	0	0	1	0.11	0.11
테마제팜	미국	0	0	0	1	5.0	5.0	0	0	0
	소계	0	0	0	1	5.0	5.0	0	0	0
N- 메틸페네틸아민	미국	0	0	0	1	29.7	29.7	0	0	0
	소계	0	0	0	1	29.7	29.7	0	0	0
코데인	필리핀	0	0	0	1	26.7	26.7	0	0	0
	소계	0	0	0	1	26.7	26.7	0	0	0
페이오트	네덜란드	0	0	0	1	0.6	0.6	0	0	0
	태국	0	0	0	1	73.3	73.3	0	0	0
	헝가리	0	0	0	1	10.5	10.5	0	0	0
	중국	0	0	0	0	0	0	1	127	127
	소계	0	0	0	3	84.4	84.4	1	127	127
텍스트로 메토르판	영국	0	0	0	1	2.5	2.5	0	0	0
	미국	0	0	0	12	4,911.1	4,752.7	0	0	0
	소계	0	0	0	13	4,913.6	4,755.2	0	0	0
2-플루오로메트 암페타민	네덜란드	0	0	0	1	6.1	6.1	0	0	0
	소계	0	0	0	1	6.1	6.1	0	0	0
메티오프로파민	미국	0	0	0	1	3.3	3.3	0	0	0
	소계	0	0	0	1	3.3	3.3	0	0	0
3-플로오로 펜메트라진	네덜란드	0	0	0	1	4.9	4.9	0	0	0
	소계	0	0	0	1	4.9	4.9	0	0	0
부탄허니오일	미국	0	0	0	1	6.9	6.9	2	6	6
	캐나다	0	0	0	0	0	0	3	11	11
	스페인	0	0	0	0	0	0	1	120	120
	소계	0	0	0	1	6.9	6.9	6	137	137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모르핀	베트남	0	0	0	1	1.8	1.8	0	0	0
	소계	0	0	0	1	1.8	1.8	0	0	0
펜타닐 패치	독일	0	0	0	0	0	0	1	20	20
	네덜란드	0	0	0	0	0	0	1	8	8
	소계	0	0	0	0	0	0	2	28	28
LSA (리저직산 아미드)	영국	0	0	0	1	34	34	0	0	0
	소계	0	0	0	1	34	34	0	0	0
디클라제팜	중국	0	0	0	1	12.35	12.35	0	0	0
	소계	0	0	0	1	12.35	12.35	0	0	0
에스타졸람	중국	0	0	0	0	0	0	1	33	33
	소계	0	0	0	0	0	0	1	33	33
실비노린 에이	네덜란드	0	0	0	0	0	0	1	3	3
	소계	0	0	0	0	0	0	1	3	3
양귀비종자	네덜란드	0	0	0	1	10	10	0	0	0
	미국	32	23,600	23,600	15	7,138	7,138	0	0	0
	일본	1	10,000	10,000	0	0	0	0	0	0
	프랑스	1	40	40	0	0	0	0	0	0
	소계	34	33,640	33,640	16	7,148	7,148	0	0	0
양귀비종자 샬러드드레싱	미국	14	12,300	12,300	3	2,248	2,248	0	0	0
소계	14	12,300	12,300	3	2,248	2,248	0	0	0	
양귀비종자 쿠키	미국	10	6,495	6,495	2	330	330	0	0	0
	호주	1	5,640	5,640	0	0	0	0	0	0
	독일	1	375	375	0	0	0	0	0	0
	소계	12	12,500	12,500	2	330	330	0	0	0
대마초	미국	21	1,970	1,970	38	10,760	10,760	27	4,878	4,878
	캐나다	6	1,187	1,187	1	925	925	12	2,685	2,685
	독일	2	902	902	1	50	50	0	0	0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초	네덜란드	2	31	31	3	81	81	0	0	0
	태국	2	155	155	1	133	133	3	3,837	3,837
	중국	2	17	17	0	0	0	0	0	0
	프랑스	0	0	0	1	7	7	0	0	0
	필리핀	0	0	0	1	7	7	0	0	0
	벨기에	0	0	0	1	260	260	0	0	0
	영국	6	767	767	3	226	226	5	176	176
	스페인	2	521	521	1	3	3	0	0	0
	대만	1	1	1	0	0	0	0	0	0
	체코	1	5	5	0	0	0	1	500	500
	베트남	2	2,155	1,755	0	0	0	2	338	338
	말레이시아	1	58	58	1	123	123	2	139	139
	호주	1	7	7	1	4	4	0	0	0
	오스트리아	1	117	117	0	0	0	0	0	0
	일본	1	3	3	0	0	0	0	0	0
	홍콩	0	0	0	1	63	63	0	0	0
	남아프리카 공화국	0	0	0	1	18,282	18,282	1	19,840	19,840
	나이지리아	0	0	0	0	0	0	3	6,368	6,368
	스리랑카	0	0	0	0	0	0	1	370	370
	소계	51	7,896	7,496	65	30,924	30,924	57	39,131	39,131
대마종자	영국	6	4	4	30	58	58	0	0	0
	네덜란드	2	2	2	3	2	2	1	10	10
	리투아니아	1	27	27	0	0	0	0	0	0
	스위스	0	0	0	12	6.2	6.2	0	0	0
	미국	1	1,150	1,150	8	3.4	3.4	3	97.5	97.5
	캐나다	0	0	0	0	0	0	1	1.3	1.3
	스페인	0	0	0	2	0.4	0.4	0	0	0
	소계	10	1,183	1,183	46	70	70	5	109	109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오일	미국	62	6,825	6,825	36	8,123	8,123	37	7,920	7,920
	캐나다	0	0	0	0	0	0	1	60	60
	네덜란드	1	38	38	0	0	0	1	150	150
	이탈리아	0	0	0	0	0	0	1	955	955
	영국	1	500	500	0	0	0	0	0	0
	독일	3	50	50	1	10	10	0	0	0
	리투아니아	1	10	10	0	0	0	0	0	0
	중국	0	0	0	0	0	0	2	705	705
	홍콩	1	60	60	0	0	0	1	220	220
	싱가포르	0	0	0	0	0	0	1	20	20
	베트남	0	0	0	0	0	0	1	1,440	1,440
	러시아	0	0	0	0	0	0	1	300	300
	스페인	4	56	56	1	60	60	1	20	20
	소계	73	7,539	7,539	38	8,193	8,193	47	11,790	11,790
대마कु키	미국	3	839	839	1	150	150	3	171	171
	영국	0	0	0	0	0	0	1	100	100
	소계	3	839	839	1	150	150	4	271	271
대마캡슐 (알약)	미국	10	209	209	2	26	26	2	32	32
	스페인	0	0	0	0	0	0	1	1	1
	소계	10	209	209	2	26	26	4	33	33
대마카트리지	미국	8	683	683	19	128	128	110	799	782
	캐나다	0	0	0	1	5	5	5	28	28
	네덜란드	0	0	0	0	0	0	1	1	1
	러시아	0	0	0	0	0	0	2	3	3
	베트남	0	0	0	0	0	0	3	10	10
	필리핀	0	0	0	0	0	0	1	14	14
	일본	0	0	0	0	0	0	2	4	4
	소계	8	683	683	20	133	133	124	859	842

(단위: g)

미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7			2018			201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초콜릿		미국	1	215	215	3	234	234	5	135	135
		소계	1	215	215	3	234	234	5	135	135
대마캐러멜		미국	0	0	0	0	0	0	2	228	228
		소계	0	0	0	0	0	0	2	228	228
대마크림		미국	0	0	0	0	0	0	9	1,562	1,562
		러시아	0	0	0	0	0	0	1	1,099	1,099
		소계	0	0	0	0	0	0	10	2,661	2,661
대마차		스웨덴	0	0	0	1	225	225	0	0	0
		영국	0	0	0	0	0	0	1	1.5	1.5
		소계	0	0	0	1	225	225	1	1.5	1.5
대마캔디 (사탕)		미국	0	0	0	2	134	134	2	74	74
		소계	0	0	0	2	134	134	2	74	74
대마젤리		캐나다	0	0	0	0	0	0	1	17	17
		영국	0	0	0	0	0	0	1	41	41
		미국	0	0	0	3	369	369	9	1,075	1,075
		소계	0	0	0	3	369	369	11	1,133	1,133
기타 대마제품		미국	0	0	0	5	188	188	1	73	73
		미국 (대마드링크)	0	0	0	1	59	59	0	0	0
		미국 (대마립밤)	0	0	0	0	0	0	1	50	50
		미국 (대마스틱)	0	0	0	0	0	0	1	920	920
		미국 (대마입욕제)	0	0	0	0	0	0	1	284	284
		영국 (대마껌)	0	0	0	0	0	0	2	102	102
		스페인	0	0	0	1	9	9	0	0	0
		소계	0	0	0	7	256	256	6	1,429	1,429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2019년 필로폰 밀반입량은 총 70,626g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밀반입량이 29,708g으로 전체 필로폰 밀반입량의 42.1%를 차지하고, 미국에서의 밀반입량은 13,822g, 대만에서의 밀반입량은 6,964g, 라오스에서의 밀반입량은 5,893g, 태국에서의 밀반입량은 5,670g임
-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중, 중국 발 밀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18년 및 2019년에는 대만 마약조직이 관여된 대만·말레이시아에서의 밀반입량이 대폭 증가함
- 2018. 2. ~ 8. 대만 마약조직(중간총책·운반책·판매책 등), 일본 야쿠자,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된 필로폰 밀수·판매 등 사건을 적발하여 필로폰 약 152.28kg을 압수함
- 2018. 12. ~ 2019. 12. 말레이시아인들이 배낭, 신체, 의료기기, 여행가방, 운동화 밑창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0kg을 밀반입한 것을 적발하여 이를 압수함

나. 코카인

- 2019년 코카인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총 105,803g으로, '콜롬비아 發 코카인 약 100kg 은닉 선박 적발' 사건으로 인해 전년(88,301g) 대비 19.8% 증가함.
- 2012년에는 우리 국민이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코카인 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④ 2013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기탁화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4짝에 코카인 300g씩을 은닉하여 총 1,180g 가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적발됨
- ④ 2014년에는 미국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각각 적발됨
- ④ 2015년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캐나다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각각 적발됨
- ④ 2016년에는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코카인 각 6,400g, 4,478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 ④ 2017년에는 우리 국민이 코카인 59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 ④ 2018년에는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19.8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카타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최종 목적지 마카오)하여 밀반입, 성명 불상자가 에콰도르에서 코카인 약 63.88kg을 선적한 후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부산항에 입항(최종 목적지 중국)하여 밀반입, 콜롬비아인이 파나마에서 코카인 약 3kg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최종 목적지 라오스)하여 밀반입한 사례들이 각각 적발됨

- 2019년 주요 적발사례로,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코카인 불상량이 함유된 와인 10병(총중량 13kg 상당) 밀반입,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등 밀반입,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밀반입, 우리 국민이 미국 발 항공특급우편으로 코카인 16.17g 밀반입 등 각 적발, 코카인 약 100kg을 신고 콜롬비아에서 출항하여 충남 태안 해상으로 진입한 홍콩 국적의 선박을 적발하여 코카인 전량 압수함

다. 헤로인

- 2010년과 2012년에는 소량의 헤로인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11년, 2013년, 2014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음
- 2015년 헤로인 총 압수량은 4.54g으로, 미국에서 밀반입된 3.19g(3건)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량은 국적불명임
- 2016년에는 미국에서 헤로인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0.03g을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7년에는 캐나다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3.73g을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8년에는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1.93g을 밀반입하다 적발됨



라. 대마초

- 2019년 대마초 밀반입량 및 압수량은 총 39,131g으로 전년(30,924g) 대비 26.5% 증가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밀반입량은 19,840g, 나이지리아에서의 밀반입량은 6,368g, 미국에서의 밀반입량은 4,878g, 태국에서의 밀반입량은 3,837g, 캐나다에서의 밀반입량은 2,685g 순임
- 최근 북아메리카 일부 주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로 인해 미국, 캐나다에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일반 대마초 뿐만 아니라 대마 카트리지,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등 대마 제품류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13년에는 음반 판매업자가 네덜란드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837g을 밀반입한 사건과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대마가루 1,000g을 밀반입한 사건, 주한미군이 지인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435g을 밀반입한 사건이 각각 적발됨
- 2015년에는 대만인이 캐나다에서 대마초 6,523g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사건이 적발됨
- 2017년에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1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한 뒤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 후 수령하려 한 사건, 우리 국민이 클럽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 후 캐나다에서 대마 약 450g을 밀반입한 사건, 중고차 판매원 등이 베트남에서 대마 약 1.1kg을 밀반입한 사건 등이 적발됨
-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18kg을 홍콩 경유,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사건, 미국 국적 교포가 미국에서 대마 약 2.25kg을 밀반입한 사건 등이 적발됨

- 2019년 주요 적발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비닐포장 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약 1,890kg을,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여행용가방에 대마 약 2,748g을, 미국인이 항공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나이지리아에서 대마초 1,259g을 밀수입하려다 각 적발됨
- 2018년 및 2019년 최근 범죄 수법으로 마약사범들은 딥 웹(deep web)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 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음
- 주요 적발 사례로 2018년에는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의 유명 판매상인 'OO킹' 일당 3명이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 놓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후, 200회 이상 판매광고를 통해 약 5개월간 합계 1억 2천만원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사건이 적발됨
- 2019년에는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OO코리아'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함과 동시에, 창고 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다음 약 5개월간 합계 9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사건, 트위터 등에 총 42회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 후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사건이 적발됨



마. 야 바¹⁶

- ① 최근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다음, 공장 기숙사, 아시아 식료품 가게, 노래방 등에서 주로 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함
- ② 2018년에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이 태국에서 야바 1,418g을 밀반입한 사건, 태국인 3명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990g을 밀반입한 사건, 태국인 2명이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147g을 밀반입한 사건, 태국인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329g을 밀반입한 사건 등이 적발됨
- ③ 2019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594정 등을 밀반입한 사건,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99정 등을 밀반입한 사건,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야바 1,330정 등을 밀반입한 사건, 태국인이 태국 방콕에서 여행용 가방에 야바 14,118정을 은닉한 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한 사건,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태국 발 국제소포우편물로 야바 5,094정을 밀반입한 사건 등이 각 적발됨

¹⁶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을 이끌었던 쿤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바. 기타

- ④ 기타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LSD, GHB (일명 ‘물뽕’), 알킬 니트리트류¹⁷, 케타민, 사일로신, 알프라졸람, 졸피뎀,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콜릿,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등 대마계 제품류 등으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 ④ 특히, 엠디엠에이, LSD, 알킬 니트리트류 등은 인터넷과 국제우편 등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입이 용이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각작용은 수배 강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대학생과 유학생 등 젊은층이 밀반입하고 있음
- ④ 2019년 기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적발 사례로는, 베트남인이 해시시 23.7g과 마약 버섯(사일리신) 13.46g을 국제화물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사건, 우리 국민 3명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MDMA 1,125정 및 7.76g, 케타민 31.05g을 밀반입한 사건, 이집트인이 해시시 약 2kg을 크로스백 및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한 사건, 한국인 2명이 베트남에서 MDMA 1,000정을 신체에 은닉하여 밀반입한 사건,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LSD 300장을 밀반입한 사건 등이 각 적발됨

¹⁷ 일명 ‘러시’로 불리고 있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이 남용됨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표 3-16]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속사범수	640	957	932	948	1,529
증감률(%)	16.2	49.5	-2.6	1.7	61.3

- 2000년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자들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영향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의 국내 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010년 85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1년에는 27개국 295명으로 전년 대비 65.6% 감소함
- 2012년에는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 및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범죄 증가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31개국 359명의 마약류사범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38.6%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개국 393명이 단속되어 소폭 증가함
- 2015년에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34개국 640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16.2%(전년도 33개국 551명) 증가함
- 2016년에는 31개국 957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49.5%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4개국 932명, 2018년에는 35개국 948명이 단속되어 비슷한 수준임

- 2019년에는 43개국 1,529명이 단속되어 전년 대비 61.3% 증가한 바, 태국인이 551명, 중국인 431명, 미국인 111명, 우즈베키스탄인 84명, 러시아인 75명, 베트남인 61명 순임
- 최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은 취업 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본국 등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동료 근로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특히 태국인들은 건설 및 공장 근로자들이 야바 등을 밀반입하여 투약한 사례가 많았으며, 미국인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로 대마 제품을 쉽게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사례가 많았음

[표 3-17]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640 (100)	957 (100)	932 (100)	948 (100)	1,529 (100)
마약	26 (4.1)	25 (2.6)	14 (1.5)	36 (3.8)	32 (2.1)
향정	499 (78.0)	834 (87.1)	784 (84.1)	770 (81.2)	1,215 (79.5)
대마	115 (17.9)	98 (10.2)	134 (14.4)	142 (15.0)	282 (18.4)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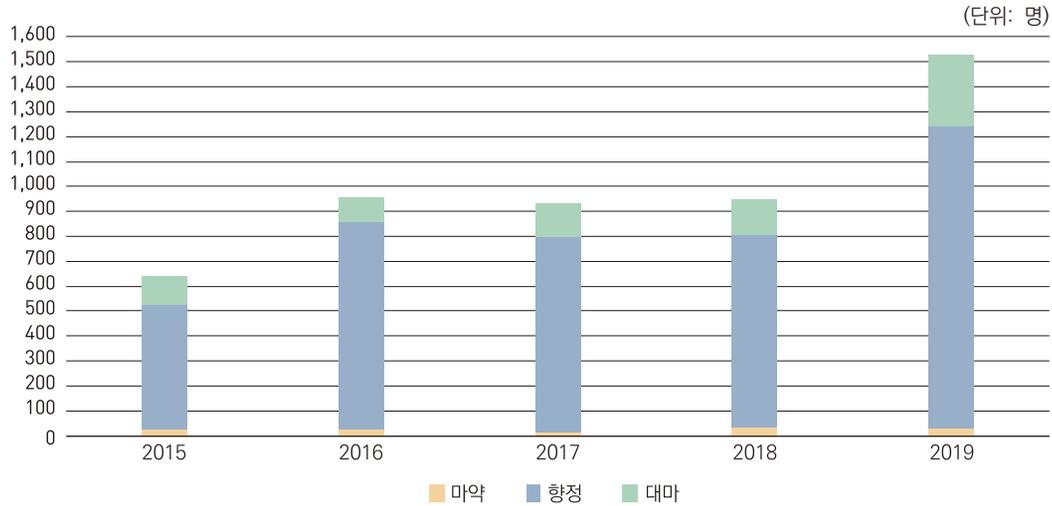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마사범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 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함



- ④ 2019년에는 향정사범이 79.5%, 대마사범이 18.4%, 마약사범이 2.1%를 각각 점유함
- ④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인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사례, 대만인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례와 태국인 야바(YABA) 밀반입 및 투약 사례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④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하기 보다는 속칭 ‘프리베이스’¹⁸ 방식으로 투약하고, 주로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함
- ④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여 투약함. 특히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태국인 사이에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빈발함
- ④ 국내 체류 태국인 마약 공급책(밀수범)이 태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야바를 밀반입한 후, 중간 판매상에게 도매가로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파악됨

¹⁸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이나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 물병 속에 2개의 빨대를 꽂아서 그 중 한 개의 빨대로 연기를 들여보내 물속에서 불순물이 걸러지도록 한 다음 나머지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표 3-18]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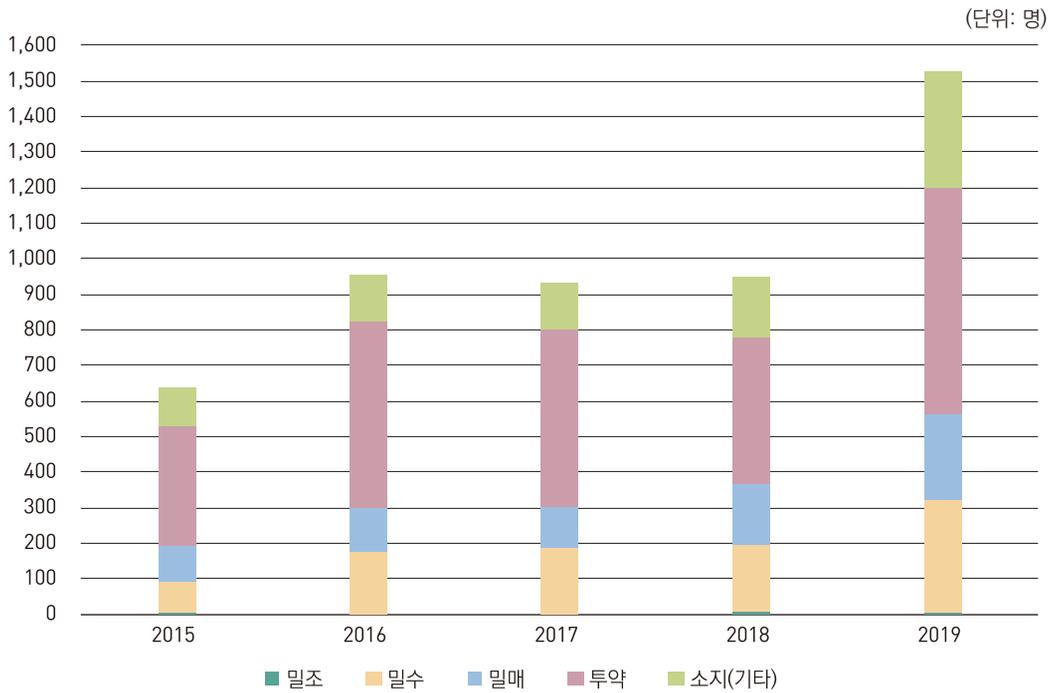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640 (100)	957 (100)	932 (100)	948 (100)	1,529 (100)
밀조	1 (0.2)	0 (0.0)	0 (0.0)	3 (0.3)	2 (0.1)
밀수	91 (14.2)	176 (18.4)	186 (20.0)	196 (20.7)	323 (21.1)
밀매	101 (15.8)	125 (13.1)	115 (12.3)	165 (17.4)	235 (15.4)
투약	336 (52.5)	522 (54.5)	504 (54.1)	417 (44.0)	643 (42.1)
소지	36 (5.6)	30 (3.1)	38 (4.1)	54 (5.7)	65 (4.3)
기타	75 (11.7)	104 (10.9)	89 (9.5)	113 (11.9)	261 (17.1)

※ ()는 구성비 %

- 외국인 마약류사범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2019년에는 투약 42.1%, 밀수 21.1%, 밀매 15.4% 순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하여 동료나 지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함에 따라 밀수와 투약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용이, 마약류를 대하는 국가별 문화 차이,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시장의 높은 시세 형성 등의 이유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표 3-19]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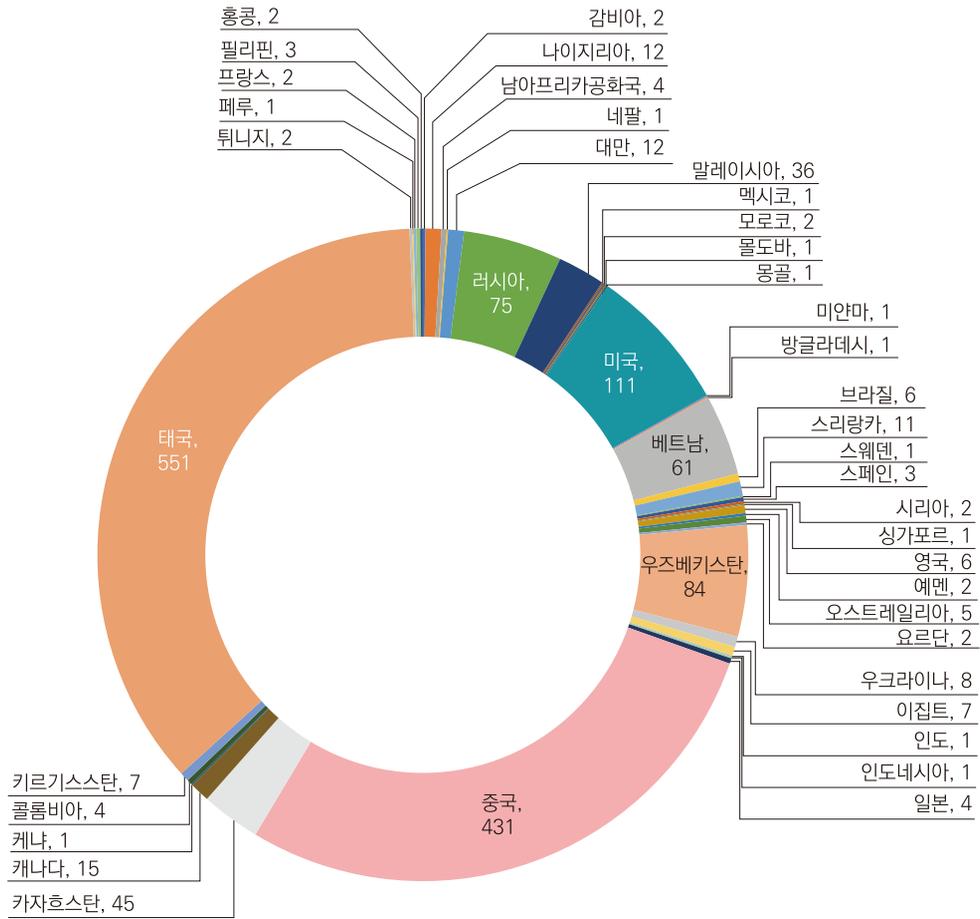
연도별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태국
2	태국	태국	태국	태국	중국
3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표 3-20] 2019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2	12	4	1	12	75	36	1
모로코	몰도바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2	1	1	111	1	1	61	6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시리아	싱가포르	영국	예멘	오스트레일리아
11	1	3	2	1	6	2	5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2	84	8	7	1	1	4	431
카자흐스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니지	페루
45	15	1	4	7	551	2	1
프랑스	필리핀	홍콩					
2	3	2					

[그림 3-10] 2019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구성



[표 3-21]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	명	명	구성비 %								
합계		91	(100)	176	(100)	186	(100)	196	(100)	323	(100)	
중국		61	(67.0)	116	(65.9)	89	(47.9)	90	(45.9)	74	(22.9)	
미국		11	(12.1)	10	(5.7)	7	(3.8)	17	(8.7)	5	(1.5)	
태국		13	(14.3)	37	(21.1)	75	(40.4)	70	(35.7)	145	(44.9)	
러시아		2	(2.2)	2	(1.1)	1	(0.5)			16	(5.0)	
우즈베키스탄		1	(1.1)	1	(0.6)			3	(1.5)	33	(10.2)	
카자흐스탄								1	(0.5)	7	(2.2)	
키르기스스탄										2	(0.6)	
우크라이나										1	(0.3)	
필리핀		1	(1.1)	2	(1.1)							
베트남				3	(1.7)			3	(1.5)	14	(4.3)	
캐나다		1	(1.1)					3	(1.5)	3	(0.9)	
감비아										1	(0.3)	
방글라데시		1	(1.1)									
영국						1	(0.5)			1	(0.3)	
사우디아라비아				2	(1.1)							
스리랑카				1	(0.6)					2	(0.6)	
이집트				2	(1.1)	1	(0.5)			1	(0.3)	
나이지리아						3	(1.7)	1	(0.5)	2	(0.6)	
대만						6	(3.2)	2	(1.0)	4	(1.2)	
말레이시아						1	(0.5)			2	(0.6)	
예멘						1	(0.5)					
일본						1	(0.5)	2	(1.0)	3	(0.9)	
가나								1	(0.5)			
브라질								1	(0.5)	1	(0.3)	
캄보디아								2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	(0.3)	
스페인										1	(0.3)	
인도네시아										1	(0.3)	
콜롬비아										3	(0.9)	

※ ()는 구성비 %



[표 3-22]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순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태국
2		태국	태국	태국	태국	중국
3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경우, 2004년에는 이란인(39.1%), 2005년에는 미국인(13.0%)과 중국인(13.0%),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인(40.0%), 2007년에는 중국인(28.6%)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8년에서 2010년에는 태국인이 각 64.7%, 29.4%, 32.0%를 점유하였음
- 2011년에는 중국인이 44.4%를, 2012년~2013년에는 미국인이 각 38.1%, 38.3%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014년에서 2018년에는 중국인이 각 56.6%, 67.0%, 65.9%, 47.9%, 45.9%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 원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큰 수익을 노린 중국인(특히, 조선족)들이 마약류 밀거래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9년에는 태국인이 44.9%, 중국인이 22.9%, 우즈베키스탄이 10.2%를 점유함. 태국인의 경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사례가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의 경우 광주 OO동 일대 'OOO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구소련 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동포 및 그 후손들이 대마초 밀수 및 흡연 사실로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임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이 점차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가. 개 요

- 예전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로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약류 밀수·밀매를 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금기시하던 관행을 깨고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류 밀매와 밀수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2011년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대파」 조직원이 중국 「흑사회」와 연계하여 중국 연태항 등에서 부산항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5.95kg을 밀수, 유통한 사례가 있고, 2015년 일본 야쿠자 「쿄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일본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0kg을 밀수하여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 2017년 대만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파」 조직원 및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26kg을 밀수하여 유통 및 일본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 2018년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50kg 이상을 밀수하여 국내 또는 일본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
-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015년 38개파 55명, 2016년 48개파 65명, 2017년 44개파 72명, 2018년 35개파 77명, 2019년 21개파 29명임



[표 3-23]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	점유율(%)
2015		11,916	55	0.5
2016		14,214	65	0.5
2017		14,123	72	0.5
2018		12,613	77	0.6
2019		16,044	29	0.2

[표 3-24]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2015		55 (100)	1 (1.8)	2 (3.6)	18 (32.8)	28 (50.9)	6 (10.9)
2016		65 (100)	1 (1.5)	2 (3.1)	24 (36.9)	25 (38.5)	13 (20.0)
2017		72 (100)	0 (0.0)	2 (2.8)	19 (26.4)	28 (38.9)	23 (31.9)
2018		77 (100)	0 (0.0)	1 (1.3)	20 (26.0)	39 (50.6)	17 (22.1)
2019		29 (100)	0 (0.0)	0 (0.0)	8 (27.6)	15 (51.7)	6 (20.7)

※ ()는 구성비 %

[표 3-25] 2019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0	0	8	15	6	29
인천	꿀망파(인천)				1		1
경기	안양타이거파(안양)					1	1
	동두천식구파(동두천)					1	1
	국제마피아파(성남)				1		1
충청	송악파(천안)					1	1
	시라소니파(청주)				1		1
대구	내당동파(대구)			1			1
영남	통합서면파(부산서면)			1			1
	재건서면파(부산서면)				1		1
	인수파(부산)					1	1
	칠성파(부산)			1	1		2
	일호파(거제)				2	1	3
	괴정사거리파(사하구)				2		2
	악마파(부산)				1		1
	이병률파(진주)				1		1
호남	수기동파(광주)				1		1
	충장OB파(광주)			1	1		2
	신양OB파(광주)			1	1	1	3
	대인동파(광주)			2			2
	무등산파(광주)			1			1
	서방파(광주)				1		1



나. 대표적 개입사례

밀제조 관련 사건

- 1999. 5.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명이 판매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9kg을 밀조한 후 대구·부산 지역에서 밀매 (대구지검)
- 2001.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 등이 필로폰 약 10kg을 밀조한 후 부산·대구 지역에서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03. 11.경 일본 야쿠자 「마쯔바카이(松葉會)」 부두목이 중국에서 필로폰 반제품을 밀반입한 후,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은닉하여 경유지인 우리나라로 밀반입하여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적발 (서울중앙지검)
- 2015. 1.~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제조, 마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물질 2.4kg을 압수 (광주지검)
- 2015. 12.경 강원지역 폭력조직 「강릉식구파」 행동대장 등이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 필로폰과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만들어 필로폰 제조 예비 (부산지검)

밀수 관련 사건

- 2007. 8.경 성남지역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11.9g 밀반입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7. 9.경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구치구미(山口組)」의 중간 보스 등이 홍콩에서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약 615g 밀반입 후, 같은 해 11. 8.경 위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 (부산지검)
- 2009. 9.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9.74g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 LA 한인지역 갱단 「LGKK」 조직원이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48.2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키(住吉會)」 간부가 중국에서 필로폰 987g을 구입한 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3.~4.경 충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이 태국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7g 밀반입 (청주지검)
- 2010.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46.58g 밀반입 (부산동부지청)
- 2010. 4.경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黑社會)」 심양지역 두목이 중국에서 필로폰 900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1. 10.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 밀반입 (수원지검)
- ④ 2011. 12.~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25g 밀반입 (전주지검)
- ④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98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2. 6.~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 등 4명이 대만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 밀반입 (부산지검)
- ④ 2012.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4kg 밀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홍콩에서 필로폰 약 63g 밀반입 (수원지검)
- ④ 2013.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7kg을 대형 커피머신에 은닉하여 중국 청도항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④ 2014.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비닐로 포장한 뒤 허리부위에 은닉하여 김해 국제 공항으로 밀반입 (울산지검)

- ④ 2015. 5.경 일본 야쿠자「교쿠토카이(極東會)」조직원이 필로폰 약 10kg을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 ④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온천동파」행동대장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명 불상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8kg을 건네받아 화물선 조리장 객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④ 2016.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향촌동신파」조직원이 중국에서 김포 국제 공항으로 필로폰 약 261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6.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강화월드파」행동대장이 조선족 운반책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50.6g을 밀반입하도록 지시 (인천지검)
- ④ 2017. 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천안남산파」고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7.77g을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 공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④ 2018. 4.경 김해지역 폭력조직「삼방파」행동대원이 태국에서 대마 약 130.3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밀매 관련 사건

- ④ 2007. 3.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8g을 밀매, 투약 (고양지청)
- ④ 2007.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 및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 공모하여 필로폰 약 8.62g을 160만원에 밀매 (대전지검)
- ④ 2007. 8.경 제주지역 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제주지검)
- ④ 2008.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이 필로폰 약 0.18g을 3회에 걸쳐 밀매 (대구서부지청)
- ④ 2008. 4.~2010. 1.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밀매, 수 회에 걸쳐 소지, 투약 (수원지검)
- ④ 2008.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80g 밀매, 투약 (인천지검)
- ④ 2008.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3.5g 매매 알선 및 2g 밀매 (인천지검)
- ④ 2008. 8.경 부평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1.4g 매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 ④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이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고 6회에 걸쳐 매매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 ④ 2008. 12.경 광양지역 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이 필로폰 약 3g 밀매 (울산지검)
- ④ 2009. 1.~3.경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이 필로폰 약 20g 밀매, 투약 (의정부지검)
- ④ 2009.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돈지파」 두목이 필로폰 밀매 (대구서부지청)
- ④ 2009.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12g 밀매, 투약 (울산지검)
- ④ 2009. 2.~2010.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밀매, 투약 (인천지검)
- ④ 2009. 3.~12.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천호동구사거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수수 (서울중앙지검)
- ④ 2009. 6.~2010.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0.4g 밀매, 투약 (서울중앙지검)
- ④ 2009. 8.경 창원지역 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밀매 (창원지검)
- ④ 2009. 8.~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이 필로폰 약 0.4g 밀매, 투약 (부산동부지청)



- ④ 2009. 9.~2010.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g 밀매 및 교부 (수원지검)
- ④ 2010. 1.~11.경 의정부지역 폭력조직 「신세븐파」 행동대장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투약 (서울중앙지검)
- ④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g 밀매 (부산지검)
- ④ 2010. 3.~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명동신상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g 밀매 (고양지청)
- ④ 2010. 7.~8.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전국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천안지청)
- ④ 2010. 8.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5g 밀매 (서울중앙지검)
- ④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이 필로폰 약 3.8g 밀매 (평택지청)
- ④ 2010. 10.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이 필로폰 0.4g 밀매, 투약 (평택지청)
- ④ 2010. 12.~2011.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 프로포폴 8,000앰플(20ml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 (인천지검)

- ④ 2011. 1.경 부천지역 폭력조직 「소사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천시청)
- ④ 2011. 2.~4.경 군산지역 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9.8g 밀매, 필로폰 약 11.3g 매매 알선 (전주시검)
- ④ 2011. 3.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6g 밀매 (부천시청)
- ④ 2011.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1g 밀매 (부천시청)
- ④ 2011. 4.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밀매 (광주시검)
- ④ 2011.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전주시검)
- ④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0.5g을 밀매 (전주시검)
- ④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장 등 2명이 필로폰 3.5g 밀매, 투약 (수원지검)
- ④ 2012.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대전지역 폭력조직 「진술파」 행동대원 등 4명이 필로폰 48g 밀매 (대전지검)
- ④ 2013. 1.경 경북 김천지역 폭력조직 「제일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청주시검)



- ④ 2013.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진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알선 (광주지검)
- ④ 2013. 3.경 경남 거제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 ④ 2013.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미아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서울중앙지검)
- ④ 2013. 4.경 천안지역 폭력조직 「태평양파」 조직원이 필로폰 1.5g 밀매 (천안지청)
- ④ 2013.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8g 매매 알선 (광주지검)
- ④ 2013. 5.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④ 2013.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채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교부 및 필로폰 2g 매매 알선 (부산동부지청)
- ④ 2013.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④ 2013.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④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④ 2014. 1.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아파치파」 조직원이 6회에 걸쳐 필로폰 16g 밀매 (정읍지청)
- ④ 2014. 3.~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이 2회에 걸쳐 필로폰 0.1g 밀매, 필로폰 2회 투약 (인천지검)



- ④ 2014. 5.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여주상조회파」 조직원이 5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여주지청)
- ④ 2014. 10.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75g 밀매 및 대마 2회 흡연 (홍성지청)
- ④ 2014. 10.~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두목이 필로폰 1g 밀매 및 1회 투약 (원주지청)
- ④ 2014.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인파」 추종 폭력배가 필로폰 수회 밀매, 필로폰 4.93g 소지 (광주지검)
- ④ 2014. 11.경 김포지역 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0.2g 밀매 및 4회 투약 (청주지검)
- ④ 2015. 3.경 미국 LA지역 「멕시코 갱」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0.9g 소지 (서울동부지검)
- ④ 2015.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밀매 (안산지청)
- ④ 2015.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시청)
- ④ 2015. 4.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9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시청)
- ④ 2015.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1.6g 밀매 (성남지청)



- ④ 2015.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추정 폭력배가 필로폰 약 0.1g 밀매 (인천지검)
- ④ 2015.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5g 밀매 및 0.33g 소지 (부산지검)
- ④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1g 밀매 및 1.93g 소지 (부산지검)
- ④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약 0.07g 소지 (부산지검)
- ④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400g 밀매 (부산지검)
- ④ 2015.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산지검)
- ④ 2015. 1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인천신공항파」 두목이 필로폰 매매 알선 (대구 서부지청)
- ④ 2015. 12.경 미국 LA지역 한인 갱단 「LGKK」 조직원이 필로폰 약 150g 밀매 (의정부지검)
- ④ 2016.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광안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g 밀매 (부산지검)

- ④ 2016.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및 필로폰 약 5g 수수 (인천지검)
- ④ 2016. 2.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g 밀매 (인천지검)
- ④ 2016. 2.~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4g 교부, 필로폰 0.14g 밀매 및 2016. 6.경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6. 8.~11.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여주 희망상조회」 행동대장, 「하남청개구리파」 중간간부, 「양평남한강식구파」 간부 3명이 공모하여 부산에서 필로폰 10g 밀매 (여주지청)
- ④ 2016. 7.~2017.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꽃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회 밀매, 6회 투약 (인천지검)
- ④ 2015. 8.~2017. 12.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전 「온양 태평양파」 조직원 2명이 다량의 필로폰 밀매 및 투약 (서산지청)
- ④ 2018. 3.경 창원·마산지역 폭력조직 「연합오동동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200g 밀매 (부산지검)
- ④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창수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4g 밀매하고, 필로폰 약 14.59g 및 대마 약 4.2g 소지 (울산지검)
- ④ 2018. 9.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무상 교부 (의정부지검)



- 2019. 6.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20g 밀매 (대구 지검)

투약 · 수수 · 소지 등 관련 사건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투약 (부산 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해운대지부」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 수수 (안양지청)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울산지검)

- ④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④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수원지검)
- ④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④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④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의정부지검)
- ④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④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인천지검)
- ④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5g 수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④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03g 투약 (부산지검)
- ④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4.46g 소지 (인천지검)
- ④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4g 투약 (평택지청)



- ④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등 3명이 필로폰 투약 (안양지청)
- ④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73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④ 2012.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 등 2명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④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④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④ 2012.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2.35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④ 2012. 6.경 포항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포항지청)
- ④ 2012. 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④ 2012.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인천지검)

- ④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9g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④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2.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0.18g 소지, 투약 (전주지검)
- ④ 2012. 11.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④ 2012. 1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3.8g 소지, 투약 (안양지청)
- ④ 2012.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68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④ 2013.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서울남부지검)
- ④ 2013. 3.경 전주지역 폭력조직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④ 2013.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④ 2013. 4.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④ 2013.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창원지검)



- ④ 2013. 7.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④ 2013. 7.경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성남지청)
- ④ 2013.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④ 2013. 7.경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밀양지청)
- ④ 2013. 7.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④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④ 2013. 11.경 김해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④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수유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서울북부지검)
- ④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수수, 흡연 (서울중앙지검)
- ④ 2014. 4.경 제천지역 폭력조직 「조가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3.17g 소지 (제천지청)
- ④ 2014. 5.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 (정읍지청)
- ④ 2014. 9.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2회 투약(대구지검)



- ④ 2014.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30g 소지 (울산지검)
- ④ 2014. 10.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서울중앙지검)
- ④ 2014. 11.경 영광지역 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3g 소지 (광주지검)
- ④ 2014. 11.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홍성지청)
- ④ 2015.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5. 3.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의정부지검)
- ④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6g 소지, 투약 및 대마 0.13g 소지 (부산지검)
- ④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4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④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7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④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④ 2015.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④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④ 2015. 9.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03g 교부 및 투약 (순천지청)
- ④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고문이 대마 약 470g 소지 및 대마 3회 흡연 (부산지검)
- ④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④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전동파(물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④ 2016. 5.~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익산구시장파」 조직원이 필로폰 불상량 수수 및 투약 (청주지검)
- ④ 2017. 1.~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창원지검)
- ④ 2017.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회 투약 및 약 6.2g 소지 (울산지검)



- 2017. 8.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72.69g 소지 (울산지검)
-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부두목이 필로폰 불상량 투약 (부산서부지청)
- 2019. 2.경 경남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0.05g씩 2회 투약 (통영지청)



보복범죄 관련 사건

- 1998. 4.경 서울지역 조직폭력배가 필로폰 10g에 소금을 섞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서울중앙지검)
- 1999.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등이 필로폰 1kg의 판매대금 7,000만원을 갚지 않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부산지검)
- 2000.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등이 필로폰 거래 문제로 같은 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 칼로 찔러 살해미수 (서울중앙지검)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1999. 11.경 피해자가 청주 지검에서 필로폰 취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협박 (대전지검)

8.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현황

가. 개요

- ① 국내 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면서 국제우편 또는 국제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 지속적 증가 추세임
- ② 마약 중독자가 아닌 일반인의 인터넷 마약류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에의 접근 차단이 필요함
- ③ 2016. 12.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개시, 인터넷 상 마약류 불법게시물·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및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수사 착수함
- ④ 2017. 1.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77호, 마약과] 시행함

[표 3-26]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실적¹⁹

연도별	유형별	차단·삭제 요청(건)	수사	
			인지(건/명)	구속(명)
2015		450	3/4	2
2016		1,439	6/6	5
2017		7,890	54/54	25
2018		2,417	66/35	18
2019		1,570	54/50	24
합계		13,766	183/149	74

¹⁹ 2014.~2016.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한 수작업 모니터링 실적



나. 주요 수사 사례

- 2017. 1.~3.경 필로폰 판매자(일명 '조커')의 제안을 받고 판매 광고 동영상 9편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한 다음, 그 대가로 필로폰 약 2.1g을 수수하고 투약한 광고 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4.경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밀매사범(일명 '배트맨') 구속 (서울동부지검)
- 2017. 5.~6.경 추적이 어려운 채팅앱을 이용해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수까지 하려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범 구속 (부산지검)
- 2016. 6.~2017. 8.경 도심 상가건물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딥웹'에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고교동창생으로 구성된 일당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2.~7.경 필리핀을 거점으로 필로폰 약 300g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광고와 SNS 채팅을 통해 수 백 명에게 판매하여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은 판매조직을 적발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4명을 구속 (수원지검)
- 2017. 11.~2018. 5.경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다크웹 대마 판매 전문사이트 'A○○○○'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다량의 대마를 유통한 일명 '서울킹' 일당 3명을 구속, 재배 중인 대마 299주와 수확 후 건조된 대마 약 1kg 압수 (서울중앙지검)



- 2018. 1.~11.경 다크웹 마약류 판매 전문사이트 'BOO OO' 개설 후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마, LSD, 엑스터시, DMT, 케타민 등을 광고·알선·판매한 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판매상 등 총 13명을 입건하여 그 중 9명을 구속, 회원 약 636명이 가입된 사이트를 폐쇄 조치 (서울중앙지검)
- 2019. 7.~10.경 트위터 등에 '그OOOO', '세OO' 아이디로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수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임차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한 판매조직을 적발, 조직원 7명 전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9.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가. 개요

- ① 마약류 밀조·밀매 및 오남용을 유도하는 『인터넷·SNS 등 이용 광고행위』로 인해 마약류사범 증가함
- ② 마약류 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주요 개정 내용

1.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제3조 제12호)
2.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제62조 제1항 제4호)

- ③ 2017. 6. 3.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마약류 제조·매매 등 광고행위처벌 신설, '16. 12. 2. 공포) 시행

[표 3-27] 2019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
1	서울남부	1	GHB	즐톡	-
2	평택지청	1	필로폰	즐톡	-
3	평택지청	1	필로폰	채팅어플	-
4	안산지청	1	졸피뎀	인터넷 카페	-
5	서울중앙	3	대마초	다크웹	29주, 1,233.5g
6	서울남부	1	필로폰	영톡	-
7	대구지검	1	필로폰	영톡	-
8	평택지청	1	필로폰	영톡	-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
9	인천지검	1	대마초	트위터	-
10	인천지검	1	대마초	트위터	27.14g
11	청주지검	1	필로폰	즐톡	-
12	대구지검	1	필로폰	텔레그램	-
13	대구지검	1	필로폰	즐톡	-
14	평택지청	1	펜터민	인터넷 번개장터	-
15	제주지검	1	이소부틸니트리트, GHB	핀터레스트, 왓츠앱	-
16	성남지청	1	졸피뎀	네이버	-
17	서울중앙	3	대마초	다크웹	72.25g
18	서울중앙	3	대마초	다크웹	351주, 877.6g
19	서울중앙	3	대마초	다크웹	529.15g
20	서울중앙	2	대마초	다크웹	-
21	서울중앙	2	MDMA, 대마초	트위터, 텔레그램, 울진21, 라디오서울	MDMA 47정, 대마 501.69g
22	서울중앙	1	대마초	다크웹	431.81g
23	서울중앙	1	필로폰, LSD, 대마초, MDMA, GHB	인터넷 텀블러	대마 66g
24	서울동부	1	필로폰	텔레그램, 구글	-
25	서울중앙	1	합성대마	트위터, 구글	510ml
26	서울동부	2	필로폰	텔레그램, 트위터	0.5g
27	대구지검	1	필로폰	텀블러	-
28	서울중앙	1	대마초	하이코리아	0.02g
29	서울중앙	5	MDMA, LSD, 대마	트위터	대마 996g, MDMA 182정, 필로폰 39.99g
30	서울중앙	1	대마초	하이코리아	-
31	서울중앙	2	대마초	텔레그램	-
32	서울중앙	1	대마초	하이코리아	2kg
33	서울중앙	2	코카인, 필로폰	텔레그램	-
총계		50			



나. 주요 수사 사례

- 2017. 6.경 인터넷에 4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 희망자 13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함께 4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전력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10.경 '즐톡'에 "아이스 작대기 있다능, 얼음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얼음 있어요" 등과 같은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안동지청)
- 2018. 3.경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페이스북' 게시판에 "신상=냄새풀풀 고약, ... 신상 christol"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의정부지검)
- 2018. 1.~3. '트위터', '유튜브' 및 '다크웹' 등에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대마초 팝니다....와이어 메신저 ID: ○○○ 친추.... 사진 선명도 확인 보유된 제품의 양 확인....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고 ... 이용하세요...." 등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234회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8. 3.~10. '다크웹'에 "... 대마 품종의 한 종류 팝니다. ○○리 시드샵에서 구매했습니다. ... 전날미리 입금하시면 다음날 통신 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총 16회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8. 11.초순 '다크웹'에 '[ON][서울 경기] ice, mess 순도 97%↑ 원산지: north korea'라는 제목 아래, "... 여러분께 순도 높은 북한산 얼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 최소 수량 1짜대기 ○○에 모십니다. 대량 도매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2.~12. 다크웹 하이코리아 및 미미숍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238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대마 약 2kg을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4.~7. ‘트위터’ 등 인터넷에 “제가 단골 되어드리구 확실한 놈이란 꼬리표 붙게끔 열심히 뛰어댕겨요. 언제든지 통신보안, 안전드랍, 생명입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42회에 걸쳐 대마 약 84g 및 엑스터시 6정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구속, 대마초 약 600g 및 엑스터시 47정 등 압수 (서울중앙지검)
- ④ 2016. 2.~2019. 4.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 짹짹! 솔루션의 재배력도 같이 자라는지 안팎으로 트라이콤이 팍 찬드들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74g을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대마초 약 400g 압수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11.~2019. 3.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안녕하세요! 풀00선생님입니다. 1월31자로 재입고 완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마 약 1kg을 약 9,000만 원에 판매한 마약사범 3명 적발하여 2명 구속, 곤00 지역 창고건물에서 재배 중인 대마 351주 및 대마초 약 877g 압수 (서울중앙지검)

10.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28]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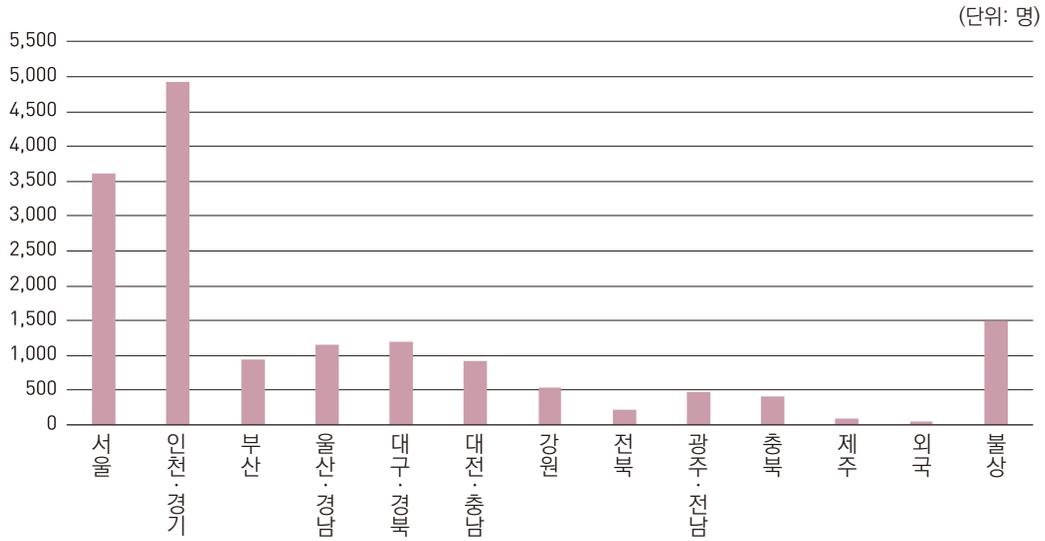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12,613 (100)	16,044 (100)
서울	2,319 (19.4)	2,792 (19.7)	2,789 (19.8)	2,677 (21.2)	3,607 (22.5)
인천·경기	3,584 (30.0)	4,010 (28.2)	4,045 (28.6)	3,530 (28.0)	4,931 (30.7)
부산	1,127 (9.5)	1,308 (9.2)	1,380 (9.8)	1,125 (8.9)	935 (5.8)
울산·경남	937 (7.9)	1,171 (8.2)	1,308 (9.3)	1,001 (7.9)	1,156 (7.2)
대구·경북	967 (8.1)	1,102 (7.8)	1,133 (8.0)	977 (7.7)	1,193 (7.4)
대전·충남	584 (4.9)	843 (5.9)	792 (5.6)	751 (6.0)	923 (5.8)
강원	464 (3.9)	468 (3.3)	384 (2.7)	363 (2.9)	538 (3.4)
전북	105 (0.9)	167 (1.2)	150 (1.1)	140 (1.1)	226 (1.4)
광주·전남	365 (3.1)	460 (3.2)	381 (2.7)	391 (3.1)	468 (2.9)
충북	236 (2.0)	390 (2.7)	371 (2.6)	362 (2.9)	419 (2.6)
제주	72 (0.6)	66 (0.5)	81 (0.6)	56 (0.4)	89 (0.6)
외국	31 (0.3)	31 (0.2)	20 (0.1)	53 (0.4)	61 (0.4)
불상	1,125 (9.4)	1,406 (9.9)	1,289 (9.1)	1,187 (9.4)	1,498 (9.3)

※ ()는 구성비 %

- 2019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53.2%), 대구·경북(7.4%), 울산·경남(7.2%), 부산(5.8%), 대전·충남(5.8%) 순으로 전체사범 중 73.7%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표 3-29]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단위: 명)

지역별	구분	2018	2019	증감률(%)
서울		2,677	3,607	34.7
인천·경기		3,530	4,931	39.7
부산		1,125	935	-16.9
울산·경남		1,001	1,156	15.5
대구·경북		977	1,193	22.1
대전·충남		751	923	22.9
강원		363	538	48.2
전북		140	226	61.4
광주·전남		391	468	19.7
충북		362	419	15.7
제주		56	89	58.9
외국		53	61	15.1
불상		1,187	1,498	26.2

- 전년대비 단속인원 증감률은 전북지역 61.4%, 제주지역 58.9%, 강원지역 48.2%, 인천·경기지역 39.7%, 서울지역 34.7% 순으로 각 증가하였고, 부산지역만 16.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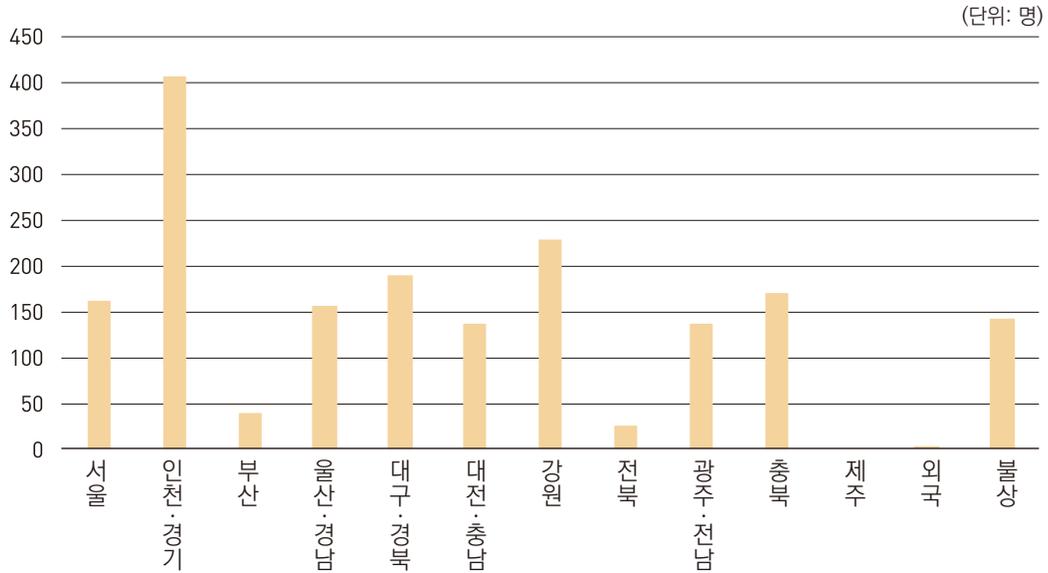
[표 3-30]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53 (100)	1,383 (100)	1,475 (100)	1,467 (100)	1,804 (100)
서울	52 (4.5)	83 (6.0)	98 (6.7)	97 (6.6)	161 (8.9)
인천·경기	352 (30.5)	243 (17.6)	279 (18.9)	352 (24.0)	408 (22.6)
부산	35 (3.1)	45 (3.2)	42 (2.8)	41 (2.8)	40 (2.2)
울산·경남	65 (5.7)	139 (10.0)	174 (11.8)	148 (10.1)	157 (8.7)
대구·경북	111 (9.6)	153 (11.1)	195 (13.2)	181 (12.3)	191 (10.6)
대전·충남	32 (2.8)	172 (12.4)	197 (13.4)	136 (9.3)	136 (7.5)
강원	245 (21.2)	138 (10.0)	141 (9.6)	180 (12.3)	230 (12.7)
전북	14 (1.2)	19 (1.4)	30 (2.0)	15 (1.0)	25 (1.4)
광주·전남	127 (11.0)	151 (10.9)	112 (7.6)	110 (7.5)	138 (7.6)
충북	73 (6.3)	196 (14.2)	158 (10.7)	139 (9.5)	172 (9.5)
제주	1 (0.1)	2 (0.1)	5 (0.3)	1 (0.1)	0 (0.0)
외국	3 (0.3)	8 (0.6)	0 (0.0)	7 (0.5)	2 (0.1)
불상	43 (3.7)	34 (2.5)	44 (3.0)	60 (4.1)	144 (8.0)

※ ()는 구성비 %

[그림 3-12]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2019년 마약사범은 1,804명으로 전년(1,467명) 대비 23.0% 증가한 바, 서울 지역이 161명으로 전년(97명) 대비 66.0% 증가, 인천·경기지역 408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15.9% 증가, 강원지역 230명으로 전년(180명) 대비 27.8% 증가함
- 마약사범은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22.6%), 강원지역(12.7%), 대구·경북(10.6%), 충북지역(9.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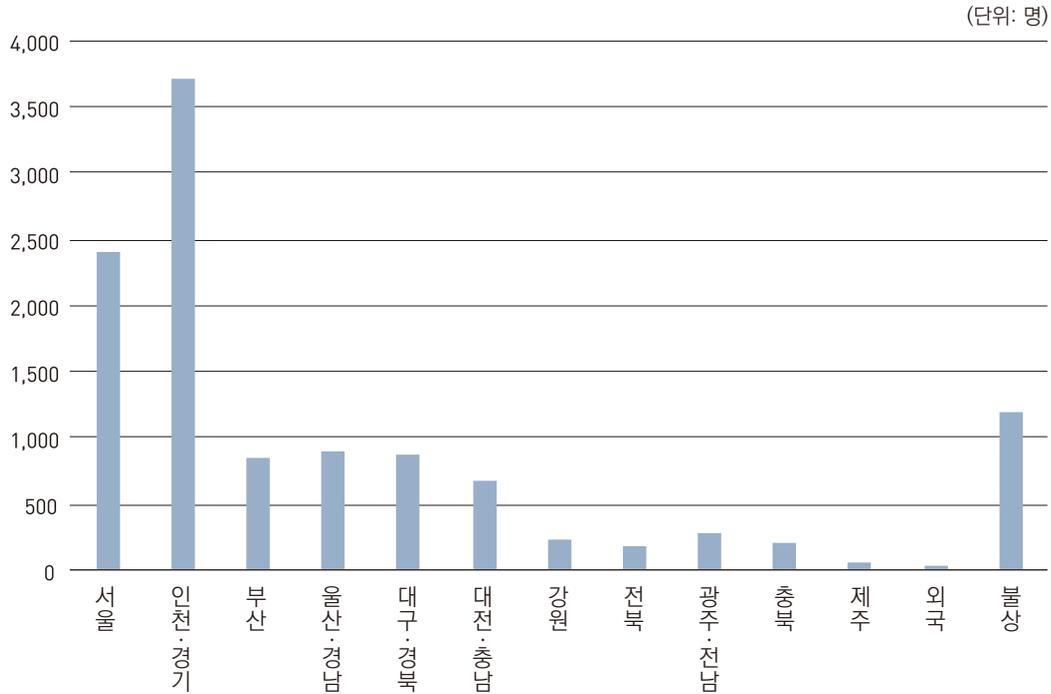
[표 3-31]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9,624 (100)	11,396 (100)	10,921 (100)	9,613 (100)	11,611 (100)
서울	1,894 (19.7)	2,239 (19.6)	2,109 (19.3)	2,131 (22.2)	2,401 (20.7)
인천·경기	2,878 (29.9)	3,343 (29.3)	3,215 (29.5)	2,703 (28.1)	3,725 (32.1)
부산	1,057 (11.0)	1,216 (10.7)	1,217 (11.2)	973 (10.1)	839 (7.2)
울산·경남	818 (8.5)	976 (8.6)	1,072 (9.8)	778 (8.1)	893 (7.7)
대구·경북	793 (8.2)	859 (7.5)	853 (7.8)	706 (7.3)	870 (7.5)
대전·충남	478 (4.9)	569 (5.0)	517 (4.7)	522 (5.4)	687 (5.9)
강원	172 (1.8)	250 (2.2)	180 (1.6)	136 (1.4)	236 (2.0)
전북	85 (0.9)	134 (1.2)	106 (1.0)	111 (1.2)	177 (1.5)
광주·전남	212 (2.2)	276 (2.4)	250 (2.3)	250 (2.6)	282 (2.4)
충북	147 (1.5)	168 (1.5)	189 (1.7)	197 (2.0)	205 (1.8)
제주	66 (0.7)	58 (0.5)	67 (0.6)	46 (0.5)	68 (0.6)
외국	25 (0.3)	21 (0.2)	12 (0.1)	39 (0.4)	43 (0.4)
불상	999 (10.4)	1,287 (11.3)	1,134 (10.4)	1,021 (10.6)	1,185 (10.2)

※ ()는 구성비 %

[그림 3-13]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 2019년 향정사범은 11,611명으로 전년(9,613명) 대비 20.8% 증가한 바, 인천·경기지역이 3,725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37.8% 증가, 서울지역은 2,401명으로 전년(2,131명) 대비 12.7% 증가, 대구·경북지역은 870명으로 전년(706명) 대비 23.2% 증가, 대전·충남지역은 687명으로 전년(522명) 대비 31.6% 증가함
-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32.1%), 서울지역(20.7%), 울산·경남지역(7.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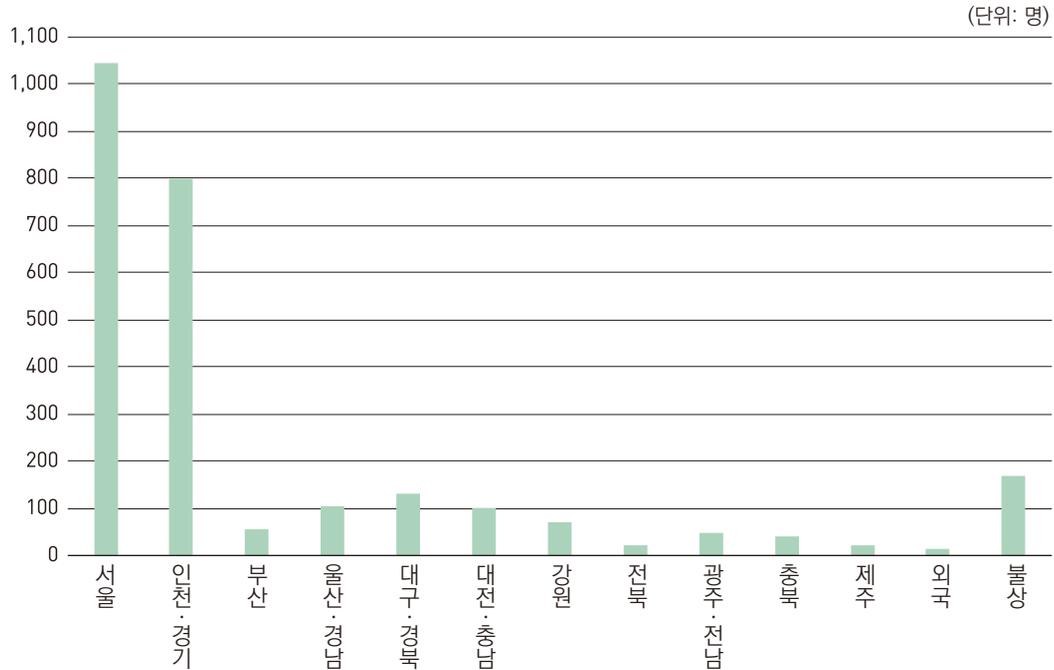
[표 3-32]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39 (100)	1,435 (100)	1,727 (100)	1,533 (100)	2,629 (100)
서울	373 (32.8)	470 (32.8)	582 (33.7)	449 (29.3)	1,045 (39.7)
인천·경기	354 (31.1)	424 (29.5)	551 (31.9)	475 (31.0)	798 (30.4)
부산	35 (3.1)	47 (3.3)	121 (7.0)	111 (7.2)	56 (2.1)
울산·경남	54 (4.7)	56 (3.9)	62 (3.6)	75 (4.9)	106 (4.0)
대구·경북	63 (5.5)	90 (6.3)	85 (4.9)	90 (5.9)	132 (5.0)
대전·충남	74 (6.5)	102 (7.1)	78 (4.5)	93 (6.1)	100 (3.8)
강원	47 (4.1)	80 (5.6)	63 (3.7)	47 (3.1)	72 (2.7)
전북	6 (0.5)	14 (1.0)	14 (0.8)	14 (0.9)	24 (0.9)
광주·전남	26 (2.3)	33 (2.3)	19 (1.1)	31 (2.0)	48 (1.8)
충북	16 (1.4)	26 (1.8)	24 (1.4)	26 (1.7)	42 (1.6)
제주	5 (0.4)	6 (0.4)	9 (0.5)	9 (0.6)	21 (0.8)
외국	3 (0.3)	2 (0.1)	8 (0.5)	7 (0.5)	16 (0.6)
불상	83 (7.3)	85 (5.9)	111 (6.4)	106 (6.9)	169 (6.4)

※ ()는 구성비 %

[그림 3-14]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2019년 대마사범은 2,629명으로 전년(1,533명) 대비 71.5% 증가한 바, 서울지역이 1,045명으로 전년(449명) 대비 132.7% 증가, 인천·경기지역이 798명으로 전년(475명) 대비 68.0% 증가, 대구·경북지역은 132명으로 전년(90명) 대비 46.7% 증가, 제주지역은 21명으로 전년(9명) 대비 133.4% 증가함
- 대마사범 점유율은 서울지역(39.7%), 인천·경기지역(30.4%), 대구·경북지역(5.0%) 순으로 나타남

11. 직업별 현황

[표 3-33]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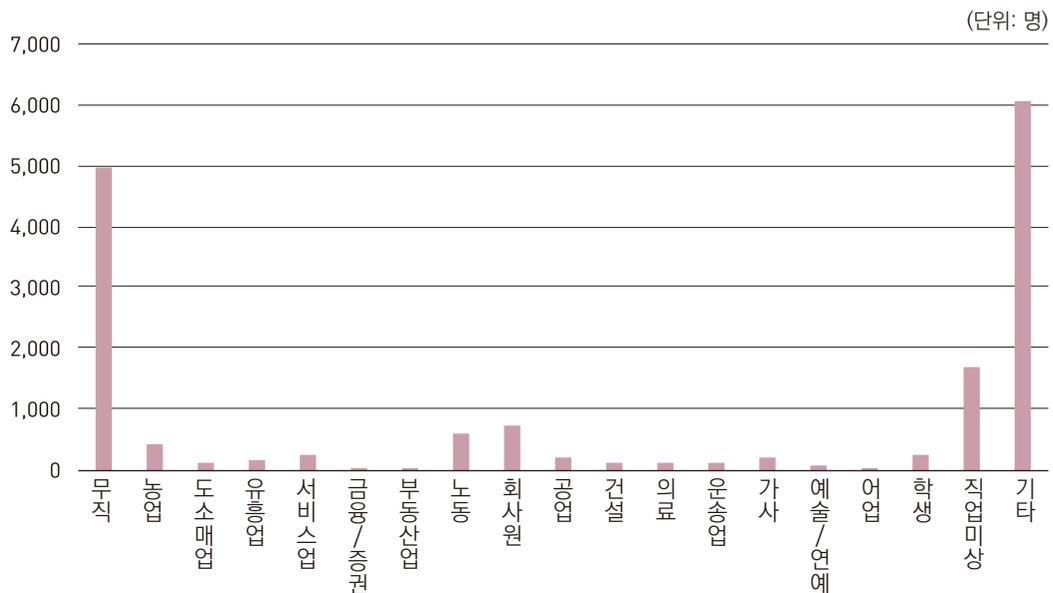
연도별 직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12,613 (100)	16,044 (100)
무직	3,442 (28.9)	4,105 (28.9)	4,073 (28.8)	3,753 (29.8)	4,972 (31.0)
농업	478 (4.0)	476 (3.3)	487 (3.5)	426 (3.4)	406 (2.5)
도소매업	99 (0.8)	110 (0.8)	96 (0.7)	63 (0.5)	93 (0.6)
유흥업	62 (0.5)	81 (0.6)	131 (0.9)	104 (0.8)	151 (0.9)
서비스업	150 (1.3)	159 (1.1)	184 (1.3)	175 (1.4)	225 (1.4)
금융/증권	18 (0.2)	18 (0.1)	15 (0.1)	21 (0.2)	13 (0.1)
부동산업	35 (0.3)	38 (0.3)	37 (0.3)	32 (0.3)	19 (0.1)
노동	359 (3.0)	446 (3.1)	534 (3.8)	407 (3.2)	588 (3.7)
회사원	514 (4.3)	492 (3.5)	522 (3.7)	534 (4.2)	723 (4.5)
공업	88 (0.7)	142 (1.0)	233 (1.7)	126 (1.0)	206 (1.3)
건설	68 (0.6)	72 (0.5)	118 (0.8)	80 (0.6)	130 (0.8)
의료	51 (0.4)	86 (0.6)	42 (0.3)	98 (0.8)	130 (0.8)
운송업	86 (0.7)	98 (0.7)	116 (0.8)	98 (0.8)	109 (0.7)
가사	138 (1.2)	153 (1.1)	152 (1.1)	168 (1.3)	180 (1.1)
예술/연예	18 (0.2)	32 (0.2)	46 (0.3)	43 (0.3)	49 (0.3)

연도별 직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어업	38 (0.3)	39 (0.3)	45 (0.3)	29 (0.2)	38 (0.2)
학생	139 (1.1)	80 (0.6)	105 (0.7)	123 (1.0)	241 (1.5)
직업미상	1,165 (9.8)	1,241 (8.7)	1,190 (8.4)	1,382 (11.0)	1,695 (10.6)
기타	4,968 (41.7)	6,346 (44.6)	5,997 (42.5)	4,951 (39.3)	6,076 (37.9)

※ ()는 구성비 %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1.0%), 회사원(4.5%), 노동(3.7%), 농업(2.5%) 순으로 나타남
- 그 중 마약사범의 경우 무직(33.0%), 농업(18.6%), 가사(3.9%) 순이고, 행정사범은 무직(32.2%), 회사원(4.4%), 노동(4.2%) 순이며, 대마사범은 무직(24.1%), 회사원(6.3%), 학생(3.7%) 순임

[그림 3-15]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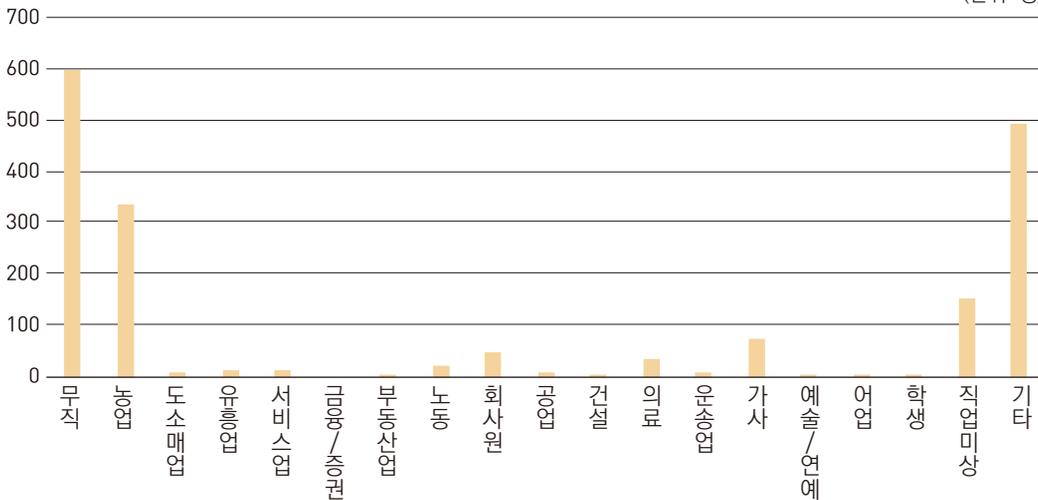
[표 3-34]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53	1,383	1,475	1,467	1,804
무직	358	423	460	438	595
농업	391	384	406	351	336
도소매업	1	5	3	2	8
유흥업	1	1	1	0	10
서비스업	7	7	27	17	12
금융/증권	0	1	0	0	0
부동산업	0	2	1	2	1
노동	21	18	27	27	21
회사원	23	27	34	36	46
공업	2	2	4	3	6
건설	2	1	10	2	4
의료	6	30	12	22	32
운송업	6	4	9	10	6
가사	47	61	60	63	71
예술/연예	0	0	0	2	4
어업	7	4	3	3	2
학생	0	3	2	1	4
직업미상	62	50	63	61	153
기타	219	360	353	427	493

[그림 3-16]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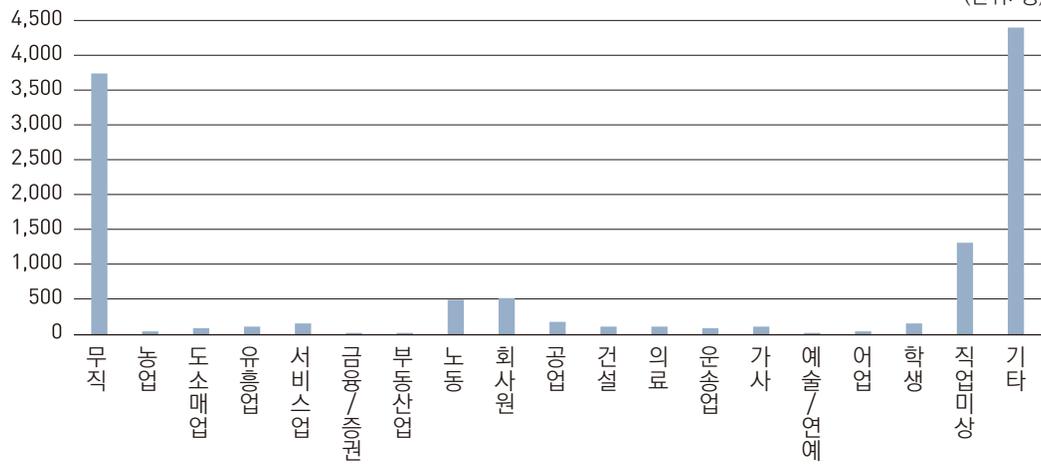
[표 3-35]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9,624	11,396	10,921	9,613	11,611
무직	2,836	3,400	3,245	2,996	3,744
농업	59	49	39	37	41
도소매업	87	100	86	51	73
유흥업	57	72	119	94	108
서비스업	124	127	128	143	157
금융/증권	13	17	15	17	8
부동산업	32	33	27	25	15
노동	302	386	460	335	487
회사원	399	395	393	403	512
공업	68	120	209	99	180
건설	57	62	93	70	113
의료	45	55	30	76	96
운송업	71	81	103	77	91
가사	91	88	81	100	100
예술/연예	10	7	14	16	19
어업	29	32	40	23	35
학생	77	50	66	73	140
직업미상	988	1,075	932	1,140	1,300
기타	4,279	5,247	4,841	3,838	4,392

[그림 3-17]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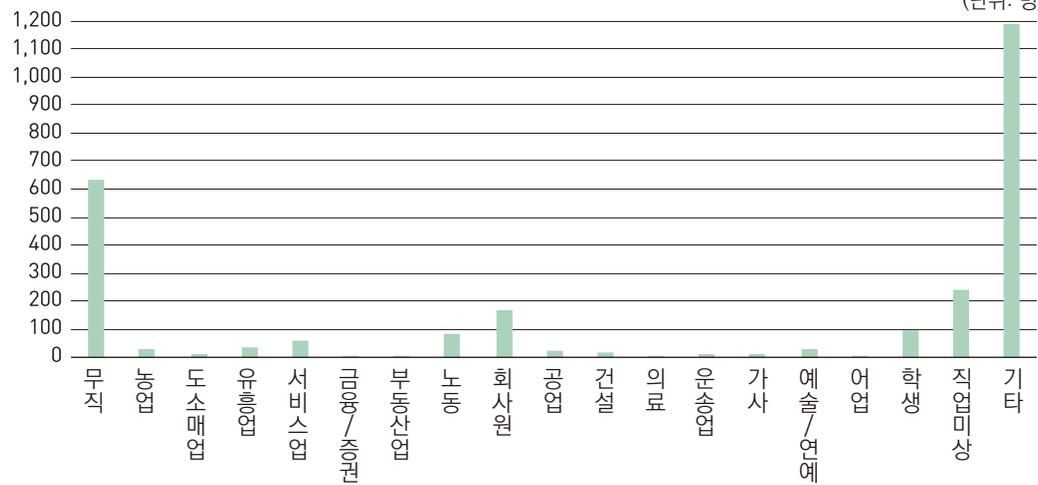
[표 3-36]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39	1,435	1,727	1,533	2,629
무직	248	282	368	319	633
농업	28	43	42	38	29
도소매업	11	5	7	10	12
유흥업	4	8	11	10	33
서비스업	19	25	29	15	56
금융/증권	5	0	0	4	5
부동산업	3	3	9	5	3
노동	36	42	47	45	80
회사원	92	70	95	95	165
공업	18	20	20	24	20
건설	9	9	15	8	13
의료	0	1	0	0	2
운송업	9	13	4	11	12
가사	0	4	11	5	9
예술/연예	8	25	32	25	26
어업	2	3	2	3	1
학생	62	27	37	49	97
직업미상	115	116	195	181	242
기타	470	739	803	686	1,191

[그림 3-18]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12. 연령별 현황

[표 3-37]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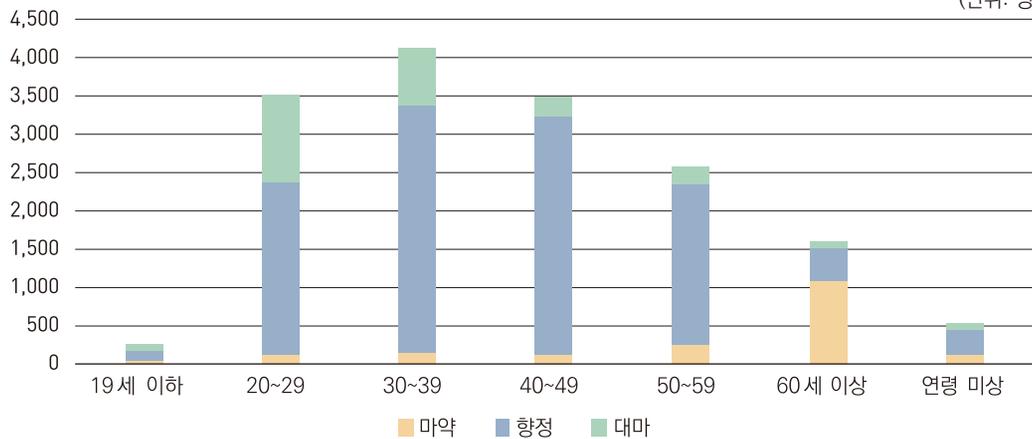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239 (1.5)	3,521 (21.9)	4,126 (25.7)	3,487 (21.7)	2,554 (15.9)	1,598 (10.0)	519 (3.2)	16,044 (100)
마약	3 (0.2)	99 (5.5)	139 (7.7)	107 (5.9)	237 (13.1)	1,098 (60.9)	121 (6.7)	1,804 (100)
향정	167 (1.4)	2,255 (19.4)	3,239 (27.9)	3,123 (26.9)	2,092 (18.0)	403 (3.5)	332 (2.9)	11,611 (100)
대마	69 (2.6)	1,167 (44.4)	748 (28.5)	257 (9.8)	225 (8.6)	97 (3.7)	66 (2.5)	2,629 (100)

※ ()는 구성비 %

[그림 3-19]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7.6%를 차지하여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9년에는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239명으로 전년(143명) 대비 67.1% 증가함

[표 3-38]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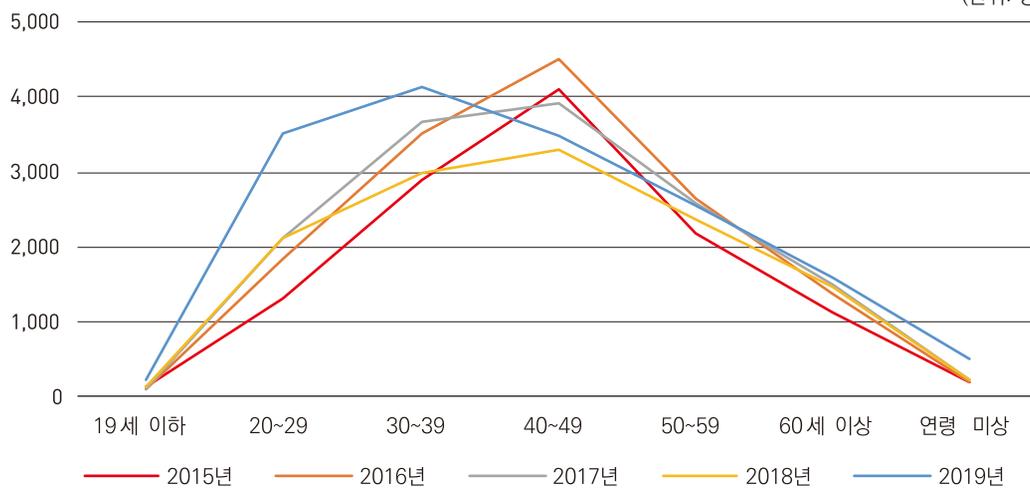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5	128	1,305	2,878	4,099	2,190	1,124	192	11,916
	(1.1)	(10.9)	(24.2)	(34.4)	(18.4)	(9.4)	(1.6)	(100)
2016	121	1,842	3,526	4,496	2,659	1,378	192	14,214
	(0.9)	(13.0)	(24.8)	(31.6)	(18.7)	(9.7)	(1.3)	(100)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 ()는 구성비 %

[그림 3-20] 연도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표 3-39]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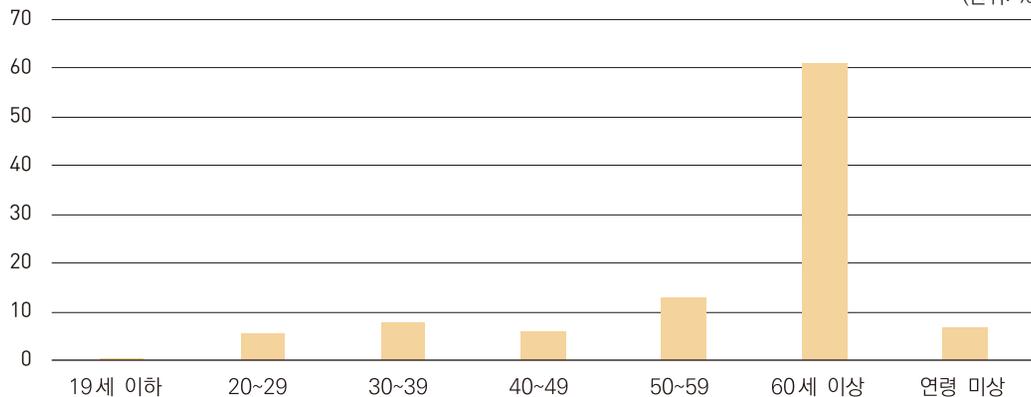
연도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5		0	24	53	77	231	743	25	1,153
		(0.0)	(2.1)	(4.6)	(6.7)	(20.0)	(64.4)	(2.2)	(100)
2016		2	37	57	114	230	918	25	1,383
		(0.1)	(2.7)	(4.1)	(8.3)	(16.6)	(66.4)	(1.8)	(100)
2017		0	42	85	112	223	990	23	1,475
		(0.0)	(2.8)	(5.8)	(7.6)	(15.1)	(67.1)	(1.6)	(100)
2018		2	65	71	103	236	961	29	1,467
		(0.1)	(4.4)	(4.8)	(7.0)	(16.1)	(65.5)	(2.0)	(100)
2019		3	99	139	107	237	1,098	121	1,804
		(0.2)	(5.5)	(7.7)	(5.9)	(13.1)	(60.9)	(6.7)	(100)

※ ()는 구성비 %

-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804명으로 전년(1,467명) 대비 23.0% 증가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60.9% 점유함.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0세 이상 점유율은 80.7%에 달함

[그림 3-21]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표 3-40]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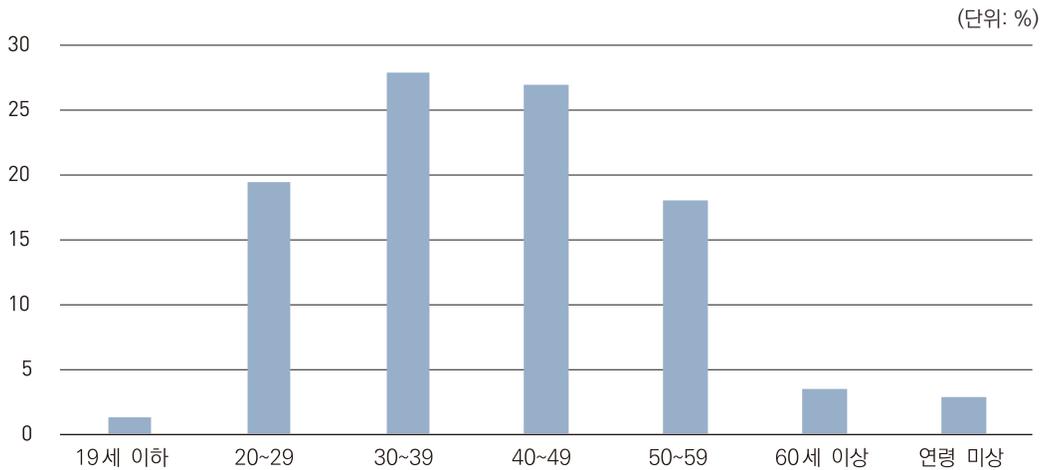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5	78	970	2,548	3,786	1,786	318	138	9,624
	(0.8)	(10.1)	(26.5)	(39.3)	(18.6)	(3.3)	(1.4)	(100)
2016	91	1,401	3,060	4,094	2,228	373	149	11,396
	(0.8)	(12.3)	(26.8)	(35.9)	(19.6)	(3.3)	(1.3)	(100)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1.1)	(15.8)	(26.2)	(31.0)	(20.0)	(4.0)	(1.8)	(100)
2019	167	2,255	3,239	3,123	2,092	403	332	11,611
	(1.4)	(19.4)	(27.9)	(26.9)	(18.0)	(3.5)	(2.9)	(100)

※ ()는 구성비 %

- 2019년 적발된 향정사범은 11,611명으로 전년(9,613명) 대비 20.8% 증가하였고, 30~40대가 54.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그림 3-22]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표 3-41]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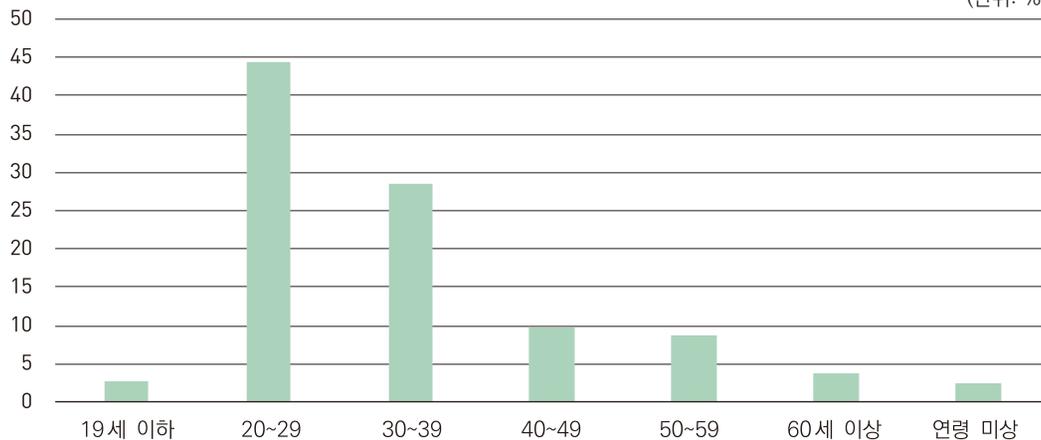
연도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5		50	311	277	236	173	63	29	1,139
		(4.4)	(27.3)	(24.3)	(20.7)	(15.2)	(5.6)	(2.5)	(100)
2016		28	404	409	288	201	87	18	1,435
		(1.9)	(28.1)	(28.5)	(20.1)	(14.0)	(6.1)	(1.3)	(100)
2017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8)	(34.2)	(26.4)	(17.8)	(9.3)	(7.5)	(2.0)	(100)
2018		36	531	403	223	192	107	41	1,533
		(2.3)	(34.6)	(26.3)	(14.5)	(12.5)	(7.0)	(2.7)	(100)
2019		69	1,167	748	257	225	97	66	2,629
		(2.6)	(44.4)	(28.5)	(9.8)	(8.6)	(3.7)	(2.5)	(100)

※ ()는 구성비 %

- 2019년 적발된 대마사범은 2,629명으로 전년(1,533명) 대비 71.5% 증가하였고, 20~30대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3-23]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13. 성별 현황

- 2013~2015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점유율이 14%~19%에 그쳤으나, 2016년부터는 2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2019년에는 22.3%를 차지함
- 2019년 여성 마약류사범은 마약사범의 경우 878명으로 전년(752명) 대비 16.8% 증가, 향정사범의 경우 2,353명으로 전년(1,801명) 대비 30.6% 증가, 대마사범의 경우 346명으로 전년(166명) 대비 108.4% 증가하였음

[표 3-42]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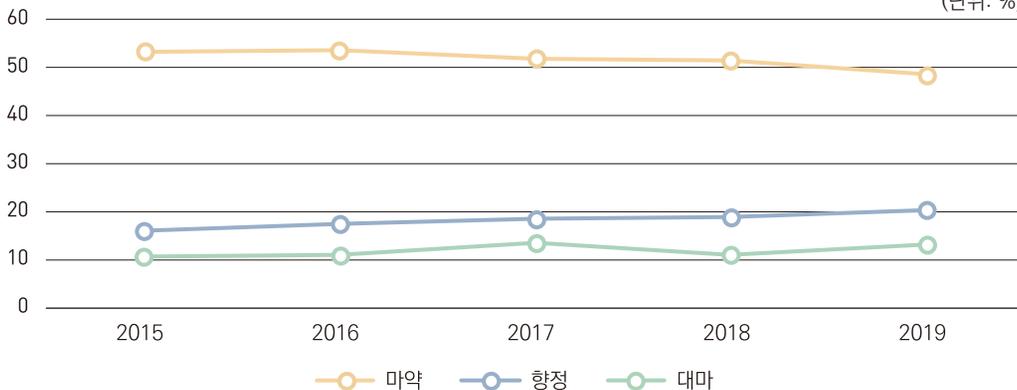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5	541	612	8,086	1,538	1,017	122	9,644	2,272	(46.9)	(53.1)						
	(84.0)	(16.0)	(89.3)	(10.7)	(80.9)	(19.1)	2016	642	741	9,397	1,999	1,276	159	11,315	2,899	(46.4)
(82.5)	(17.5)	(88.9)	(11.1)	(79.6)	(20.4)	2017		714	761	8,895	2,026	1,493	234	11,102	3,021	(48.4)
(81.4)	(18.6)	(86.5)	(13.5)	(78.6)	(21.4)		2018	715	752	7,812	1,801	1,367	166	9,894	2,719	(48.7)
(81.3)	(18.7)	(89.2)	(10.8)	(78.4)	(21.6)	2019		926	878	9,258	2,353	2,283	346	12,467	3,577	(51.3)
(79.7)	(20.3)	(86.8)	(13.2)	(77.7)	(22.3)											

※ ()는 구성비 %

[그림 3-24]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단위: %)



[표 3-43]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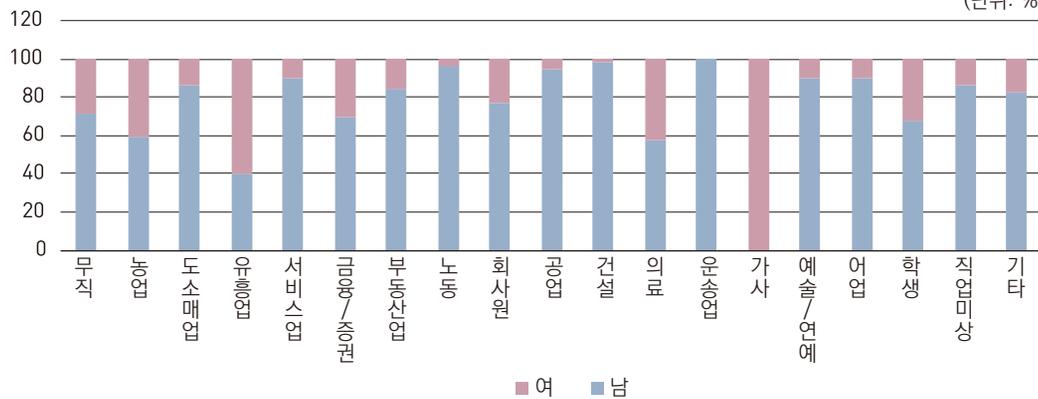
(단위: 명)

직업별	성별	
	남	여
합계	12,467 (77.7)	3,577 (22.3)
무직	3,533 (71.1)	1,439 (28.9)
농업	242 (59.6)	164 (40.4)
도소매업	80 (86.0)	13 (14.0)
유흥업	60 (39.7)	91 (60.3)
서비스업	202 (89.8)	23 (10.2)
금융/증권	9 (69.2)	4 (30.8)
부동산업	16 (84.2)	3 (15.8)
노동	565 (96.1)	23 (3.9)
회사원	553 (76.5)	170 (23.5)
공업	195 (94.7)	11 (5.3)
건설	129 (98.5)	2 (1.5)
의료	75 (57.7)	55 (42.3)
운송업	109 (100.0)	0 (0.0)
가사	0 (0.0)	180 (100.0)
예술/연예	44 (89.8)	5 (10.2)
어업	34 (89.5)	4 (10.5)
학생	164 (68.0)	77 (32.0)
직업미상	1,468 (86.6)	227 (13.4)
기타	4,989 (82.1)	1,086 (17.9)

※ ()는 구성비 %

[그림 3-25]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단위: %)



14. 학력별 현황

- 전체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53.3%(전년도 57.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마약사범의 경우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무학자(11.9%)와 초졸(23.8%)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정사범의 경우 고졸(37.7%), 중졸(14.2%), 대졸(14.1%)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대졸(34.0%), 고졸(30.3%), 전문대졸(5.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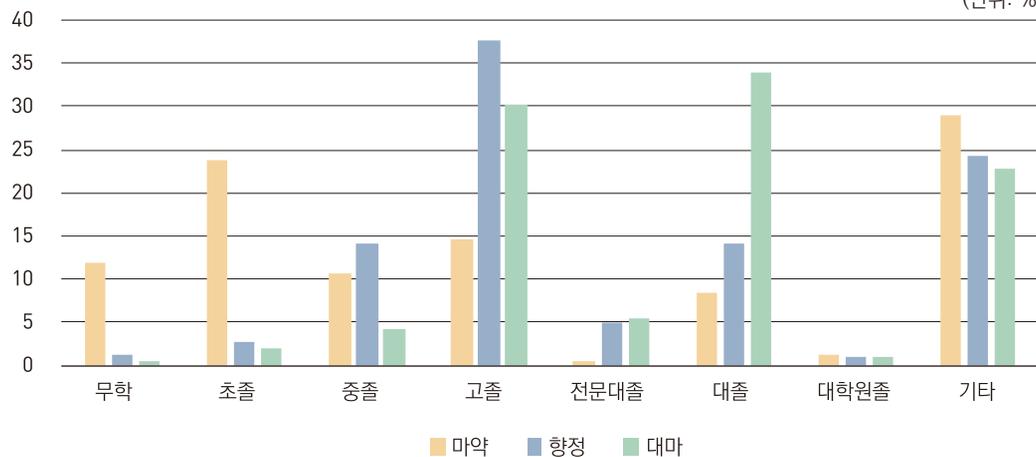
[표 3-44]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학력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11.9	23.8	10.6	14.7	0.6	8.3	1.2	28.9	100
향정	1.2	2.6	14.2	37.7	4.9	14.1	0.9	24.3	100
대마	0.4	1.9	4.3	30.3	5.4	34.0	0.9	22.8	100
합계	2.2	4.7	12.3	34.1	4.5	16.6	0.9	24.6	100

[그림 3-26]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15. 범죄원인별 현황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5.3%), 호기심(15.4%), 유혹(12.7%) 순이며, 그 중 중독과 호기심이 40.7%를 차지함
- 단순 투약자 등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며,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계속하여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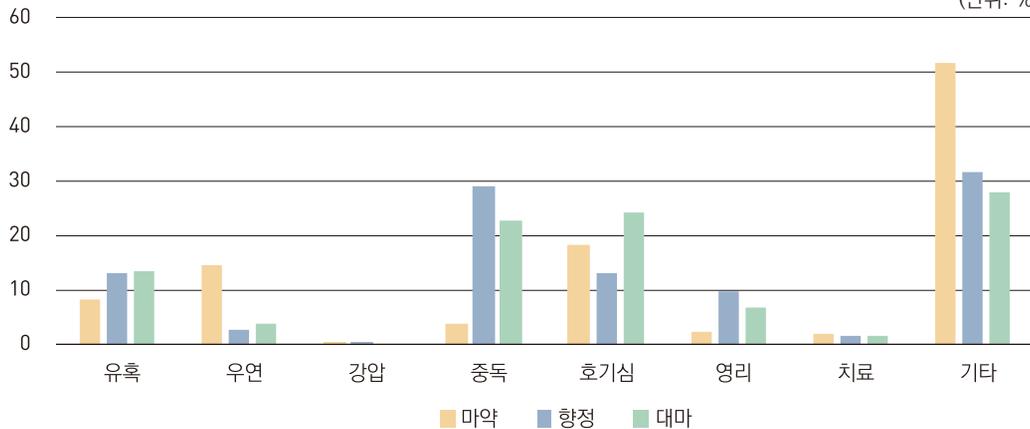
[표 3-45]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원인별 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8.3	14.4	0.1	3.8	18.1	2.1	1.7	51.5	100
향정	13.1	2.5	0.1	28.8	13.1	9.6	1.4	31.4	100
대마	13.5	3.7	0.0	22.7	24.3	6.7	1.3	27.8	100
합계	12.7	3.9	0.1	25.3	15.4	8.4	1.4	32.9	100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16. 범행 장소별 현황

[표 3-46]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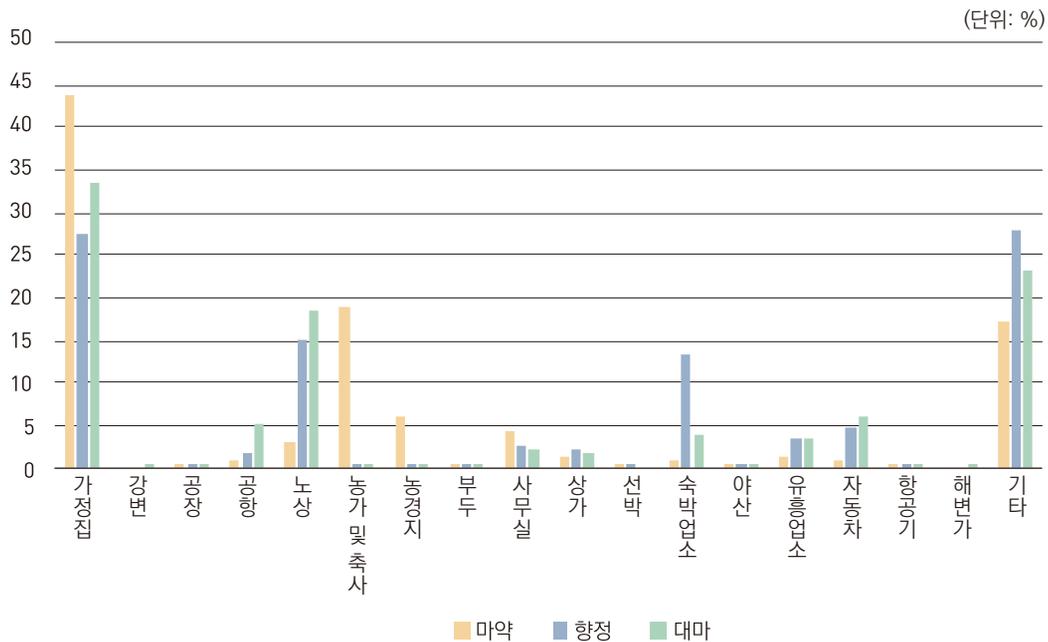
범행장소별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43.8	27.7	33.3	30.2
강변		0.0	0.0	0.1	0.0
공장		0.2	0.4	0.1	0.3
공항		0.8	1.7	5.3	2.2
노상		3.1	15.2	18.5	14.5
농가 및 축사		18.9	0.1	0.6	2.1
농경지		6.3	0.1	0.4	0.8
부두		0.1	0.1	0.1	0.1
사무실		4.2	2.9	2.1	2.9
상가		1.2	2.1	1.7	2.0
선박		0.2	0.1	0.0	0.1
숙박업소		1.0	13.5	3.8	10.7
야산		0.2	0.1	0.5	0.1
유흥업소		1.6	3.4	3.7	3.2
자동차		0.8	4.8	6.1	4.6
항공기		0.2	0.1	0.4	0.2
해변가		0.0	0.0	0.2	0.0
기타		17.3	27.8	23.3	26.0
합계		100	100	100	100

- 범행은 가정집(30.2%), 노상(14.5%), 숙박업소(10.7%)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음

🔍 마약류사범별로 살펴보면,

- 마약사범은 가정집(43.8%), 농가·축사(18.9%)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종을 이루는 것에 기인함
- 향정사범 중 투약 장소는 가정집(27.7%), 숙박업소(13.5%) 등 비교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15.2%)이 큰 점유율을 차지함
- 대마사범은 가정집(33.3%), 노상(18.5%), 자동차(6.1%) 순으로 이는 대마 흡연이 용이한 장소임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17. 검찰 처리현황

[표 3-47]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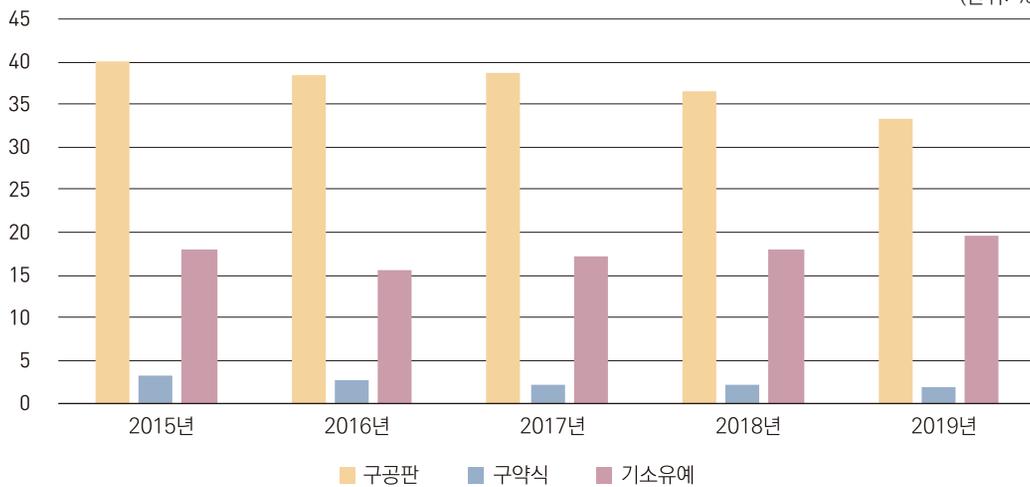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기타	
2015	12,534	5,024	404	2,240	821	1,181	2	2,033	217	612
	(100)	(40.1)	(3.2)	(17.9)	(6.6)	(9.4)	(0.0)	(16.2)	(1.7)	(4.9)
2016	14,897	5,720	418	2,327	913	1,534	1	2,799	208	977
	(100)	(38.4)	(2.8)	(15.6)	(6.1)	(10.3)	(0.0)	(18.8)	(1.4)	(6.6)
2017	15,219	5,883	354	2,603	841	1,607	6	2,909	208	808
	(100)	(38.7)	(2.3)	(17.1)	(5.5)	(10.6)	(0.0)	(19.1)	(1.4)	(5.3)
2018	13,483	4,929	308	2,430	764	1,419	11	2,714	218	690
	(100)	(36.6)	(2.3)	(18.0)	(5.7)	(10.5)	(0.1)	(20.1)	(1.6)	(5.1)
2019	16,829	5,619	321	3,278	864	1,490	10	3,716	398	1,133
	(100)	(33.4)	(1.9)	(19.5)	(5.1)	(8.9)	(0.1)	(22.1)	(2.4)	(6.7)

※ ()는 구성비 %

[그림 3-29] 마약류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8] 마약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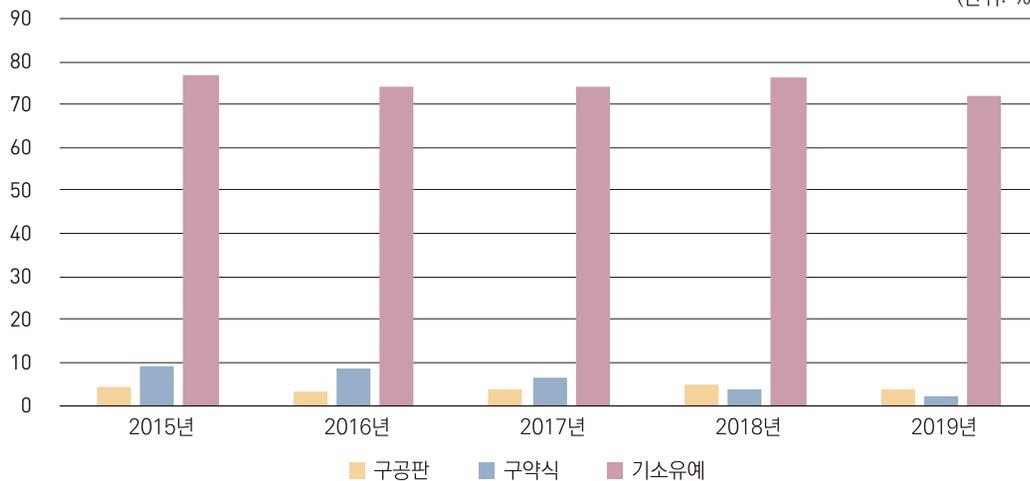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5	1,111	49	100	852	14	36	0	19	21	20
	(100)	(4.4)	(9.0)	(76.7)	(1.3)	(3.2)	(0.0)	(1.7)	(1.9)	(1.8)
2016	1,354	46	117	1,005	13	96	0	40	28	9
	(100)	(3.4)	(8.6)	(74.2)	(1.0)	(7.1)	(0.0)	(2.9)	(2.1)	(0.7)
2017	1,479	60	93	1,094	29	90	0	48	44	21
	(100)	(4.0)	(6.3)	(74.0)	(2.0)	(6.1)	(0.0)	(3.2)	(3.0)	(1.4)
2018	1,452	70	55	1,109	22	94	0	55	30	17
	(100)	(4.8)	(3.8)	(76.4)	(1.5)	(6.5)	(0.0)	(3.8)	(2.1)	(1.2)
2019	1,745	67	38	1,255	27	91	0	119	88	60
	(100)	(3.8)	(2.2)	(71.9)	(1.5)	(5.2)	(0.0)	(6.8)	(5.0)	(3.4)

※ ()는 구성비 %

[그림 3-30] 마약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9] 행정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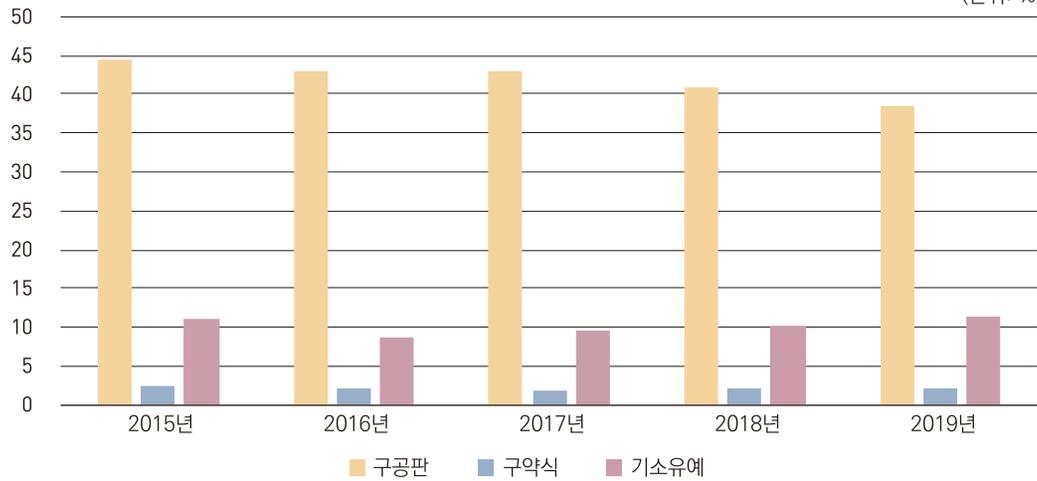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5	10,223	4,561	260	1,122	749	1,030	2	1,788	168	543
	(100)	(44.6)	(2.5)	(11.0)	(7.4)	(10.1)	(0.0)	(17.5)	(1.6)	(5.3)
2016	12,116	5,217	252	1,043	839	1,311	1	2,469	150	834
	(100)	(43.1)	(2.1)	(8.6)	(7.0)	(10.7)	(0.0)	(20.4)	(1.3)	(6.8)
2017	11,919	5,141	200	1,135	742	1,358	6	2,525	146	666
	(100)	(43.1)	(1.7)	(9.5)	(6.2)	(11.4)	(0.1)	(21.2)	(1.2)	(5.6)
2018	10,454	4,262	221	1,063	650	1,167	10	2,353	166	562
	(100)	(40.8)	(2.1)	(10.2)	(6.2)	(11.2)	(0.1)	(22.5)	(1.6)	(5.4)
2019	12,396	4,774	246	1,408	712	1,202	6	2,975	280	793
	(100)	(38.5)	(2.0)	(11.4)	(5.7)	(9.7)	(0.0)	(24.0)	(2.3)	(6.4)

※ ()는 구성비 %

[그림 3-31] 행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50] 대마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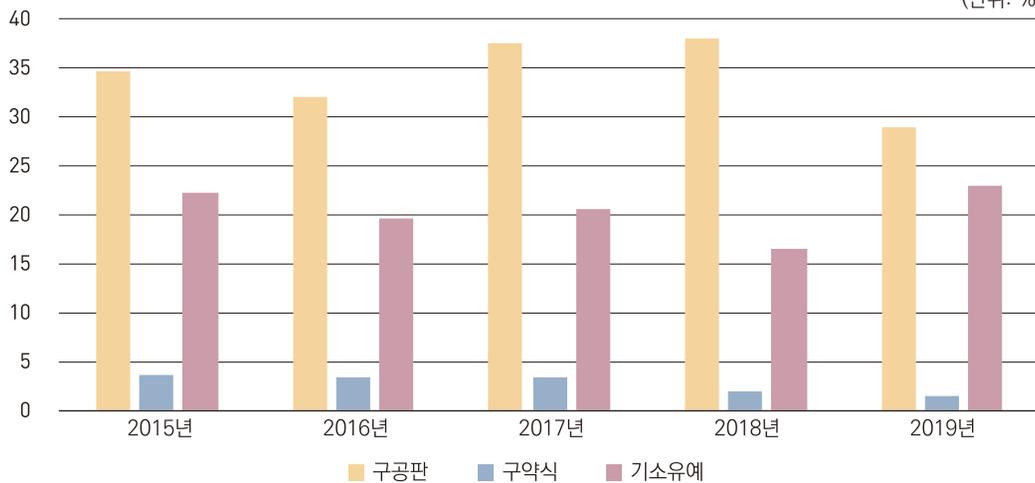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5	1,200	414	44	266	58	115	0	226	28	49
	(100)	(34.5)	(3.7)	(22.2)	(4.8)	(9.6)	(0.0)	(18.8)	(2.3)	(4.1)
2016	1,427	457	49	279	61	127	0	290	30	134
	(100)	(32.0)	(3.4)	(19.6)	(4.3)	(8.9)	(0.0)	(20.3)	(2.1)	(9.4)
2017	1,821	682	61	374	70	159	0	336	18	121
	(100)	(37.5)	(3.4)	(20.5)	(3.8)	(8.7)	(0.0)	(18.5)	(1.0)	(6.6)
2018	1,577	597	32	258	92	158	1	306	22	111
	(100)	(37.9)	(2.0)	(16.4)	(5.8)	(10.0)	(0.1)	(19.4)	(1.4)	(7.0)
2019	2,688	778	37	615	125	197	4	622	30	280
	(100)	(28.9)	(1.4)	(22.9)	(4.7)	(7.3)	(0.1)	(23.1)	(1.1)	(10.4)

※ ()는 구성비 %

[그림 3-32]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4%로 일반 형사사범(8.7%) 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1.9%로 일반 형사사범(20.9%) 보다 낮은 편이나, 기소유예율은 19.5%로 일반 형사사범(10.3%) 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이 38.5%, 대마사범이 28.9%이나, 마약사범은 3.8%에 불과함.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71.9%)을 하고 있기 때문임

18.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표 3-51]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재판결과	재판결과									
		합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²⁰
합 계	2017	4,681	169	1,876	663	1,633	213	12	2	0	113
		(100)	(3.6)	(40.1)	(14.2)	(34.9)	(4.5)	(0.3)	(0.0)	(0.0)	(2.4)
	2018	3,986	158	1,594	534	1,324	177	45	12	0	142
		(100)	(4.0)	(40.0)	(13.4)	(33.2)	(4.4)	(1.1)	(0.3)	(0.0)	(3.6)
	2019	4,199	138	1,723	571	1,411	191	24	16	0	125
		100	(3.3)	(41.0)	(13.6)	(33.6)	(4.5)	(0.6)	(0.4)	(0.0)	(3.0)
마 약	2017	58	19	16	3	12	2	1	0	0	5
		(100)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2018	55	1	31	0	11	4	0	0	0	8
		(100)	(1.8)	(56.4)	(0.0)	(20.0)	(7.3)	(0.0)	(0.0)	(0.0)	(14.5)
	2019	53	2	27	2	5	12	1	0	0	4
		100	(3.8)	(50.9)	(3.8)	(9.4)	(22.6)	(1.9)	(0.0)	(0.0)	(7.5)
향 정	2017	4,082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1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2018	3,409	126	1,197	492	1,269	146	39	12	0	128
		(100)	(3.7)	(35.1)	(14.4)	(37.2)	(4.3)	(1.1)	(0.4)	(0.0)	(3.8)
	2019	3,542	101	1,275	532	1,326	154	22	16	0	116
		100	(2.9)	(36.0)	(15.0)	(37.4)	(4.3)	(0.6)	(0.5)	(0.0)	(3.3)
대 마	2017	541	30	370	70	51	13	0	0	0	7
		(100)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2018	522	31	366	42	44	27	6	0	0	6
		(100)	(5.9)	(70.1)	(8.0)	(8.4)	(5.2)	(1.1)	(0.0)	(0.0)	(1.1)
	2019	604	35	421	37	80	25	1	0	0	5
		100	(5.8)	(69.7)	(6.1)	(13.2)	(4.1)	(0.2)	(0.0)	(0.0)	(0.8)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 2019년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52.7%), 집행유예(41.0%), 벌금(3.3%) 순이며,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정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²⁰ 무죄선고,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소년부송치, 구류·과료 등

[표 3-52]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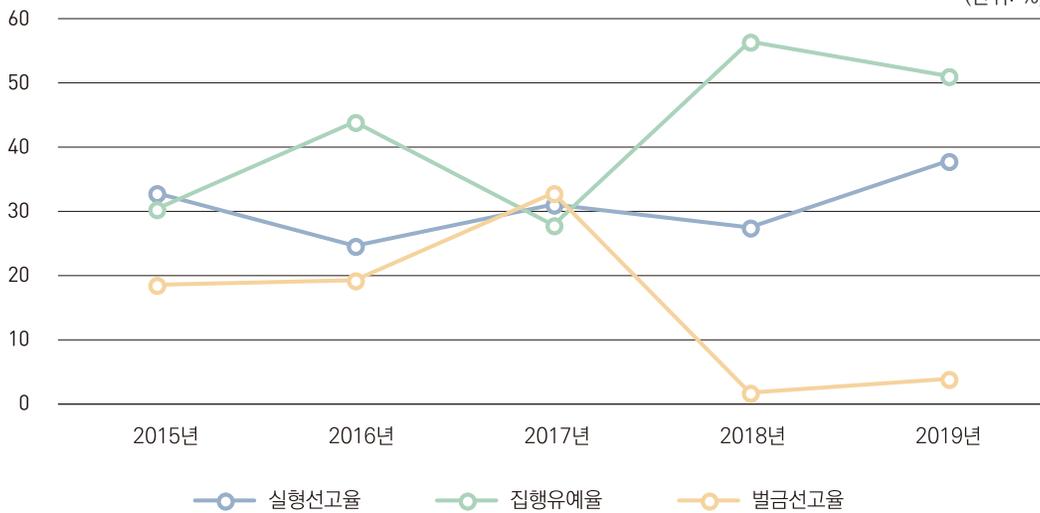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5	8	13	2	7	4	1	0	0	8
	(18.6)	(30.2)	(4.7)	(16.3)	(9.3)	(2.3)	(0.0)	(0.0)	(18.6)
2016	11	25	2	6	5	1	0	0	7
	(19.3)	(43.9)	(3.5)	(10.5)	(8.8)	(1.7)	(0.0)	(0.0)	(12.3)
2017	19	16	3	12	2	1	0	0	5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2018	1	31	0	11	4	0	0	0	8
	(1.8)	(56.4)	(0.0)	(20.0)	(7.3)	(0.0)	(0.0)	(0.0)	(14.5)
2019	2	27	2	5	12	1	0	0	4
	(3.8)	(50.9)	(3.8)	(9.4)	(22.6)	(1.9)	(0.0)	(0.0)	(7.5)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3]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표 3-53] 행정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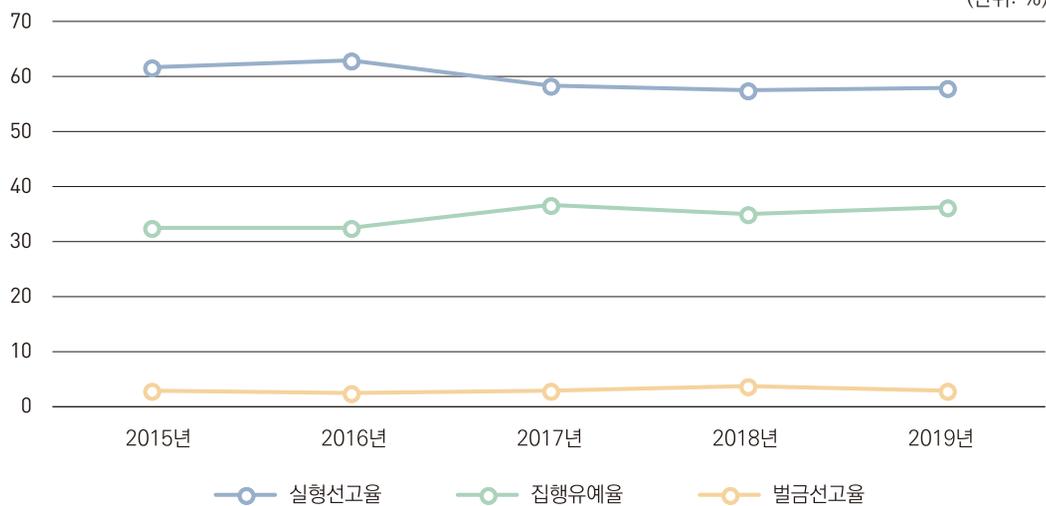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5	96	1,064	569	1,310	133	9	2	0	105
	(2.9)	(32.4)	(17.3)	(39.8)	(4.0)	(0.3)	(0.1)	(0.0)	(3.2)
2016	95	1,356	685	1,719	192	17	6	0	100
	(2.3)	(32.5)	(16.4)	(41.2)	(4.6)	(0.4)	(0.2)	(0.0)	(2.4)
2017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2018	126	1,197	492	1,269	146	39	12	0	128
	(3.7)	(35.1)	(14.4)	(37.2)	(4.3)	(1.1)	(0.4)	(0.0)	(3.8)
2019	101	1,275	532	1,326	154	22	16	0	116
	(2.9)	(36.0)	(15.0)	(37.4)	(4.3)	(0.6)	(0.5)	(0.0)	(3.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4] 행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표 3-54]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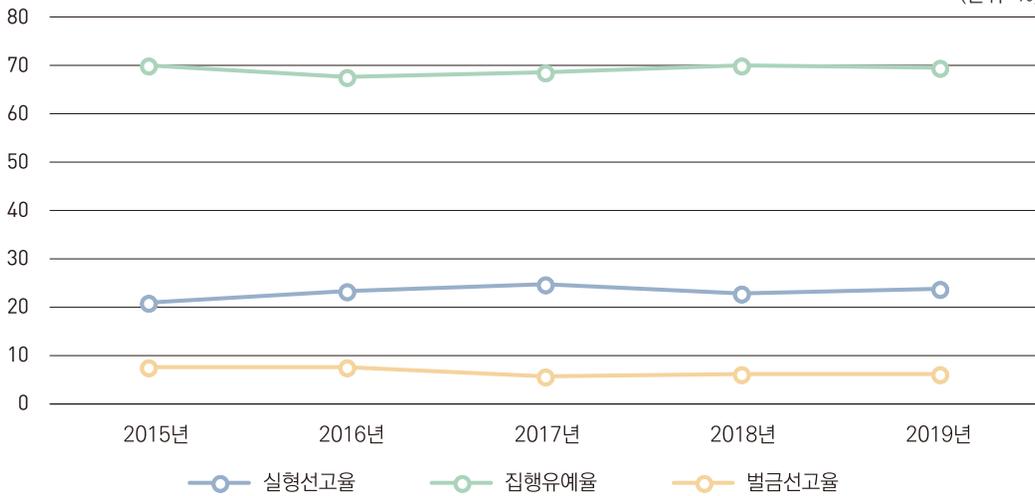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5	27	254	29	41	6	0	0	0	7
	(7.4)	(69.8)	(8.0)	(11.3)	(1.6)	(0.0)	(0.0)	(0.0)	(1.9)
2016	29	258	54	31	4	0	0	0	6
	(7.6)	(67.6)	(14.1)	(8.1)	(1.0)	(0.0)	(0.0)	(0.0)	(1.6)
2017	30	370	70	51	13	0	0	0	7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2018	31	366	42	44	27	6	0	0	6
	(5.9)	(70.1)	(8.0)	(8.4)	(5.2)	(1.1)	(0.0)	(0.0)	(1.1)
2019	35	421	37	80	25	1	0	0	5
	(5.8)	(69.7)	(6.1)	(13.2)	(4.1)	(0.2)	(0.0)	(0.0)	(0.8)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5]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19.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55]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5		32	29	2	11	74
		(43.2)	(39.2)	(2.7)	(14.9)	(100)
2016		39	28	3	15	85
		(45.9)	(33.0)	(3.5)	(17.6)	(100)
2017		47	35	4	10	96
		(48.9)	(36.5)	(4.2)	(10.4)	(100)
2018		23	49	0	6	78
		(29.5)	(62.8)	(0.0)	(7.7)	(100)
2019		37	38	1	5	81
		(45.7)	(46.9)	(1.2)	(6.2)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표 3-56]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5		2,073	1,062	0	131	3,266
		(63.5)	(32.5)	(0.0)	(4.0)	(100)
2016		1,991	1,057	1	91	3,140
		(63.4)	(33.7)	(0.0)	(2.9)	(100)
2017		2,270	1,413	2	186	3,871
		(58.6)	(36.5)	(0.1)	(4.8)	(100)
2018		1,416	901	1	107	2,425
		(58.4)	(37.2)	(0.0)	(4.4)	(100)
2019		1,571	989	2	115	2,677
		(58.7)	(36.9)	(0.1)	(4.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표 3-57]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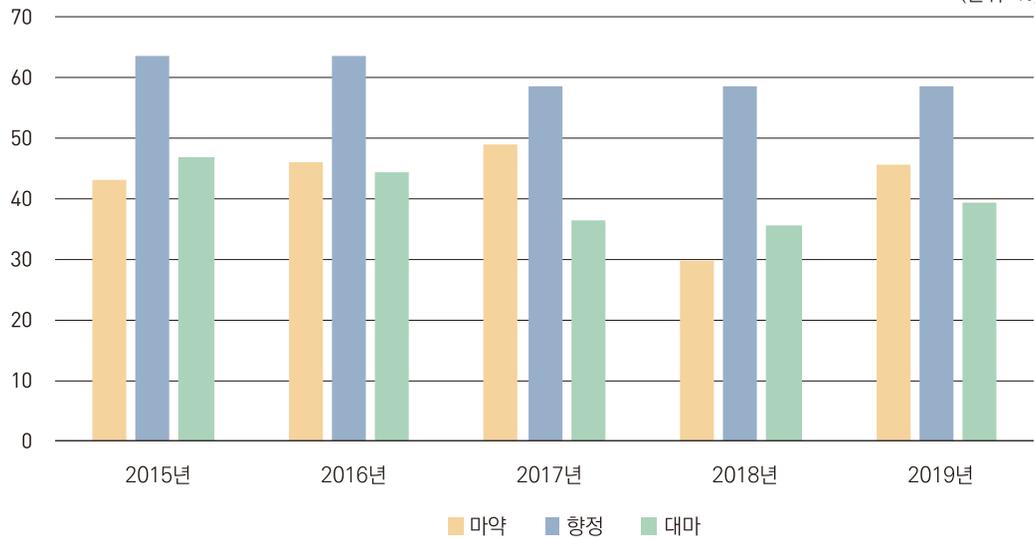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5		293 (46.8)	297 (47.4)	1 (0.2)	35 (5.6)	626 (100)
2016		242 (44.2)	281 (51.4)	0 (0.0)	24 (4.4)	547 (100)
2017		316 (36.4)	510 (58.7)	1 (0.1)	42 (4.8)	869 (100)
2018		214 (35.5)	362 (60.1)	0 (0.0)	26 (4.3)	602 (100)
2019		283 (39.1)	416 (57.5)	0 (0.0)	24 (3.3)	72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6]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단위: %)



20.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58]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5	0 (0.0)	10 (10.0)	36 (36.0)	31 (31.0)	23 (23.0)	1,278,000
2016	0 (0.0)	5 (4.6)	15 (13.9)	52 (48.2)	36 (33.3)	1,346,296
2017	0 (0.0)	11 (12.1)	23 (25.3)	32 (35.1)	25 (27.5)	1,298,901
2018	0 (0.0)	11 (20.0)	14 (25.5)	20 (36.4)	10 (18.2)	1,121,818
2019	0 (0.0)	1 (2.7)	6 (16.2)	20 (54.1)	10 (27.0)	1,651,351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분포비율 %

[표 3-59]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5	0 (0.0)	0 (0.0)	3 (1.6)	43 (22.7)	143 (75.7)	2,978,836
2016	0 (0.0)	1 (0.6)	10 (5.5)	39 (21.5)	131 (72.4)	2,709,392
2017	0 (0.0)	0 (0.0)	10 (5.6)	19 (10.6)	150 (83.8)	5,582,584
2018	1 (0.7)	0 (0.0)	10 (6.9)	24 (16.6)	110 (75.9)	5,267,143
2019	0 (0.0)	0 (0.0)	13 (7.5)	33 (19.1)	127 (73.4)	5,530,92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분포비율 %

[표 3-60]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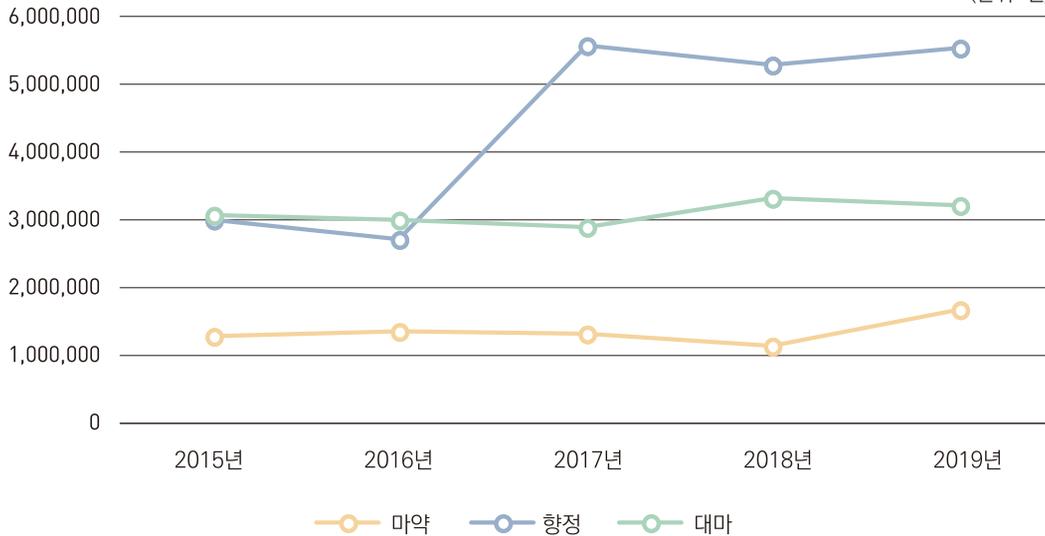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5	0 (0.0)	0 (0.0)	1 (2.6)	7 (18.4)	30 (79.0)	3,057,895
2016	0 (0.0)	0 (0.0)	2 (4.9)	5 (12.2)	34 (82.9)	3,000,000
2017	0 (0.0)	0 (0.0)	4 (6.6)	5 (8.2)	52 (85.2)	2,868,852
2018	0 (0.0)	0 (0.0)	1 (3.6)	0 (0.0)	27 (96.4)	3,303,571
2019	0 (0.0)	0 (0.0)	1 (3.4)	5 (17.2)	23 (79.3)	3,189,65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분포비율 %

[그림 3-37]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21. 실행자 · 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 2019년 향정 및 대마사범의 실행 형기는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마약사범의 실행 형기는 감소하였음

[표 3-61] 마약류별 실행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5		15.8	26.1	16.7	26.1	23.2	26.9
2016		26.6	28.7	17.4	26.7	18.3	27.9
2017		19.7	28.6	18.2	28.3	21.7	31.5
2018		36.8	32.3	19.1	28.9	22.3	29.7
2019		22.2	30.9	19.8	27.4	43.7	33.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22.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62]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5	1 (3.4)	22 (75.9)	5 (17.3)	1 (3.4)	29 (100)
2016	3 (10.7)	16 (57.1)	8 (28.6)	1 (3.6)	28 (100)
2017	3 (8.6)	20 (57.1)	8 (22.9)	4 (11.4)	35 (100)
2018	0 (0.0)	28 (57.1)	21 (42.9)	0 (0.0)	49 (100)
2019	1 (2.6)	17 (44.7)	17 (44.7)	3 (7.9)	38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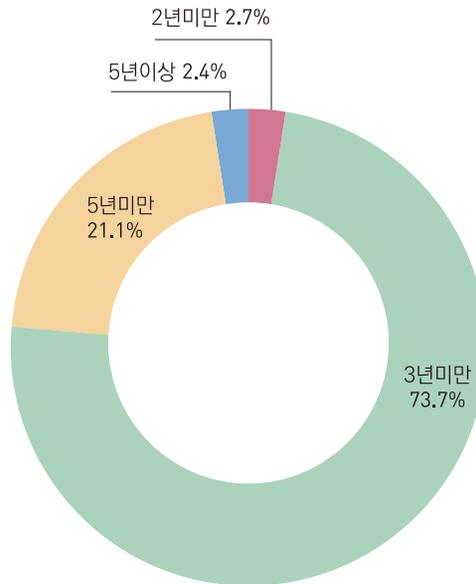
[표 3-63]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5	36 (3.4)	844 (79.5)	174 (16.4)	8 (0.7)	1,062 (100)
2016	26 (2.5)	807 (76.3)	217 (20.5)	7 (0.7)	1,057 (100)
2017	32 (2.3)	988 (69.8)	354 (25.1)	39 (2.8)	1,413 (100)
2018	11 (1.2)	633 (64.1)	223 (24.9)	30 (3.3)	897 (100)
2019	27 (2.7)	729 (73.7)	209 (21.1)	24 (2.4)	98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8] 행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표 3-64]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5		14 (4.7)	226 (76.1)	57 (19.2)	0 (0.0)	297 (100)
2016		4 (1.4)	199 (70.8)	75 (26.7)	3 (1.1)	281 (100)
2017		23 (4.5)	332 (65.1)	139 (27.3)	16 (3.1)	510 (100)
2018		10 (2.8)	227 (62.7)	113 (31.2)	12 (3.3)	362 (100)
2019		10 (2.4)	229 (55.0)	160 (38.5)	17 (4.1)	41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23. 실행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65] 마약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5	11 (34.3)	12 (37.5)	4 (12.5)	3 (9.4)	2 (6.3)	32 (100)
2016	3 (7.7)	17 (43.6)	5 (12.8)	12 (30.8)	2 (5.1)	39 (100)
2017	12 (25.5)	17 (36.2)	13 (27.6)	3 (6.4)	2 (4.3)	47 (100)
2018	3 (13.0)	9 (39.1)	4 (17.4)	3 (13.0)	4 (17.4)	23 (100)
2019	7 (18.9)	8 (21.6)	10 (27.0)	5 (13.5)	7 (18.9)	37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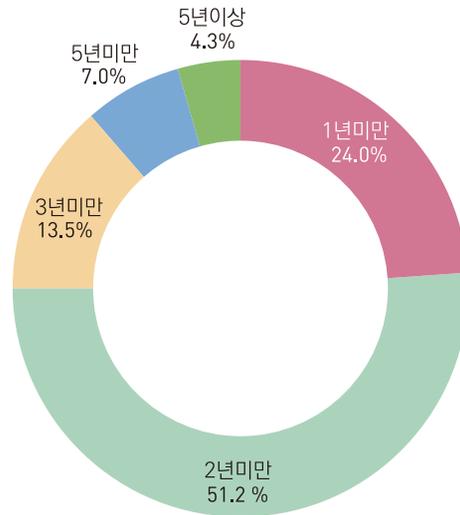
[표 3-66] 향정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5	587 (28.3)	1,119 (54.0)	215 (10.4)	110 (5.3)	42 (2.0)	2,073 (100)
2016	518 (26.1)	1,118 (56.2)	186 (9.3)	121 (6.0)	48 (2.4)	1,991 (100)
2017	590 (25.9)	1,173 (51.7)	280 (12.4)	171 (7.5)	56 (2.5)	2,270 (100)
2018	343 (24.3)	772 (54.8)	155 (11.0)	71 (5.0)	68 (4.8)	1,409 (100)
2019	377 (24.0)	805 (51.2)	212 (13.5)	110 (7.0)	67 (4.3)	1,57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39] 행정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표 3-67] 대마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5	79 (27.0)	163 (55.6)	35 (12.0)	13 (4.4)	3 (1.0)	293 (100)
2016	83 (34.3)	108 (44.6)	27 (11.2)	17 (7.0)	7 (2.9)	242 (100)
2017	85 (26.9)	127 (40.2)	64 (20.3)	31 (9.8)	9 (2.8)	316 (100)
2018	48 (22.4)	104 (48.6)	19 (8.9)	27 (12.6)	16 (7.5)	214 (100)
2019	49 (17.3)	123 (43.5)	64 (22.6)	37 (13.1)	10 (3.5)	28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24. 재범 현황

[표 3-68] 연도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사범	11,916	14,214	14,123	12,613	16,044
재범인원	4,499	5,285	5,131	4,622	5,710
재범률(%)	37.8	37.2	36.3	36.6	35.6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5.6%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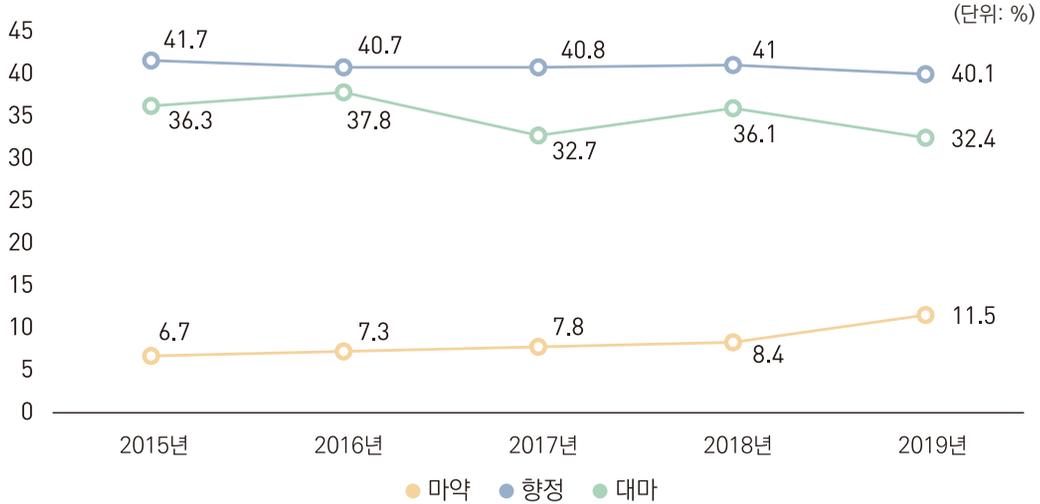
[표 3-69]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153	9,624	1,139	1,383	11,396	1,435	1,475	10,921	1,727	1,467	9,613	1,533	1,804	11,611	2,629
재범인원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재범률(%)	6.7	41.7	36.3	7.3	40.7	37.8	7.8	40.8	32.7	8.4	41.0	36.1	11.5	40.1	32.4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 순이며, 2019년 향정사범 재범률은 40.1%로 여전히 대마사범 및 마약사범보다 높음

[그림 3-40]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표 3-70]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동종(마약류) 전과인원	32	3,269	242	41	3,795	328	47	3,711	372	58	3,291	342	95	3,832	592
이종(마약류) 전과인원	39	90	72	52	135	87	58	106	85	51	104	73	78	137	125
복합전과 인원	6	650	99	8	711	128	10	634	108	14	551	138	34	683	134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2019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5,710명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519명으로 79.1%, 이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340명으로 6.0%, 복합 전력자는 851명으로 14.9%를 각각 차지함

2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실적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²¹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치료감호²²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0호)

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2019년 치료보호 인원은 총 260명으로 전년(267명) 대비 2.6% 감소함
- 전체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의뢰자는 18명으로 전년(5명) 대비 260.0% 증가함.

[표 3-71]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91	252	330	267	260	
입원	자의	90	82	108	87	89
	검찰의뢰	10	7	3	2	2
	기타의뢰	1	-	-	-	-
외래	자의	83	154	209	175	153
	검찰의뢰	7	9	10	3	16
	기타의뢰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²¹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임. 다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지침)에 의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음

²²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원은 800명으로 전년(470명) 대비 70.2% 증가함
- 이는 검찰에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 처벌 위주 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한 결과임

[표 3-7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인원	91	102	208	135	74	87	131	140	421	503	648	722	470	800	4,532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 2019년 치료감호 인원은 총 30명으로, 전년(29명) 대비 3.4% 증가함

[표 3-73] 치료감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32	25	16	29	30
마약	0	1	0	0	0
향정	30	24	16	29	30
대마	2	0	0	0	0

자료: 치료감호소 감호과, 입소자 기준

다.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²³

[표 3-74]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1개 의료기관	300	191	252	330	267	260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1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2	4	4
	강남을지병원		83	146	206	136	해제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4				1
	참사랑병원	8			29	26	126
대전	참다남병원	4	1	2			
대구	대구의료원	2	6	2	2	1	1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2	5	4	1	5
울산	큰빛병원				1		해제
	마더스병원	84				35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2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5	1	2			
	용인정신병원	10	8	3	1		1
	계요병원	10	3	3	3	1	9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충북	청주의료원	2				1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100	78	86	81	62	110
	양산병원	2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2		2			1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제주	연강병원	2	1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19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함

²³ 2019년 기준, 서울 강남을지병원(병상수 2개), 울산 큰빛병원(병상수 12개) 지정해제 및 경남 국립부곡병원 병상수 (200개→100개) 감소가 있었고, 신규로 울산 마더스병원(병상수 84개)이 치료보호 시설로 지정되어 21개 의료기관, 병상수 300개임

26.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가. 개요

-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범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흉포화되고 있음

나.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표 3-75]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유형별 연도별	살인		과다투약 사망·자살		강·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 살해·상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5	1	1	3	3	0	0	1	1	2	2	11	13	18	20
2016	2	2	1	1	2	3	1	1	0	0	7	7	13	14
2017	1	1	2	2	1	1	0	0	1	1	7	7	10	10
2018	0	0	1	1	0	0	4	4	0	0	5	5	10	10
2019	0	0	2	2	0	0	2	2	1	1	4	6	9	11
합계	4	4	9	9	3	4	8	8	4	4	34	38	60	65



다. 대표적 사례

살인 사건

- ① 2001. 3.경 서울 중구 식품점에서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중독 증세를 보이던 피의자(23세, 공익근무요원)가 러미나 판매상인 피해자와 러미나 매매 문제로 말다툼하다 칼로 살해 (서울중앙지검)
- ① 2001. 8.경 서산시 부석면 야산에서 피의자 3명(28세~30세 남자 3명)이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곡괭이로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 (서산지청)
- ① 2001. 9.경 서산시 석림동 주택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던 내연녀를 칼로 찔러 살해 (서산지청)
- ① 2002. 1.경 서울 강북구 OO동 여관에서 러미나 중독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윤락녀인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서울동부지청)
- ① 2004. 11.경 부산 연제구 OO동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필로폰 24g에 대한 가격 흥정 중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 (부산지검)
- ① 2005. 6.경 서울 노원구 OO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던 피해자 2명의 어깨와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한 다음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함 (서울북부지검)

- 2006. 1.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여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12. 12.경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피의자(30세, 무직)는 피해자가 필로폰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 (인천지검)
- 2013. 2.경 피의자(50세, 무직)가 자신의 형이 필로폰 중독으로 자살을 하자 형에게 필로폰을 알게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14. 6.경 피의자(34세, 중고차 매매)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와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금니 1개를 뽑아내고 왼쪽 안구를 적출한 후, 식칼로 두피 전체를 벗겨내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살인미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5. 2.경 노래방 업주인 피의자(41세, 상업)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2명(노래방 여자종업원)이 동성애 관계라고 트집 잡아 덤벨, 금속봉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그 중 1명을 살해 (천안지청)



- 2016. 8.경 LSD를 투약한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피의자의 이모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 (대전지검)
- 2016. 12.경 마약류 전과 5범인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칼로 아내의 목을 베어 살해 (대구지검)
- 2017. 4.경 피의자(5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양팔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 (대구지검)

자살 · 과다투약 사망 사건

- 2001. 3.경 대구시 OO구 주택에서 51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1. 8.경 대구 북구 OO동 여관에서 37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2. 1.경 부산 동래구 OO동 모텔에서 36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기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 과다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2012. 10.경 부산 서구 OO동 모텔에서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부산지검)



- ④ 2013. 1.경 58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절취, 사용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복역한 다음 출소한 직후 자살 (부산지검)
- ④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OO의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부천시청)
- ④ 2014.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동파」 추종자인 33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으로 난입하여, '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다. 두목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다'라고 소리 지르며 40여 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 (울산지검)
- ④ 2015. 3.경 안산 단원구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성형외과의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안산지청)
- ④ 2015. 6.경 경기 동두천시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4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및 디아제팜 과다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 ④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58세 남성(사업가)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사망. 위 남성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40g, 야바 76.5g, 엑스터시 3.12g, 대마 34.9g 등 발견 (서울서부지검)
- ④ 2016. 2.경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49세 남성(마약 전과 11회)이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 (부산지검)
- ④ 2017. 1.경 대구 동구 OO모텔에서 57세 남성과 49세 여성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 하던 중 여성이 과다 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④ 2017. 7.경 경상남도 거제시 OO의원 원장(57세, 의사)이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약 2달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시키던 중, 피해자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자 통영시 앞바다에 시신 유기 (통영지검)
- ④ 2018. 1.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30대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등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4.경 서울 강남구 OO동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43세,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시키고 골프를 치러간 사이, 동거녀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8.경 수원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22세, 태국인,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수감)가 필로폰 다량 투약으로 사망 (수원지검)

강 · 절도 등 사건

- ④ 2001. 5.경 피의자들(27~28세 남자 2명, 무직)이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폐치딘 10앰플을, 2002. 2.경 의료원에서 모르핀 108 앰플, 펜타닐 19앰플, 폐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④ 2001. 7.~12.경 안산시 OO동 병원에서 피의자(28세, 간호사)가 의사의 마약 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폐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 ④ 2016. 10.경 절도 범행을 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급 시계 등을 절취 (서울중앙지검)

- ④ 2016. 12.경 절도 범행에 착수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다음 커피숍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절취 (수원지검)
- ④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편의점 앞에 세워둔 택시를 몰고 도주 (인천지검)

인질극, 난동 등 사건

- ④ 2001. 3.경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피의자(34세, 노동)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 가량 대치하던 중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④ 2001. 4.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의자들(25세 및 30세, 각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검찰 수사차량 및 경찰 순찰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의자 1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울산지검)
- ④ 2001. 6.경 군산시 자택에서 피의자(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 (군산지청)
- ④ 2001. 9.경 서울 관악구 OO동 여관에서 피의자(4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 (서울남부지청)
- ④ 2002. 1.경 대전 중구 여관에서 피의자(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 2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치하며 난동 (대전지검)



- ④ 200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에 자수한 피의자(29세, 무직)가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하던 중, 형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놓여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인천지검)
- ④ 2002. 1.경 피의자(36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OO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을 죽여 버리겠다고 흥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 (서울서부지청)
- ④ 2002.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29세, 운전기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게 하고, 이어서 대구지검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대구지검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 (대구지검)
- ④ 2006. 11.경 대구 동구 OO아파트에서 피의자(50세, 무직)가 대구지검에 전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수 의사를 밝힌 후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배 부위를 과도로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이웃 할머니를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④ 2012. 10.경 부산 연제구 OO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흥기로 찌르는 등 난동 (부산지검)
- ④ 2013. 2.경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가 불펜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수회 찌르고 당직실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난동 (대구지검)

- ④ 2013. 7.경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피의자(30세, 요리사)가 평소 과용해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후 환각상태에서 검사실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 (서울북부지검)
- ④ 2013. 9.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상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피의자(47세, 무직)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동거녀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는 등 난동 (광주지검)
- ④ 2014. 9.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창원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43세, 무직)가 교도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여 자해 (마산지청)
- ④ 2015. 4.경 피의자(49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김천지청을 방문하여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난동 (김천지청)
- ④ 2015. 5.경 피의자(47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 (대구지검)
- ④ 2015. 12.경 필로폰 환각상태의 피의자(40세, 무직)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 후 복용할 수 있도록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의 목에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환자와 피의자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질강요 (인천지검)
- ④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유리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 (경주지청)



- ④ 2018. 1.경 부산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객실 창문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투신 소동 (부산지검)
- ④ 2018. 2.경 전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냉장고 등 호텔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 (전주지검)
- ④ 2018. 6.경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객실 집기류 등을 부수고, 모텔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12.경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6.경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피의자(2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6.경 의정부시 OO아파트 13층 난간에서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 있는 피의자(50세, 마약범죄 전력 6회)가 나체로 베란다 난간 실외기에 걸터앉아 자살 소동 (의정부지검)

수사관 살해·상해 사건

- ④ 1997. 9.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7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 상해 (인천지검)
- ④ 1998. 1.경 대마 밀매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④ 1998.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 상해 (부산지검)
- ④ 1998. 10.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5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 (중)상해 (의정부지청)
- ④ 1999. 1.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원인 피의자(30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해 (진주지청)
- ④ 2006. 8.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6세, 무직)가 등산용 칼로 검찰수사관의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 (성남지청)
- ④ 2014.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누범기간 중인 필로폰 소지혐의 피의자(52세, 무직)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 (대전지검)
- ④ 2015. 1.경 피의자(54세, 회사원)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 경찰관이 검거하려 하자 범퍼로 경찰관의 무릎 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경찰관 2명에게 상해 (수원지검)



- ④ 2015. 10.경 필로폰 약 8g을 소지한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조직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체포과정에 격렬히 저항하던 중 검찰수사관 4명 상해 (의정부지검)
- ④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수 십 킬로미터를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관 2명 상해 (평택지청)
- ④ 2019. 2. 마약 전과 5회 있는 피의자(45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에서 차량 운행 중 경찰관으로부터 마약 투약 의심자로 검문을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승용차로 경찰관 3명을 들이받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 (인천지검)

기타(상해 · 협박 · 강간 · 주거침입 · 폭행 · 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 ④ 2004. 7.경 필로폰 투약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피의자(37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 유흥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백미러를 부순 후, 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도망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10주 상해 (인천지검)
- ④ 2004. 11.경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의자 2명(44세, 46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대구지검)
- ④ 2005. 6.경 통영시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찔러 상해 (통영지청)

- ④ 2006. 7.경 진주시에서 피의자(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6주 상해,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며 협박 (남원지청)
- ④ 2006. 9.경 여수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1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에 있는데 너 아니냐.’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상해, 2007. 6.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약 1시간 동안 전처의 목, 이마, 손목, 발목 등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범행중지하여 상해 (순천지청)
- ④ 2008. 3.경 경기 양주시 OO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8세, 무직)가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
- ④ 2009. 10.경 서울 중구 OO모텔에서 피의자(37세, 무직)가 피해자와 함께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상해 (서울중앙지검)
- ④ 2013. 6.경 오산시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검)



- ④ 2013. 6.~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강간 (서울서부지검)
- ④ 2014. 12.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질주하여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좌수 증지열상을 입게 하여 상해 (안양지청)
- ④ 2015. 1.경 피의자(34세, 기업인)가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자동차를 절취하여 도주 (서울중앙지검)
- ④ 2015. 3.경 필로폰 판매 범죄사실로 수배 중인 피의자(43세, 무직)가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충돌하고 도주 (성남지청)
- ④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샴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 ④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 ④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복용시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지청)

- ④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를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동부지청)
- ④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22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 중앙지검)
- ④ 2015. 1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조직원인 피의자(50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필로폰 공급자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해 (대구지검)
- ④ 2015. 12.경 인천 남구 OO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2세, 무직)가 환각 상태에서 객실 침대 위에 있던 티슈에 불을 질러 방화, 위 모텔 투숙자인 피해자 1명 사망, 4명 상해 (인천지검)
- ④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4세, 무직, 마약전력 5회)가 모친이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손가락, 팔 등을 잡아당겨 골절, 타박상 등 상해 (부산동부지청)
- ④ 2016. 6.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성욕이 발동하자 새벽 시간대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유인·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대구지검)
- ④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 (청주지검)
- ④ 2016. 11.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ライター로 수건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우고, 방화 후 객실을 나오던 중 손님과 마주치자 칼을 휘둘러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서울동부지검)



- ④ 2016. 12.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처에게 흥기를 휘둘러 폭행 (순천지청)
- ④ 2017. 3.경 일행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모텔에 불을 놓아 다른 호실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치사 (천안지청)
- ④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3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대구 북구 00아파트 지하 1층 창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환풍기를 손괴 (대구지검)
- ④ 2017. 4.경 마약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여 질주 (여주지청)
- ④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급진로 변경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 (전주지검)
- ④ 2017. 5.경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흥기를 든 채로 사람들을 위협 (부산동부지청)
- ④ 2017. 5.경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신 뒤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 (부산동부지청)

- ④ 2017.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의 목을 커터 칼로 그어 상해를 가하고, 부산 소재 00시장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 (부산서부지청)
- ④ 2018. 3.경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피의자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투약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 뒤 도주 (부산지검)
- ④ 2018.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동거녀가 매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녀를 골프채와 과도로 폭행, 뇌출혈 등으로 상해 (춘천지검)
- ④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중고등학생 등 승객 수십 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 (춘천지검)
- ④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터널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게 하여 치상 (속초지청)
- ④ 2018. 12.경 전 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 (서울북부지검)
- ④ 2019. 1.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던 피의자들(54세, 도박 벌금 2회 / 60세, 도박 벌금 2회)이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에 사리판별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부산서부지청)



- 2019. 6.경 피의자들(46세, 스크린골프장 운영 / 46세, 자영업, 도박 등 전력 5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음료수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1억여 원 편취 (인천지검)
- 2019. 5.경 대구 동구 OO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5세, 무직)가 대구 수성구 OO호텔 1층 휴게실 로비에서 20리터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호텔 내부 시설 소훼 (대구지검)
- 2019. 8.경 서울 성북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7세, 약사)가 환각상태에서ライター로 본인의 집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이후 알몸 상태에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연음란 (서울북부지검)



4.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1. 개요

가. 자수기간

- 2019. 4. 1. ~ 2019. 6. 30.(3개월)

나.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다.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라. 처리

- ④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④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④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21개 기관, 약 300개 병실)은 [표 3-74] 자료 참조
- ④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019. 1. 시행)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도입(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

- 보호관찰관이 6개월 동안 대상자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교육(4일) +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의 치료보호(기본 2개월)' 등을 관리·감독
- 법무부·보건복지부는 치료전문병원 240여 개를 지정하여 운영

- ④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밀매, 밀수 등 범죄유형이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²⁴

²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조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2004. 4. 「약물중독 재활센터」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자수실적

가. 마약류별 자수실적

- 2019년 자수실적은 87명으로 전년도 44명 대비 97.7%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수자 중 향정사범이 69명으로 79.3%를 점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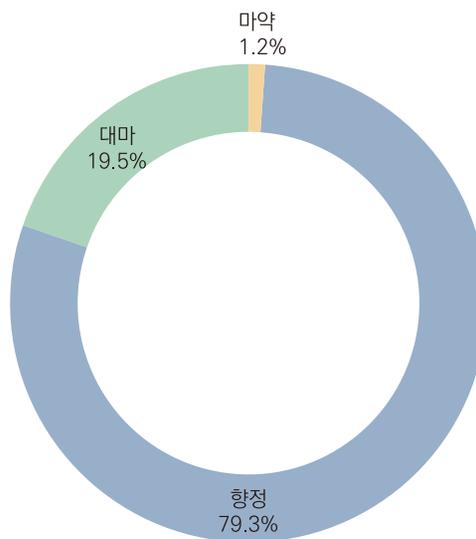
[표 3-76]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구분	합계			기소유예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건수	인원	구성비			
합계		87	87	(100)	32	15	37
마약		1	1	(1.2)	1	0	0
향정		69	69	(79.3)	20	13	33
대마		17	17	(19.5)	11	2	4

※ 기소유예·구공판 사범 이외에는 '혐의 없음' 처분

[그림 3-41]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표 3-77]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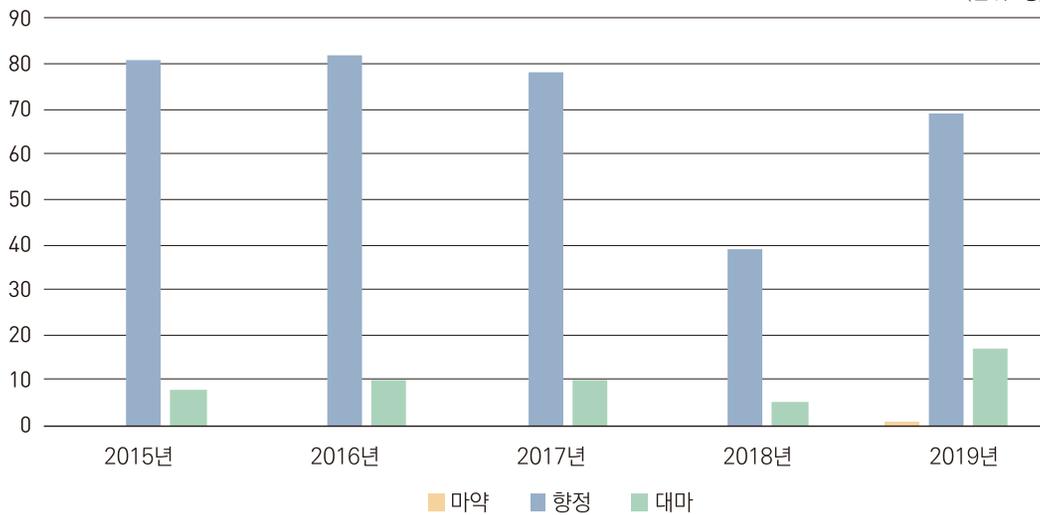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89 (100)	92 (100)	88 (100)	44 (100)	87 (100)
마약	0 (0.0)	0 (0.0)	0 (0.0)	0 (0.0)	1 (1.2)
향정	81 (91.0)	82 (89.1)	78 (88.6)	39 (88.6)	69 (79.3)
대마	8 (9.0)	10 (10.9)	10 (11.4)	5 (11.4)	17 (19.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42]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단위: 명)



나. 자수자 처리현황

[표 3-78] 자수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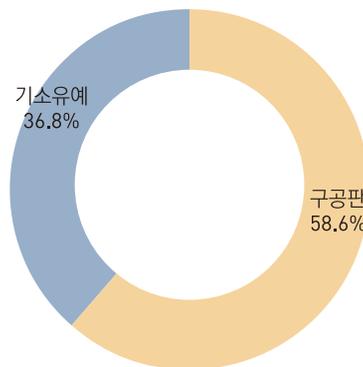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구분 합계	처리현황									
		불입건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이송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타관 이송	미제
2015	89 (100)	0 (0.0)	59 (66.3)	6 (6.7)	16 (18.1)	0 (0.0)	0 (0.0)	6 (6.7)	0 (0.0)	2 (2.2)	0 (0.0)
2016	92 (100)	0 (0.0)	24 (26.1)	0 (0.0)	17 (18.5)	0 (0.0)	0 (0.0)	5 (5.4)	0 (0.0)	0 (0.0)	46 (50.0)
2017	88 (100)	4 (4.5)	38 (43.2)	0 (0.0)	30 (34.1)	1 (1.1)	0 (0.0)	4 (4.5)	0 (0.0)	0 (0.0)	11 (12.5)
2018	44 (100)	0 (0.0)	21 (47.7)	0 (0.0)	7 (15.9)	1 (2.3)	0 (0.0)	1 (2.3)	2 (4.5)	9 (20.5)	3 (6.8)
2019	87 (100)	0 (0.0)	51 (58.6)	1 (1.2)	32 (36.8)	0 (0.0)	0 (0.0)	3 (3.4)	0 (0.0)	0 (0.0)	0 (0.0)

* 기준일 : 2009년~2012년 특별자수기간 종료 직후, 2013년부터는 자수자 처리 이후, ()는 구성비 %

- 구공판 처리된 자수자 51명은 필로폰 밀매자, 동종 전과 다수자, 필로폰 중독자로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죄질이 중한 자들이 대부분임

[그림 3-43]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 기소유예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13명,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0명, 일반 기소유예자 9명임



다. 연령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30대 28명(32.2%), 20대 23명(26.4%), 40대 21명(24.1%) 순임

[표 3-79] 자수자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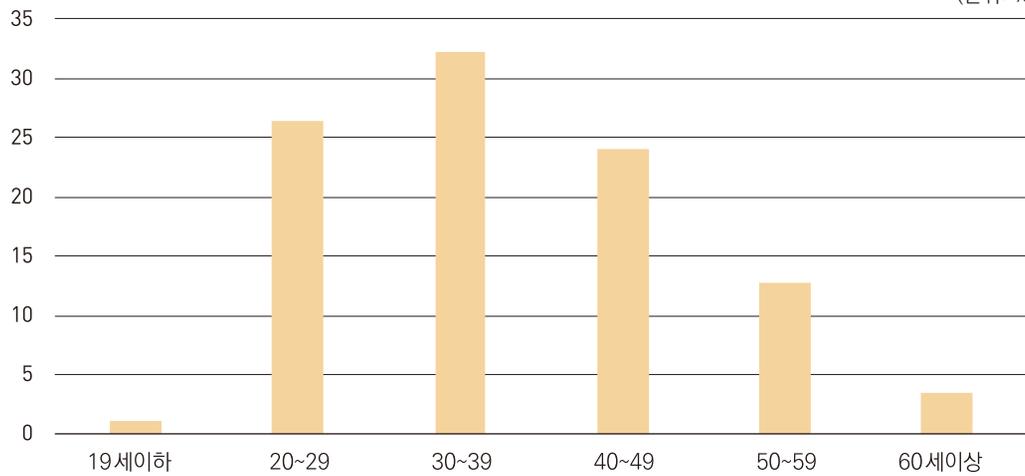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합계
사범수	1	23	28	21	11	3	87
(%)	(1.1)	(26.4)	(32.2)	(24.1)	(12.7)	(3.5)	(100)

※ ()는 구성비 %

[그림 3-44]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단위: %)



라. 성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남성은 47명(54.0%), 여성은 40명(46.0%)임

[표 3-80] 자수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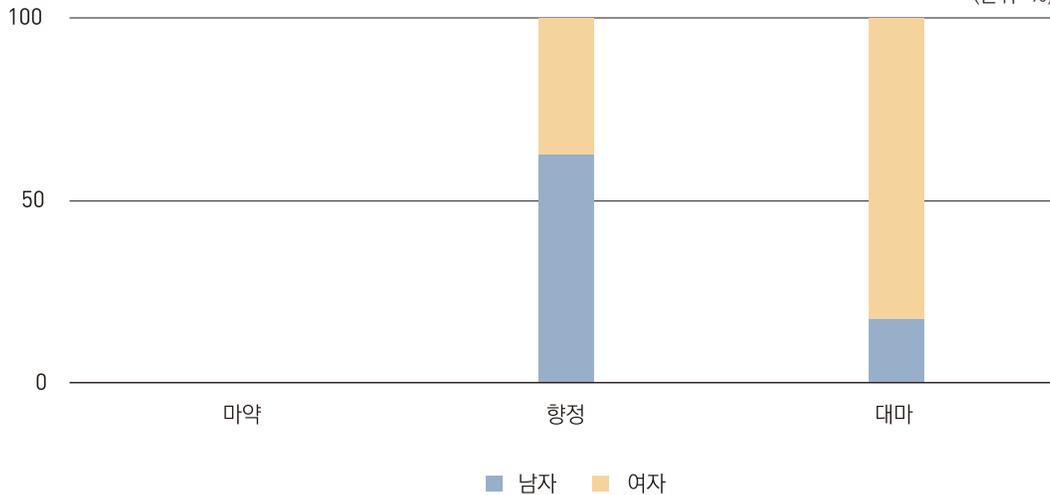
(단위: 명)

성별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범수	0	0	44	26	3	14	47	40		
(%)	(0.0)	(0.0)	(62.9)	(37.1)	(17.6)	(82.4)	(54.0)	(46.0)		

※ ()는 구성비 %

[그림 3-45] 자수자 성별 구성비

(단위: %)





마.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 35명(40.2%), 회사원 19명(21.8%), 자영업 9명(10.3%) 순임

[표 3-81] 자수자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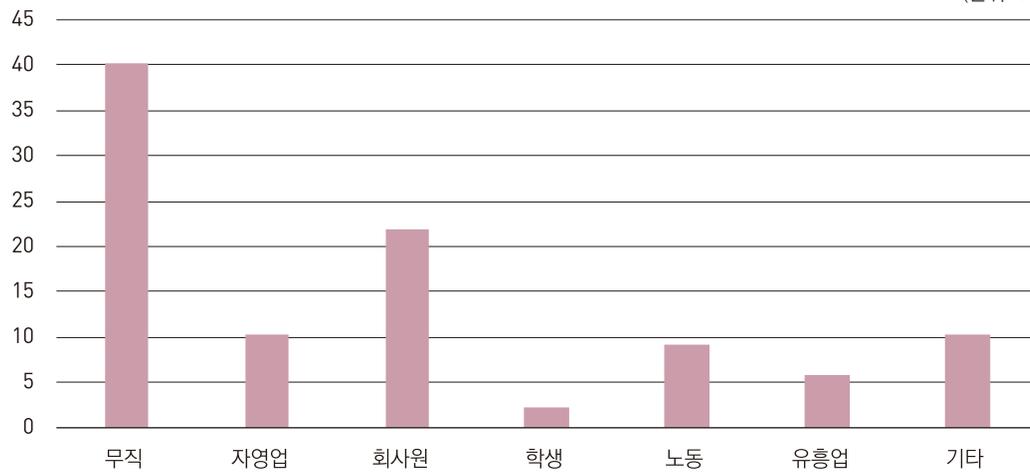
(단위: 명)

직업별	무직	자영업	회사원	학생	노동	유흥업	기타 ²⁵	합계
사범수	35	9	19	2	8	5	9	87
(%)	(40.2)	(10.3)	(21.8)	(2.3)	(9.2)	(5.7)	(10.3)	(100)

※ ()는 구성비 %

[그림 3-46]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단위: %)



²⁵ 농업, 주부, 디자이너 등

3. 시행 결과 및 향후 계획

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결과

- ④ 2019. 4. 1.~ 6. 30. 3개월 동안 시행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향정사범 69명, 대마사범 17명, 마약사범 1명, 합계 87명이 자수함
- ④ 자수자로서 사안이 중하지 않고, 개선의 정(단약 의지 등)이 뚜렷한 투약사범 32명(전체 자수자의 36.8%)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상습투약 및 마약류 밀거래 범죄에 관여하는 경우 등 그 죄질이 무거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함

나. 홍보 강화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활성화

- ④ 관공서, 언론사, (도시)철도·도로공사, 터미널(버스, 항구, 공항 등)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 방송, 신문,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블로그, 전광판,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 ④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단순 투약자로 치료·재활의지가 분명한 자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수 기간의 취지에 따라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 기회 적극 부여



5.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1. 개요

가. 단속기간

- 양귀비 : 2019. 4. 중순 ~ 6. 하순(개화기)
- 대마 : 2019. 6. 중순 ~ 7. 중순(수확기)

나. 단속방법

- 각 청 마약수사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검찰수사관, 시·군·구 유관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이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귀비·대마 다량 흡연자, 대마 재배 허가지 및 대마 도난신고 사실 여부 등 사전 확인 후 단속
-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청에서는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계획 수립·시행

다.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2. 단속실적

가. 단속 인원 및 실적 추이

- 2019년 특별단속기간 내 양귀비·대마사범은 1,315명으로 전년(1,505명) 대비 12.6% 감소함

[표 3-82]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현황

(단위: 명)

사범별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불입건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불입건	구속	불입건	
합계		1,315	(100)	31	(2.4)	1,173	(89.2)	111	(8.4)	
양귀비		1,180	(100)	0	(0.0)	1,071	(90.8)	109	(9.2)	
대마		135	(100)	31	(23.0)	102	(75.5)	2	(1.5)	

※ ()는 구성비 %

- 양귀비사범은 1,180명으로 전년(1,392명) 대비 15.2% 감소, 대마사범은 135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9.5% 증가함

[표 3-83]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단위: 명)

사범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양귀비	1,209 (49.6)	1,555 (28.6)	1,330 (-14.5)	1,392 (4.7)	1,180 (-15.2)
대마	154 (0.7)	219 (42.2)	351 (60.3)	113 (-67.8)	135 (19.5)
합계	1,363 (41.8)	1,774 (30.2)	1,681 (-5.2)	1,505 (-10.5)	1,315 (-12.6)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그림 3-47] 연도별 단속 현황

(단위: 명)



나. 유형별 단속실적

- 양귀비 밀경작사범은 1,153명으로 전년(1,376명) 대비 16.2% 감소하였고, 대마 밀경작사범은 27명으로 전년(43명) 대비 37.2% 감소함
- 양귀비사범의 경우 유형별 분포에서 밀경작사범이 97.7%를 차지하였고, 대마사범의 경우는 밀경작사범이 20.0%, 흡연 사범이 45.9%로 다수를 차지함
- 양귀비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217명으로 전년(237명) 대비 8.4% 감소하였고, 대마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100명으로 전년(48명) 대비 108.3% 증가함

[표 3-84] 양귀비·대마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사범별	밀조	밀수	밀경	밀매	사용 (흡연)	취급 (소지)	기타
양귀비	0 (0.0)	3 (0.3)	1,153 (97.7)	6 (0.5)	1 (0.1)	10 (0.8)	7 (0.6)
대마	0 (0.0)	4 (3.0)	27 (20.0)	11 (8.1)	62 (45.9)	6 (4.4)	25 (18.5)
합계	0 (0.0)	7 (0.5)	1,180 (89.7)	17 (1.3)	63 (4.8)	16 (1.2)	32 (2.4)

※ ()는 구성비 %

다. 직업별 분포 현황

🔍 양귀비사범, 대마사범은 무직이 각각 46.2%, 37.0%로 가장 많았음

[표 3-85] 양귀비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종류	2015		2016		2017		2018		2019	
무직	309	(25.6)	565	(36.3)	479	(36.0)	517	(37.1)	545	(46.2)
농업	694	(57.4)	711	(45.7)	588	(44.2)	477	(34.4)	390	(33.1)
유형업종사자	0	(0.0)	0	(0.0)	0	(0.0)	6	(0.4)	0	(0.0)
상업	15	(1.2)	29	(1.9)	26	(2.0)	93	(6.7)	17	(1.4)
주부	78	(6.5)	92	(5.9)	59	(4.4)	122	(8.8)	50	(4.2)
노동	12	(1.0)	14	(0.9)	26	(2.0)	40	(2.9)	25	(2.1)
회사원	22	(1.8)	28	(1.8)	28	(2.1)	30	(2.4)	27	(2.3)
학생	0	(0.0)	0	(0.0)	0	(0.0)	0	(0)	0	(0.0)
의료인	0	(0.0)	0	(0.0)	0	(0.0)	2	(0.1)	0	(0.0)
기타	79	(6.5)	116	(7.5)	124	(9.3)	105	(7.5)	126	(10.7)
합계	1,209	(100)	1,555	(100)	1,330	(100)	1,392	(100)	1,180	(100)

※ ()는 구성비 %

[표 3-86] 대마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종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무직	54	(35.0)	73	(33.3)	127	(36.2)	53	(46.9)	50	(37.0)		
농업	14	(9.1)	39	(17.8)	11	(3.1)	16	(14.2)	12	(8.9)		
유형업종사자	2	(1.3)	7	(3.2)	22	(6.3)	2	(1.8)	1	(0.7)		
상업	18	(11.7)	25	(11.4)	26	(7.4)	4	(3.5)	7	(5.2)		
주부	0	(0.0)	2	(0.9)	1	(0.3)	1	(0.9)	1	(0.7)		
노동	22	(14.3)	16	(7.3)	34	(9.7)	13	(11.5)	16	(11.9)		
회사원	16	(10.4)	12	(5.5)	56	(16.0)	7	(6.2)	11	(8.1)		
학생	6	(3.9)	6	(2.7)	11	(3.1)	3	(2.7)	9	(6.7)		
의료인	0	(0.0)	0	(0.0)	0	(0.0)	0	(0)	0	(0.0)		
기타	22	(14.3)	39	(17.9)	63	(17.9)	14	(12.4)	28	(20.7)		
합계	154	(100)	219	(100)	351	(100)	113	(100)	135	(100)		

※ ()는 구성비 %

라. 연령별 분포 현황

- 양귀비사범은 60대 이상이 81.9%, 대마사범은 20대 35.6%, 30대 25.2% 순으로 가장 많음

[표 3-87] 양귀비사범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연령별		10~19		20~29		30~39		40~49		50~59		60대 이상		미상	
	합계															
2015	1,209	(100)	0	(0.0)	1	(0.1)	5	(0.4)	28	(2.3)	189	(15.6)	939	(77.7)	47	(3.9)
2016	1,555	(100)	0	(0.0)	0	(0.0)	13	(0.8)	41	(2.6)	214	(13.8)	1,249	(80.4)	38	(2.4)
2017	1,330	(100)	0	(0.0)	0	(0.0)	7	(0.5)	34	(2.6)	185	(13.9)	1,080	(81.2)	24	(1.8)
2018	1,392	(100)	0	(0.0)	1	(0.1)	2	(0.2)	37	(2.7)	157	(11.3)	1,174	(84.3)	21	(1.5)
2019	1,180	(100)	0	(0.0)	1	(0.1)	7	(0.6)	27	(2.3)	133	(11.3)	967	(81.9)	45	(3.8)

※ ()는 구성비 %

[표 3-88] 대마사범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연령별							
	합계	10~19	20~29	30~39	40~49	50~59	60대 이상	미상
2015	154 (100)	0 (0.0)	32 (20.8)	20 (13.0)	41 (26.6)	45 (29.2)	16 (10.4)	0 (0.0)
2016	219 (100)	2 (0.9)	40 (18.3)	42 (19.2)	56 (25.6)	34 (15.5)	32 (14.6)	13 (5.9)
2017	351 (100)	7 (2.0)	71 (20.2)	107 (30.5)	103 (29.3)	42 (12.0)	20 (5.7)	1 (0.3)
2018	113 (100)	0 (0.0)	16 (14.2)	21 (18.6)	15 (13.3)	23 (20.4)	36 (31.9)	2 (1.8)
2019	135 (100)	1 (0.7)	48 (35.6)	34 (25.2)	16 (11.9)	17 (12.6)	17 (12.6)	2 (1.5)

※ ()는 구성비 %

마. 성별 분포 현황

양귀비사범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대마사범은 남성의 비율이 높음

[표 3-89] 양귀비·대마 성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사범별	양귀비			대마		
		계	남	여	계	남	여
2015		1,209 (100)	527 (43.6)	682 (56.4)	154 (100)	138 (89.6)	16 (10.4)
2016		1,555 (100)	659 (42.4)	896 (57.6)	219 (100)	185 (84.5)	34 (15.5)
2017		1,330 (100)	577 (43.4)	753 (56.6)	351 (100)	294 (83.8)	57 (16.2)
2018		1,392 (100)	535 (38.4)	857 (61.6)	113 (100)	93 (82.3)	20 (17.7)
2019		1,180 (100)	484 (39.4)	696 (56.6)	135 (100)	110 (81.5)	25 (18.5)

※ ()는 구성비 %

바. 압수물 현황

- 2019년 특별단속기간 중, 양귀비 압수량(주)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대마 압수량(주)은 전년 대비 72.1% 감소하였음. 다만, 대마초 압수량은 104.2% 증가함

[표 3-90]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종류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양귀비(주)	113,270	166,641	371,443	135,702	156,219
대마(주)	3,707	45,963	4,527	5,516	1,539
대마초(g)	7,167	1,033.5	7,734.3	1,345.1	2,747.3
대마종자(g)	72.0	58.2	10.1	0	161.2

3.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

가. 양귀비·대마사범 단속 결과

- 양귀비·대마 밀경작 규모는 대부분 100주 이하의 소규모이며, 특히 양귀비 사범의 경우 93.2%가 50세 이상임. 이는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노령층 주민들이 상비약, 가축의 질병치료, 관상용 등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 및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처벌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양귀비·대마 총 단속인원 1,315명 중 1,083명이 관용(불입건 111명, 기소유예 972명) 처분됨



나. 양귀비·대마사범 단속 방향

- 양귀비(아편)·대마의 밀거래 및 사용사범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밀경작사범에 대하여는 현행 단속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각 청의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하여 처리

다.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공·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귀비·대마 파종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 무렵에 지역 언론, 현수막, 포스터 게시 등의 방법으로 양귀비·대마 재배의 불법성 홍보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도난 방지 설비가 없는 도로변이나 재배자의 상시 관리가 어려운 장소의 대마재배에 대해서는 재배허가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등 재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조치
- 기소유예 및 불입건자들에 대해 양귀비·대마 재배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 및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6.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1. 의 의

-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이 향후 마약류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범죄동향 분석 필요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관련 사건통계
 -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범죄유형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등

대상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로,

- ①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② 동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③ 부탄가스
- ④ 아산화질소

를 말함

4.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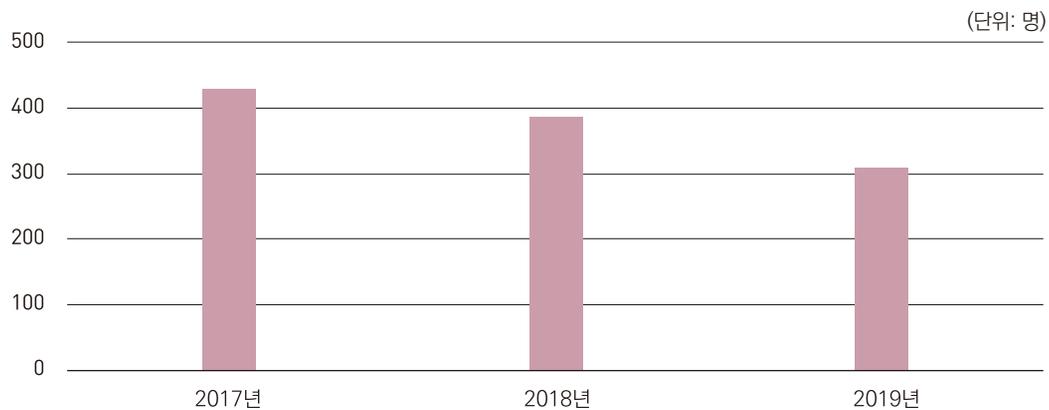
가.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추세

[표 3-91]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단속 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인원
2017		301	430
2018		262	386
2019		226	309

-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은 감소 추세,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9.9% 감소함
- 최근 20~30대 사이,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본드 (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함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나. 기관별 현황

[표 3-92] 기관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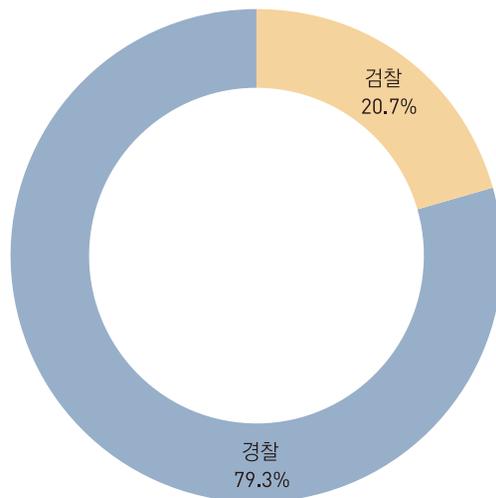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2017		36	394	430
		(8.4)	(91.6)	(100)
2018		61	325	386
		(15.8)	(84.2)	(100)
2019		64	245	309
		(20.7)	(79.3)	(100)

※ ()는 구성비 %

📌 2019년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20.7%, 경찰 79.3%를 각각 차지함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다. 지역별 현황

[표 3-93]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역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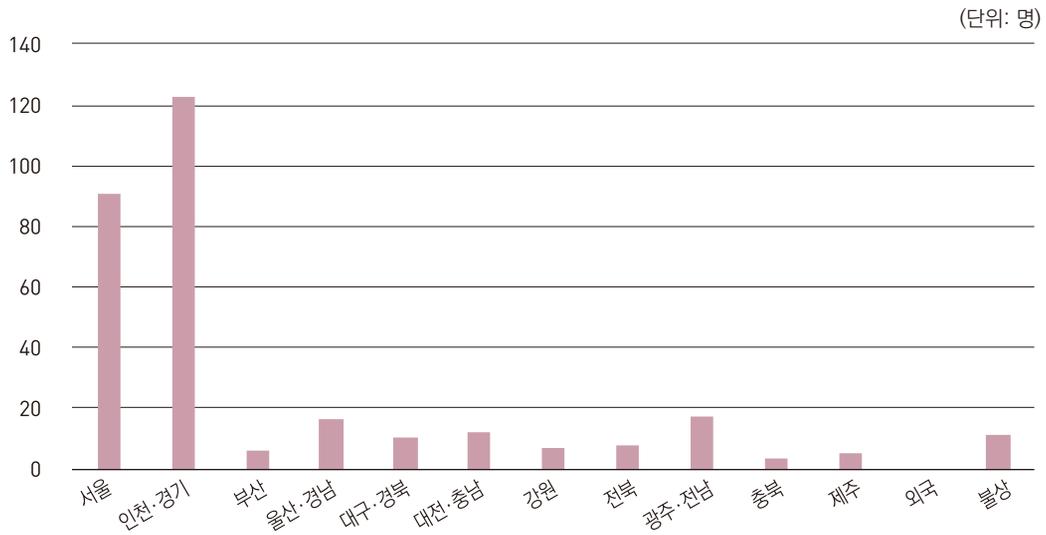
지역별	연도별	2017	2018	2019
합계		430	386	309
		(100)	(100)	(100)
서울		79	128	91
		(18.4)	(33.2)	(29.4)
인천·경기		236	171	123
		(54.9)	(44.3)	(39.8)
부산		8	8	6
		(1.9)	(2.1)	(1.9)
울산·경남		27	13	16
		(6.3)	(3.4)	(5.2)
대구·경북		7	14	10
		(1.6)	(3.6)	(3.2)
대전·충남		28	12	12
		(6.5)	(3.1)	(3.9)
강원		3	12	7
		(0.7)	(3.1)	(2.3)
전북		2	4	8
		(0.5)	(1.0)	(2.6)
광주·전남		19	13	17
		(4.4)	(3.4)	(5.5)
충북		5	1	3
		(1.2)	(0.3)	(1.0)
제주		4	0	5
		(0.9)	(0.0)	(1.6)
외국		0	0	0
		(0.0)	(0.0)	(0.0)
불상		12	10	11
		(2.8)	(2.6)	(3.6)

※ ()는 구성비 %



- 2019년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39.8%), 서울(29.4%), 광주·전남(5.5%), 울산·경남(5.2%) 순으로, 전체 사범의 69.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라. 직업별 현황

[표 3-94]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연도별	2017	2018	2019
합계		430	386	309
		(100)	(100)	(100)
농업		2	0	2
		(0.5)	(0.0)	(0.6)
도소매업		0	1	2
		(0.0)	(0.3)	(0.6)
건설업		4	2	0
		(0.9)	(0.5)	(0.0)
요식업		0	3	1
		(0.0)	(0.8)	(0.3)
운수업		0	0	1
		(0.0)	(0.0)	(0.3)
노점		0	1	0
		(0.0)	(0.3)	(0.0)
용역업		0	0	1
		(0.0)	(0.0)	(0.3)
공익요원		0	2	0
		(0.0)	(0.5)	(0.0)
운전자		2	2	1
		(0.5)	(0.5)	(0.3)
요식업종사자		3	3	3
		(0.7)	(0.8)	(1.0)
유흥업종사자		0	7	5
		(0.0)	(1.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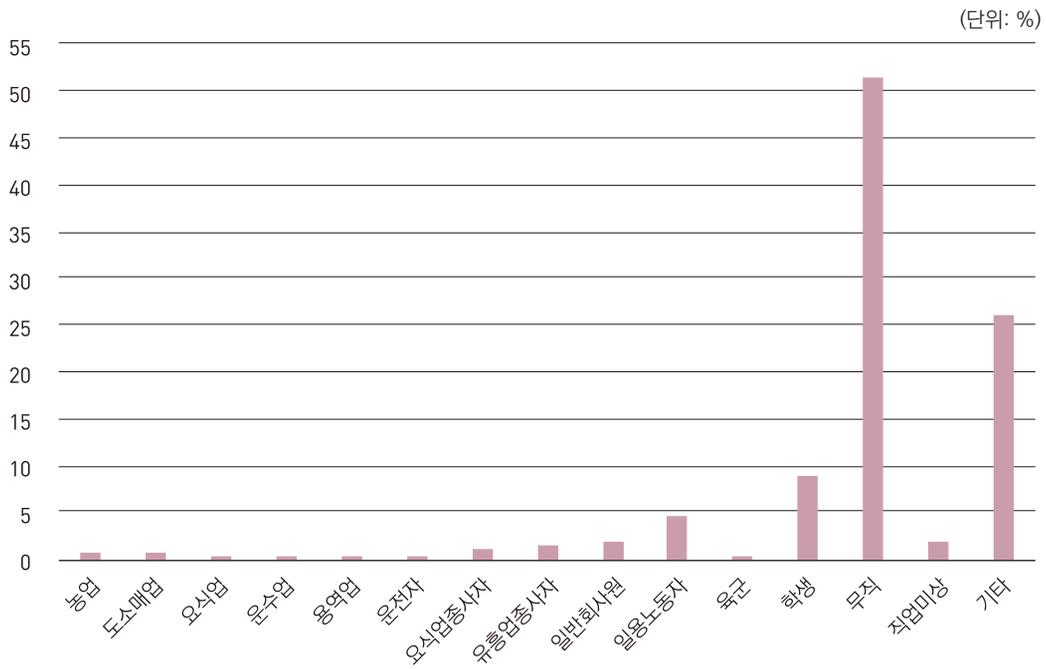
2019 마약류 범죄백서

직업별	연도별	2017	2018	2019
	일반회사원		6 (1.4)	4 (1.0)
일용노동자		32 (7.4)	11 (2.8)	14 (4.5)
	예술인	0 (0.0)	1 (0.3)	0 (0.0)
육군		0 (0.0)	1 (0.3)	1 (0.3)
	학생	76 (17.7)	31 (8.0)	27 (8.7)
주부		1 (0.2)	0 (0.0)	0 (0.0)
	무직	112 (26.0)	157 (40.7)	159 (51.5)
직업미상		10 (2.3)	0 (0.0)	6 (1.9)
	기타	182 (42.3)	160 (41.5)	80 (25.9)

※ ()는 구성비 %

- 2019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51.5%), 학생(8.7%), 일용노동자(4.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마. 연령별 현황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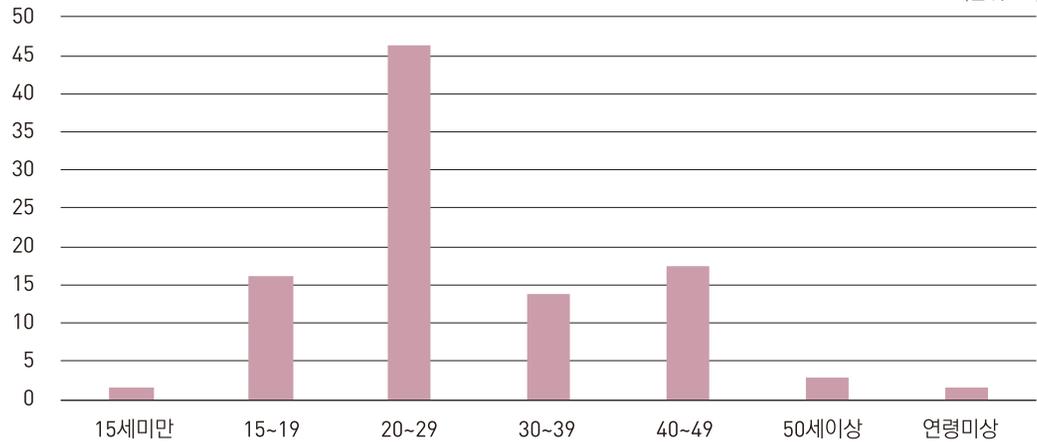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연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미상	합계
2017	25	183	65	64	79	13	1	430
	(5.8)	(42.6)	(15.1)	(14.9)	(18.4)	(3.0)	(0.2)	(100)
2018	20	93	147	66	43	17	0	386
	(5.2)	(24.1)	(38.1)	(17.1)	(11.1)	(4.4)	(0.0)	(100)
2019	5	50	143	43	54	9	5	309
	(1.6)	(16.2)	(46.3)	(13.9)	(17.5)	(2.9)	(1.6)	(100)

※ ()는 구성비 %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바. 성별 현황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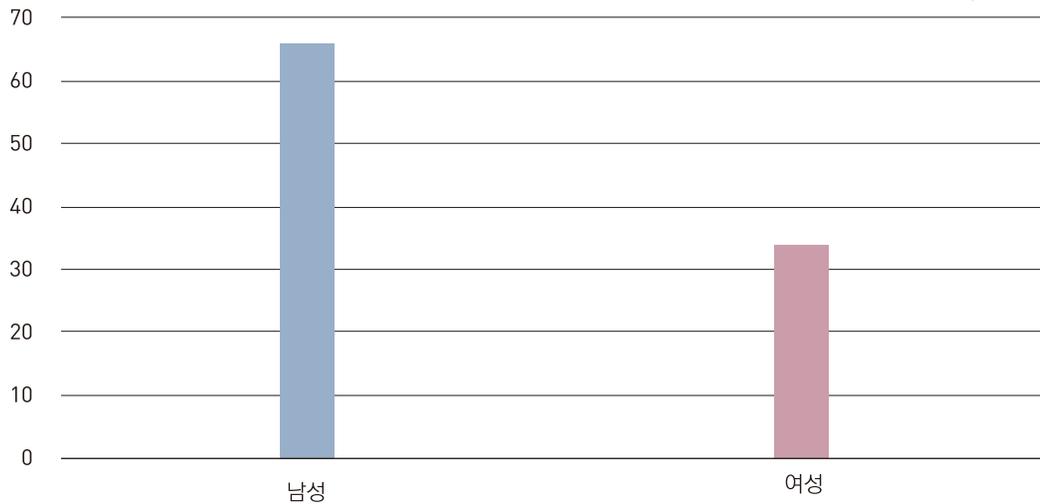
연도	성별	남	여	합계
2017		317	113	430
		(73.7)	(26.3)	(100)
2018		244	142	386
		(63.2)	(36.8)	(100)
2019		204	105	309
		(66.0)	(34.0)	(100)

※ ()는 구성비 %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66.0%, 여성이 34.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



사. 검찰 처리현황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검찰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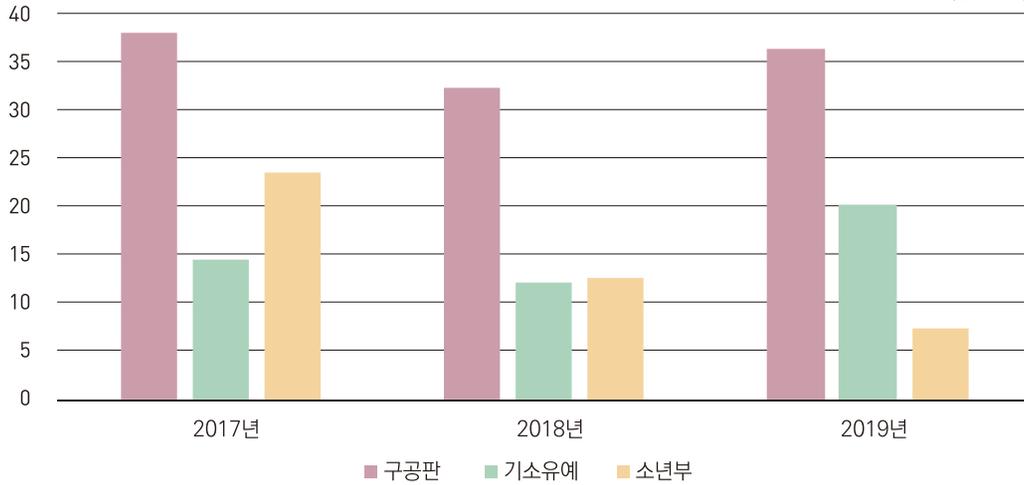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처리내역									합계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타관	기타	미제	
2017	178 (38.0)	32 (6.8)	39 (8.3)	68 (14.5)	13 (2.8)	110 (23.5)	17 (3.6)	0 (0.0)	12 (2.6)	469 (100)
2018	134 (32.4)	49 (11.8)	42 (10.1)	50 (12.1)	8 (1.9)	52 (12.6)	41 (9.9)	1 (0.2)	37 (8.9)	414 (100)
2019	195 (36.3)	60 (11.2)	31 (5.8)	109 (20.3)	4 (0.7)	40 (7.4)	52 (9.7)	3 (0.6)	43 (8.0)	537 (100)

※ ()는 구성비 %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단위: %)



아. 1심 재판결과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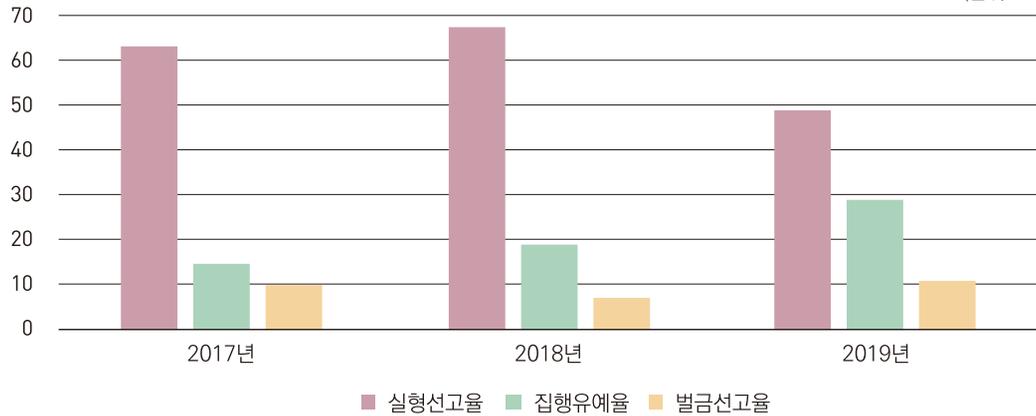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17	11	17	31	42	0	0	0	0	14
	(9.6)	(14.8)	(27.0)	(36.5)	(0.0)	(0.0)	(0.0)	(0.0)	(12.2)
2018	7	19	31	37	0	0	0	0	7
	(6.9)	(18.8)	(30.7)	(36.7)	(0.0)	(0.0)	(0.0)	(0.0)	(6.9)
2019	14	37	24	39	0	0	0	0	15
	(10.9)	(28.7)	(18.6)	(30.2)	(0.0)	(0.0)	(0.0)	(0.0)	(11.6)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자.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99]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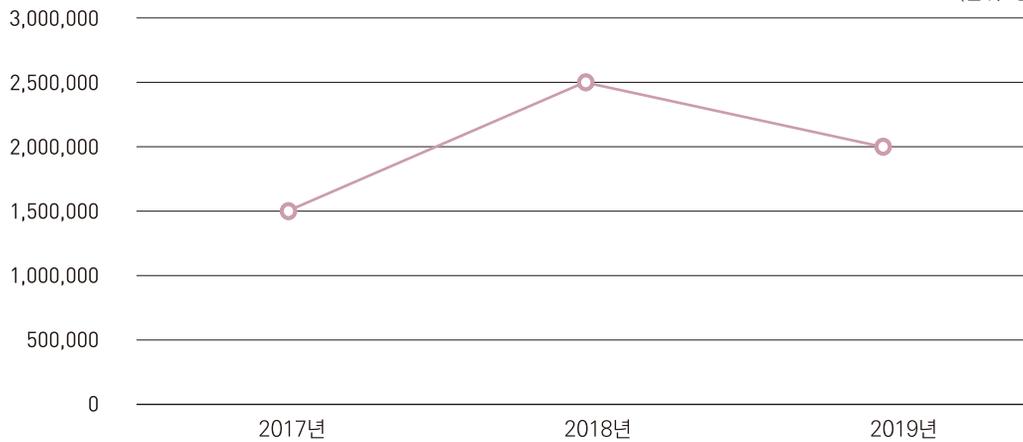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평균 (단위:원)
2017	0	3	9	18	0	0	1,500,000
2018	0	0	9	34	0	0	2,500,000
2019	0	0	17	20	0	0	2,000,0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차. 실행자·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표 3-100]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구분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7		15.2	27.5
2018		12.6	21.9
2019		13.4	26.4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카.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101]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7		0 (0.0)	1 (4.2)	17 (70.8)	5 (20.8)	1 (4.2)	24 (100)
2018		0 (0.0)	6 (26.1)	15 (65.2)	2 (8.7)	0 (0.0)	23 (100)
2019		0 (0.0)	3 (10.0)	22 (73.3)	3 (10.0)	2 (6.7)	3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타. 실행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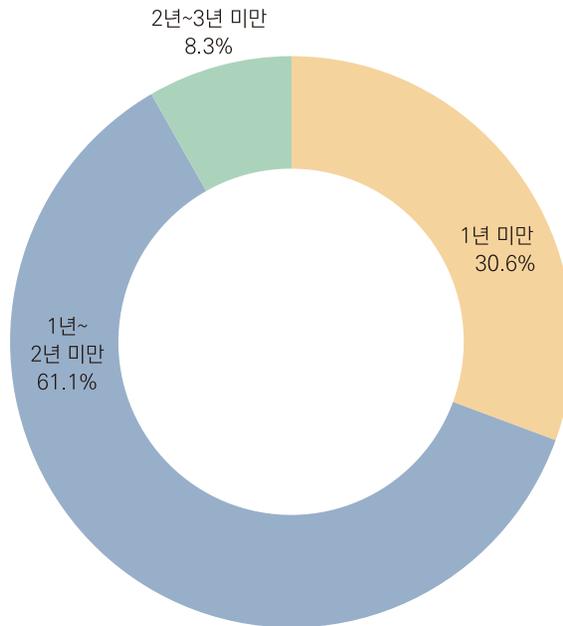
[표 3-102]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7	41 (40.6)	53 (52.5)	4 (4.0)	0 (0.0)	3 (3.0)	101 (100)
2018	33 (50.0)	27 (40.9)	4 (6.1)	2 (3.0)	0 (0.0)	66 (100)
2019	11 (30.6)	22 (61.1)	3 (8.3)	0 (0.0)	0 (0.0)	3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는 구성비 %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5. 분석 결과

가. 최근 3년 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속적 감소

-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7년 430명 이래로 2019년 309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 그 원인은 최근 대부분의 본드 제조업체가 소매용 본드 생산 시 환각물질이 아닌 대체 물질로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나. 2019년 20~30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범 증가

- 2019년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309명 중 20~30대 환각물질 흡입사범이 186명으로 60.2%를 점유함. 이는 최근 동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가스)' 확산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할 경우 약 10~30초 정도 쾌감을 주는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 몇 백 개씩 흡입하다 다리 부위에 마비증상 및 통증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함



6. 향후 대책

가. 환각물질흡입 폐해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 지자체 등은 중소형 마트, 철물점, 페인트가게,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필요

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 방지

- 아산화질소(캡슐 형)는 인터넷, SNS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 가능하기에, '80, 90년대 청소년 본드·부탄가스 흡입 유행'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 단속 및 확산 방지에 지속적인 노력 필요

